

國富資料

NO. 1.

1973. 6.

國富統計調查便覽

머 리 말

우리나라에서는 長期經濟開發計劃에 必要한 資本存在量을 把握하고자 1968年末을 基準으로 1969年에 當院과 韓國銀行·韓國産業銀行·中小企業銀行이 共同으로 第1次 國富統計調査를 實施 하였습니다.

其後 飛躍的인 經濟發展으로 우리나라의 經濟構造가 顯著하게 變模하였으므로 앞으로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 必要한 國富資料를 産出하고자 第41次 統計委員會의 勸告에 따라 第2次 國富統計調査를 實施할 것을 計劃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資料는 第1次 調査의 經驗을 土台로 第2次 國富統計調査의 計劃樹立을 더욱 效果的으로 推進하는데 利用할 수 있도록 國富의 意義·範圍·評價方法·調査方法·利用分野등을 詳述하였으므로 調査關係者가 國富統計調査의 輪廓을 把握하고 業務에 參考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973年 6月 日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長 張 新 奎

目 次

머 리 말

第 1 章	總 說	3
第 1 節	國富의 意義	5
第 2 節	國富推計의 目的 및 資産의 範圍	10
第 3 節	國富統計의 沿革	17
第 2 章	國 富 的 評 價	27
第 1 節	資産의 評價	29
第 2 節	資産評價의 一般的 方法	61
第 3 節	資本資産의 評價	80
第 3 章	國富調査의 方向	111
第 1 節	日本의 國富調査	113
第 2 節	우리나라의 國富調査	136
第 4 章	國 富 的 利 用	173
第 1 節	國富利用의 方向	175
第 2 節	分析上 利用範圍	183
第 3 節	部門別 産業別利用面	188
第 4 節	國富와 社會計定	192
第 5 章	附 表	201
第 1 節	物價倍率	203
第 2 節	資産分類 및 耐用年數表	232
(附 錄)		243
第 1 次	國富統計調査 各部門別 調査概要	245

第 1 章 總 說

第 1 章 總 說

第 1 節 國 富 의 意 義

1. 富 의 概 念

「富란 廣意로 말하면 人間이 必要로 하는 財貨와 用役을 生産하는데 寄與하는 모든 生産的 資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自然的인 것과 人力에 依한 것을 모두 包括한다」(註: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刊 "Measuring the Nations wealth" P3 & 11)

따라서 富속에는 여러가지 形態의 物的 有形資源뿐 아니라 無形 資産 나아가서는 金融債權까지 包括하게 된다. 그러나 富의 形態가 多樣한 反面에 모든 富는 하나의 重要的 性格을 共通的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은 富가 所得을 發生시키는데 寄與함으로써 價值創造의 源泉이 된다는 點이다. 富가 價值創造의 源泉이 된다는 것은 富가 未來에 所得을 發生시킬 수 있다는 點이며 이와 같은 豫想所得은 現在의 貨幣單位로 換算할 수가 있다.

앞에서 富가 「生産的」資源이라고 한 것도 이것을 뜻한 것이며 따라서 "富란 停止된 狀態의 財源"이라는 點에서 "과임(Stock)이라고 말하며 所得이란 그 財源을 利用한 結果 產出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흐름(Flow)"이라고 말하게 된다. 生産 또는 所得이 富를 使用함에는 富의 一部分이 消耗되는 것이므로 實質的인 富의 變化를 알려면 이 消耗分을 除去하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곧 一定

時点에서의 純概念에 依한 富가 되며 그로써 發生되는 所得도 純概念으로 보자면 同一한 問題를 勘案하여야 한다.

近代英國의 經濟學者인 해로드 (R.F.Harrod)는 富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 “富란 売買가 可能한 것, 다시 말하면 市場에서 貨幣化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個人의 富라고 하면 그가 事業目的으로 所有하고 있는 土地, 建物, 機械, 資財, 現金 및 株券 其他 債權뿐 아니라 그의 自宅라든가 家具, 美術骨董品, 書籍 其他 所藏品등의 販賣意思가 없는 것 까지도 市場價值를 가지고 있으면 富가 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富라고 하면 이들 價值를 總合한 것이 되며 一國의 富도 이와 같은 方法으로 計算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交換價值가 있는 것이면 모두 富라는 意味인데 實上 이와 같은 概念의 富가 實際 富의 研究에서 可能한 것인가 또는 意味가 있는가 하는 点에서 問題가 된다.

예를 들면 人的資源 즉 人間의 技術이나 지혜가 未來의 所得發生에 寄与하는 價值의 源泉임에는 틀림없으나 이것을 現在의 價值로 表示한다는 것은 不可能할 뿐 아니라 人間을 經濟的인 價值로 나타낸다는 것은 人間性 本然에 비추어 困難한 것이다. 따라서 富의 實際 調查研究에서는 人的資源을 除外하게 된다.

그러면 富의 分析에 實際로 包括시켜야 할 限界는 무엇이나 하는 問題가 題起되는 데 이것은 그 富의 調查目的이 調查時点 또는 調查主体등에 따라 各己相異한 것이므로 이를 明確하게 規定짓는 것은 客觀性을 欠如하게 되지만 國富調查의 發展과 함께 一般的인 分析目的의 共通點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그 限界도 比較的 明示되어 가

고 있다.

2. 國富의 定義

一般的인 富의 概念을 考察하는 가운데 一國의 富를 構成하는 要素는 市場化할 수 있고 財貨와 用役을 生産하는데 寄與하는 總 資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國富調査 또는 國富統計라고 할 때 國富의 定義를 前述한 바와 같은 一般的이고도 広範한 概念을 直接援用하는 것은 아니다. 國富調査를 實施하는 것은 國家間의 資源比較, 一國 國民經濟의 構造와 成長分析, 國民所得과의 關係 또는 開發計劃目的에 必要한 資源의 分布狀況등을 把握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國富의 概念은 이와 같은 利用目的에 더욱 有用토록 이를 設定하고 있다.

즉 國富推計를 爲하여 國富를 定義함에 있어서는 包括될 國富資産의 條件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첫째 國富資産은 經濟的 意味를 갖는 資産이어야 한다.

둘째 國民經濟 全體의 立場에서 본 資本投下라야 한다.

셋째 人間能力에 依하여 產出된 資産中 有形資産에 限한다. 단 對外的인 權利關係는 例外로서 國富에 包含시킨다.

먼저 經濟的 意味를 갖는 資産이란 經濟主體가 經濟活動을 營爲하기 위한 手段으로 가지고 있는 財貨를 말한다. 經濟主體에는 勿論 家計나 企業, 政府 및 非營利團體까지 모두 包括하게 된다. 企業이 經濟活動을 爲하여 保有하고 있는 財貨란 例를 들면 事務所라든가 工場, 機械設備, 備品, 車輛運搬具, 製品, 貯藏品 또는 原材

料 등이 있을 것이며 家計가 經濟活動을 營為하기 為한 것이라면 生計를 目的으로 하는 것, 즉 住宅, 家具, 衣類 등을 말한다.

各 經濟主体가 經濟活動을 為한 手段으로 財貨를 取得하려면 資金 또는 資本이 所要된다. 이렇게 볼 때 經濟的 意味를 갖는 資產이란 各 經濟單位가 經濟活動을 為하여 投下한 資本을 具體化 된 形態라고 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骨董品이나 書畫 등의 藝術品, 天然記念物 또는 其他 文化財가 價值 (Value) 를 가지고 있음은 틀림 없으나 그 價值를 經濟的 價值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除外하게 된다. 오늘날 이와 같은 物品도 商品化되고 더우기 그 去來가 企業化됨으로써 交換可能 商品으로서의 財貨의 性格을 多分히 지니고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그와 같은 價值는 評價上에서 客觀性을 欠如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價值創造를 為하여 投下된 資本이 國民經濟 全体面에서 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經濟的 意味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的 意味를 갖는 資產이란 生産活動에 直接關係가 있는 資產과 國民生活을 營為함에 必要한 財貨라고 要約할 수 있다.

國民經濟란 概念은 個別經濟와 区分됨을 意味하는 데 그것은 個別經濟에서 資產으로 看做되는 것도 國民經濟面에서 볼 때는 資產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個人이 購入所藏하고 있는 財化가 모두 國富資產에 包括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國富에 包括될 資產은 그 資產을 取得키 為한 資本投下가 國民經濟面에서의 資本投下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國民經濟란 概念은 또 한가지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데 그것은 國富所在의 範圍를 規定한 것으로서 國富에 包括될 資産의 所在은 經濟活動의 本拠를 國民經濟內에 두고 있는 것이다. 즉 國富는 國內의 經濟單位가 所有하는 資産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國內의 經濟單位는 國內의 居住者를 뜻하는데 國內居住者 所有의 資産이란 所在面에서 볼 때 國內에 있을 수도 있고 國外에 있을 수도 있다. 國內居住者資産이 國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反對로 外國居住者의 資産이 國內에 있을 수 있음을 뜻하며 國家와 國家間의 關係로 볼 때 前者는 對外에 대한 債權이 되어 國富에 加算하게 되고 後者는 對外負債가 되어 除外하게 된다.

세째로 國富에 包含된 資産은 人間能力의 產物中 有形資産에 限한다고 하였는데 먼저 產物이라는 것은 그 資産이 人力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야 된다는 말인데 具體적으로는 自然으로서의 土地나 天然資源도 一國의 富를 構成하고 있는것이 事實이지만 이것은 人力이 미치지 않은 것이고 資本投下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具體화된 經濟的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埋立地나 干拓地가 이들과 区分되는 것은 勞動力과 資本을 投下한 것이기 때문이다.

人間能力의 產物이란 人力으로 再生産이 可能함을 뜻하므로 國富 資産은 再生産可能資産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다음에 國富에 包含할 資産은 有形資産에 限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實體的인 資産만이 國富에 計上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地上權, 鈷業權, 水利 및 營業權의 無形資産은 計上하지 않는

다. 이와 같은 資産은 私企業이나 또는 個別 經濟面에서 볼 때 모두가 資産임에는 틀림없지만 國富調査에 包括시킬 資産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다.

다만 對外的인 關係에서 國家와 國家間에 存在하는 無形資産은 國民經濟全體의 資産으로 看做하여 國富에 包含시킨다. 즉 無形資産은 對外關係에 限하여 例外로 한다.

以上에서 國富調査를 함에 있어 그에 包括될 資産의 性格 또는 限界를 中心으로 國富의 定義를 考察하여 보았는데 이것을 다시 要約하여 보면 「國富란 國內에 所在하는 再生産可能한 有形資産의 總額에 對外純債權을 合한 國民資産의 純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國富調査를 爲하여 定義된 이와 같은 國富의 概念이 반드시 原則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하나의 約束에 不過함에 留意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國富를 調査함에 있어서도 上記와 같은 概念은 반드시 適用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資料事情이라든가 調査目的에 따라 그 包括範圍를 中心으로 한 새로운 概念設定도 可能한 것이다.

第2節 國富推計의 目的 및 資産의 範圍

1. 國富推計의 目的

國富推計의 目的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學者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区分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주로 Kuznets의 說에 따라 다음의 4個 項目으로 要約하겠다.

첫째, 一定時期에 있어서 여러나라의 國力の 國際比較를 하기 위

한 것이다. 여기서 国力이라는 概念은 正常的인 經濟活動과 關聯시켜 規定되지 않으면 안된다. 戰力등은 正常經濟活動에 關聯된 經濟的 国力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한 國家에 있어서 異時點間의 富의 蓄積程度를 測定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結局 어떤 期間과 期間中의 資本蓄積의 速度(Tempo)를 把握 比較하려는 것이다.

셋째, 富의 存在量과 國民所得과의 關係를 解明하기 위함이다.

富(Stock)는 所得(Flow)의 源泉으로써 이 兩者間에 어떠한 關係가 있는가를 分析하고자 하는 것인데 最近 이 兩者의 關係에 있어서 특히 注目되고 있는 것의 하나는 資本係數의 相對的 安定性이라는 것이다.

네째, 國富의 種類別 構成 및 富의 分布를 把握하려는 것이다.

例를 들면 國富를 生産財와 消費財, 耐久財와 非耐久財등으로 区分 把握할 수도 있으며 富의 所有者別로 企業保有의 資產, 家計保有의 財產등으로도 把握하여 그 變動推勢를 알아 보려는 것이다.

2. 國富推計上의 資產範圍

國富推計의 測定範圍는 그 推計目的에 依하여 決定된다. 따라서 國富의 測定目的이 明確하게 決定되지 않는 限 그의 測定範圍를 具體的으로 規定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國富의 國際比較라는 目的보다도 國富의 構造를 把握하고 長期的인 經濟政策 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얻는데 目的을

문다는 觀点에서 国富의 推計範圍를 再生産 가능한 有形資産에 局限시키고 있다.

再生産不可能한 有形資産인 土地, 自然林, 埋藏 鈹物等 까지를 包含하는 国富推計는 国力의 國際比較의 利用에는 適合할지 모르나 国富構造의 解明이나 經濟政策의 立案을 위한 基礎資料로는 適當하다고 할 수 없다.

오늘날 一般的으로 国富의 推計範圍를 再生産 가능한 有形資産에 限定시키고 있는 것은 國民所得 乃至 國民生産物을 生産하기 위한 源泉으로서의 国富의 把握 즉 資本蓄積과의 關聯에서 国富問題가 重要視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 国富로서의 資産의 概念

1) 国富에 包含되는 資産은 어디까지나 經濟的 意味의 資産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企業이나 家計등의 各 經濟主体가 經濟活動을 營爲하기 爲한 手段으로서의 財貨 즉 經濟的 價値를 가지고 있는 物體를 말한다. 例를 들면 企業이 企業活動을 爲하여 所有하고 있는 工場, 機械, 自動車, 原料, 製品, 貯藏品등이며 家計에 있어서는 生活을 爲한 住宅, 家具, 衣類등이 여기에 該當되는 것이다.

따라서 藝術品 天然記念物과 같은 文化財, 骨董品, 圖書등은 經濟的 活動과는 無關한 存在이기 때문에 經濟的 資産에는 包含되지 않는다. 그러나 上記 骨董品, 圖書등이 經濟的 意味로서의 資産, 換言하면 商店에서의 去來對象이 될 경우에는 国富로서 捕促되어 잔다

2) 国富에 包含되는 資産은 各 經濟主体가 經濟活動을 營爲하기 爲하여 投資한 資本의 具體的 形態라야 한다. 이것은 各 經濟主体가 經濟活動을 爲한 手段으로써 財貨를 所有하여야 하고 이들 財貨의 取得을 爲하여는 純粹한 資本投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国富에 包含되는 資産은 人力으로 만들어진 再生産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土地, 天然資源등은 含包되지 않는 것이 原則이나 土地에도 開墾, 干拓등에 依한 造成된 土地나 改良에 依한 土地의 改良部分은 그 投下資本金만큼 國富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天然의 土地와 改良된 土地의 區分은 實際로 매우 어렵다.

한편 埋藏 鈹物, 天然林과 같은 天然資源도 土地와 같이 人力에 依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國富에서 除外되며 開發된 鈹石, 原木으로 採掘, 採伐生産된 것은 國富에 含包하고 있다.

3) 國富에 含包되는 資產은 國民經濟라는 全体立場에서의 資產으로 보아야 한다.

즉 私經濟面으로는 資產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國民經濟 全体的立場에서는 資產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企業會計에 있어서 貸借對照表의 借邊에 企業資產을 表示하고 있는 것과 같이 各 經濟單位의 資產도 全國民에 對하여 總括적으로 把握한 뒤에 國民經濟 全体에 關하여 考慮된 國民貸借對照表에 表示되는 資產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鈹業權, 工業所有權과 같은 無形固定資產은 私經濟에 있어서는 그의 獨占的 權利能力으로 보아 資產으로 取扱될 수도 있으나 國民經濟 全体로 부터 생각한다면 資產으로 볼 수 없다.

마찬가지 理由로 營業權, Good - will, 地上權등도 國富에 含包되지 않는다.

단지 이들 權利關係가 國民經濟의 範疇속에서 停止하고 있는 限 國富로서 取扱되지는 못하나 國民經濟 相互間 즉 對外的 關係가

發生한 경우에는 그 國民經濟全体的 資産으로써 國富에 包含되는 것이다.

즉 無形資産은 對外的 關係를 가지지 않는 限 國富로서 取扱되지는 않는다.

나. 國富에 包含되는 資産

國富에 包含되는 資産과 除外하여야 할 資産은 다음과 같다

包含되는 資産	除外되는 資産
<p>A. 固定資産</p> <p>I. 建物</p> <p>(1) 住宅</p> <p>(2) 非住宅</p> <p>II. 構築物</p> <p>(1) 交通施設</p> <p>(2) 治水灌溉施設</p> <p>(3) 其他</p> <p>III. 機械 및 裝置</p> <p>(1) 動力設備</p> <p>(2) 作業設備</p> <p>(3) 運搬設備</p> <p>(4) 其他</p> <p>IV. 船舶</p> <p>(1) 鋼船</p>	<p>A. 非經濟財</p> <p>芸術品, 天然記念物, 骨董品, 圖書</p> <p>B. 再生産不能財</p> <p>土地, 埋藏物, 天然林 등의 天然資源 (但, 開發된 鉍石.)</p>

<p>含包되는 資産</p>	<p>除外되는 資産</p>
<p>(2) 木船 (3) 無動力船 (4) 其他 V. 車輛 및 運搬具 (1) 鐵道車輛 (2) 航空機 (3) 自動車 (4) 其他의 諸車 VI. 工具, 機器具 및 備品 VII. 造成土地, 改良土地 VIII. 建設假計定 IX. 大動植物 X. 一般世帶의 所藏財貨 XI. 其他 B. 流動資産 I. 在庫資産 (1) 原料 (2) 半製品 및 在工品 (3) 完成品 및 商品 C. 對外資産 負債의 差額</p>	<p>原本은 國富로 含包) C. 私經濟的 資産 鈷業權, 工業所有權, 營業權, Good-will, 地上權 (但 無形資産 이라도 對外的 關係를 가지는 것 은 國富로 含包) 註. 이번 國富統計調查에서 土地는 原則的으로 國富에서 除外하는 方向으로 土地資産의 比重이 크 므로 (특히 農業分野) 現在 研究 檢計中에 있음</p>

다. 國富의 所在範圍

國富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國民經濟가 全體로서 가지는 純粹한 資産 즉 具體的으로는 各個의 經濟單位體가 所有하고 있는 純粹한 資産의 總計를 말한다.

그러면 現實的으로는 國富로서의 資産의 所在 즉 國內에 있는

資産은 全部 國富에 包含될 것인가 또는 國外에 있는 資産은 全部 國富에서 除外되어야 할 것인가를 明確히 規定하여 주어야 할 必要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國富의 所在範圍는 國內에 居住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純粹한 資産의 合計를 말한다.

즉 國內에 居住하고 있는 사람의 國內에 있는 資産뿐만 아니라 國外에 있는 資産도 全部 國富에 包含시키는 것이고, 國內에 있는 資産이라도 外國에 居住하고 있는 사람이 所有하는 資産은 全部 除外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國內에 있는 모든 資産에 國內居住자가 所有하는 對外資産을 더하고 外國居住자의 對外資産을 빼는 結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國富의 所在 範圍에 對한 區分을 좀 더 明確히 하기 위하여 그 基準이 되는 居住者の 概念을 밝혀 둘 必要가 있다.

居住者란 個人은 勿論 法人, 政府機關 民間非營利團體와 같은 모든 經濟主體를 包括하는 概念이다.

居住者와 非居住者를 區分하는 一般의인 基準은 國籍에 關係없이

- ① 經濟主體의 永住地
- ② 經濟主體의 業務遂行地
- ③ 顧府主의 永住地

동 3個 條件을 設定하고 이 中 2個 以上の 條件을 滿足시키는 경우 이른바 多數決 原則에 따라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를 判斷한다

그러나 實際의인 分類作業에 있어서는 그 限界가 曖昧한 경우가 많음은 勿論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領土內에 있는 非居住者의 資産은 우리나라의 對外負債가 되므로 國富에서 除外되고 우리나라 居住者가 外國領域內에 所有하고 있는 資産은 對外資産으로써 國富에 包含하게 되는 것이다.

才 3 節 国富統計의 年革

1. 国富統計의 起源

国富統計調査의 始源은 17世紀末 英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윌리엄 페티卿(W. Petty)이 1679年の 英国 国富를 2億 5千万파운드로 計算 發表한 것이 国富調査의 起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W. Petty가 計算한 国富의 内訳을 보면 土地 144 百万파운드, 家屋 30 百万파운드, 船舶 3 百万파운드, 牛馬其他 36 百万파운드로 土地가 總国富의 57.6%를 차지하고 있다.

W. Petty의 調査에 이어 킹(G. King), 벡카(M. Decker), 베크(H. Beeke) 등의 經濟 및 統計學者가 英国의 国富를 調査하였으며 1850년에는 처음으로 英国政府가 公式的인 国富調査를 實施하였다.

그 밖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및 이태리 등 諸國도 前後하여 国富를 調査發表하게 되었으며 1920~30年 사이는 그밖의 各國에서도 國民所得推計와 함께 国富調査를 實施함으로써 널리 普及하게 되었다.

2. 国富統計의 發展

17世紀末 英国의 Petty에 起源을 둔 国富統計는 그 以後 各國의 政府 및 經濟學者와 統計學者들에 依하여 繼承發展하게 되었는데 主로 論議의 対象이 되고 問題된 點은 国富統計의 対象, 範圍, 調査의 方法論, 나아가서는 利用目的에 關한 것 등이었다.

対象範圍에 關한 問題는 國家資産의 物質性에 關한 것과 交換可

能性에 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前者는 곧 非物質性 財貨 즉 各種의 權利가 調査對象에서 반드시 除外되어야 하는가 하는 點과 人間의 才能을 어떻게 取扱할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國富資産의 交換可能性 問題는 곧 資産의 價值論에 關한 것인데 初期만 하여도 主觀的 價值論이 支配的이었으므로 使用價值와 抽象的 價值와의 区分이 明確히 될 수 없었다.

價值가 內包하고 있는 移轉性 問題와 稀少性 및 效用性問題는 論議의 中心이 되어 왔다. Petty는 人間의 價值를 貨幣로 評價하였는데 그것은 富로 부터 發生되는 所得을 勞動價值라 보고 이것을 資本化한 것이다.

즉 Petty는 2億5千萬파운드의 物的 國富를 算出한 다음 그로부터 發生되는 年間的 總收入을 計上하고 同收入에서 年間 總消費를 除하여 나온 것을 勞動價值라 看做하고 이것을 다시 資本으로 還元하여 英國人을 4億17百萬파운드로 評價한 것이다.

人間價值를 評價한 Petty의 計算이 興味로운 方法임에는 틀림 없다. 富와 人間과의 關係를 볼 때 人間의 能力은 價值發生의 源泉으로 되며 富에 人間의 能力이 作用하여 創出되는 所得은 그 一部가 새로운 富를 形成하여 既存의 富에 加算된다는 見地에서는 이와같은 人間價值의 計算이 試圖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國富資産으로서의 人間價值는 아닌 것이다.

人間의 才能, 技術 또는 人間價值增大를 爲하여 投入된 資本 즉 教育費 支出등에 對하여는 이들을 資産으로 看做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一般的인 見解이다.

調査方法面에서 볼 때 W. Petty에 起源을 둔 英國의 國富調査가 物的方法인데 反하여 歐洲大陸諸國의 調査는 人的方法을 取했다는 點에 留意하여야 한다.

즉 Petty의 調査는 國富를 土地, 家屋, 般舶, 家畜類 貨幣用 地金物品 및 商品 등으로 大別하고 各 項目의 個個 單價를 計算하고 이에 總數量을 適用하여 國富總額을 算出한 것이다.

Petty의 物的方法은 킹 (G. King)에 이르러 大幅的인 改善을 보였다.

이 와같이 英國의 物的方法에 對하여 이태리, 도이취, 오스트리아 등이 大陸諸國에서는 人的方法으로 國富를 調査하였는데 여기서 利用된 資料는 主로 財産稅統計와 相統稅統計였다. 財産稅統計를 利用한 具體的인 例는 독일의 쾰릭히가 調査한 1911年 독일 國富調査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프로시아 課稅財産總額 1,040億마르크를 基礎로 하여 脫稅財産額을 課稅財産의 20%로 보고 免稅點以下 財産額 155億 마르크 非課稅財産額 150億마르크 合計 1,553億 마르크를 若干 늘여 同年의 프로시아 私入財産總額을 1,600億마르크로 推算하여 여기서 프로시아의 人口 1人當財産을 4,000마르크로 計算하였다.

그는 다시 이 1人當 財産에 獨逸總人口를 곱하여 獨逸私入財産總額을 2,600億마르크로 算出하였다.

여기서 官公純財産 250億마르크를 合算하여 獨逸의 國富를 2,850億마르크로 算出하였다.

그 다음에 火災保險統計와 余他 資料에 依하여 求한 國富 3,310~3,370 億마르크와 앞에서 算出한 2,850 億마르크와의 平均値인 3,100 億마르크를 1911 年の 獨逸國富額으로 發表하였다.

國富의 概念問題라든가 調査의 方法論 등에 對하여 學者間에 傳統的인 論議가 歐洲諸國에서 繼續되어 온 가운데 新大陸인 美州에서는 보다 實質的인 面에서 國富가 調査되고 發展되었다.

여기서 美國의 國富統計小史를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美國의 國富調査는 大體로 1850~1922 年間과 1922 年以後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

最初의 調査인 1850 年統計를 爲始하여 前期間中에는 都合 9 回의 國富調査가 實施되었으나 모두가 概算資料에 不過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當時의 統計가 調査方法面에서나 對象資産을 規定함에 있어 單純하였다는데 緣由한다.

즉 1850 年과 60 年 및 70 年の 3 個調査는 그 對象範圍를 "課稅對象이 되는 모든 動産과 不動産"으로 하고 推計節次를 보면 두 段階로 要約되는데 먼저 各郡(Counties)에서 모든 動産과 不動産의 課稅標準額을 國勢調査局에 報告토록 하고 다음에 地方法務官들을 通하여 別途로 調査한 市價와 課稅標準額과의 平均比率을 이에 適用하여 市價를 評價하였다.

1970 年調査의 경우에는 課稅資料에서 누락된 免稅資産의 價額을 加算하여 두기 위하여 地方法務官들의 판단에 따른 調整이 있었다.

이와같은 初期調査의 利點은 첫째로 市價에 依한 資産評價를 期하였다는 點과 둘째로 洲單位(1850 年 및 60 年) 또는 郡單位

(1870 年 및 80 年) 로 調査되었다는 點을 들 수 있는 反面에
그들 調査가 內包하는 欠點으로는 첫째로 免稅資産에 關한 基礎資
料의 欠如로 國富로 捕捉되지 못한 有形資産이 있었다는 點과 들
째로 地方稅吏의 課稅基準鑑定上 劃一性을 期하기 어렵다는 事實
나아가서는 動産의 分類上 各郡間에 統一性을 欠如하였다는 點에서
세째로 郡에 따라서는 抵當權과 같은 無形資産까지 調査하였다는
事實이다.

1880 年度 調査時에는 不動産의 評價에 새로운 接近方法을 導入
함으로써 調査方法上 약간의 進展이 있었다고 보겠다.

즉 課稅標準額을 市價로 換算하는데 適用한 比率을 從來는 單純
히 地方法務官의 報告資料로 하였으나 이때 부터는 中央의 國勢調
査局이 直接推定하여 그것을 利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같은 初期 美國의 國勢調査는 모두가 特別法에 依拠 實施되
었으며 1902 年 國勢調査法의 制定以後는 同法에 依拠하였다.

연방通商委員會 (Federal Trade Commission) 가 主管이 되어
實施한 1922 年 國勢調査는 調査對象範圍의 策定이라든가 基礎資料
利用面에서 劃期的인 進展을 보였는데 여기서는 自然土地와 開墾土
地 (造成土地) 와의 分離 免稅對象不動産의 積極的인 捕捉方法을 適
用하였으며 評價問題에서는 帳簿價格을 經常再調達 價格으로 換算하
는 方法을 導入하였다.

聯邦通商委의 調査에 이어 對象年度를 1922, 30, 38 年으로 하여
實施한 Robert R . Doane 의 調査는 美國의 國富調査를 더욱 體

系化 시키는데 공헌한 바가 크다.

Doane의 調査結果는 "美国 国富의 構造 (The Anatomy of American Wealth)"로 發表되었다.

그 以後 国民經濟調査局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後援을 얻어 Alvin B. Tostlebe, Leo Grelber, David Blank, Simon Kuznets, Daniel Creamer 등의 調査가 美国 国富推計의 精度向上에 寄与하였다.

특히 Raymond Gold Smith는 그의 著 "A Perpetual Inventory Wealth"에서 恒久在物調査法 (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提示함으로써 国富의 評價方法上 새로운 方案을 創案하여 오늘날 各 國에서 利用되고 있다.

즉 골드 스미스의 恒久在物調査法은 国富의 調査方法 選定에 確固한 基準을 提示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国富가 国民所得의 一定分 즉 흐름으로서의 国民所得中 投資支出이 累積된 것이 곧 国富라 보고 이를 追跡捕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国民所得과 国富는 投資와 資本消耗 및 新投資 등 3段階 循環過程이 繼續되는 面에서 兩者는 不可分の 關係에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国富에 包括될 資産의 性格에 對하여도 從來 繼續되어 온 論爭을 배제하고 国富資産은 再生産 가능한 有形資産 (Reproducible Tangible Asset)으로 規定하였다.

이렇게 볼 때 歐洲에 起源을 두고 發展되어 온 國富統計調査는 美國의 골드.스미스에 와서 더욱 体系化되고 開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세아에 있어서는 日本의 國富調査가 상당한 歷史를 가지고 있다. 즉 日本의 國富調査는 1841年度 부터 實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當時 여러 日本 學者들과 外國의 經濟學者들이 各處에 分散되어 있는 既存資料를 概括적으로 蒐集推計한 것에 不適當한 것으로 公式調査라고는 볼 수 없다. 体系的인 國富調査는 日本銀行이 調査한 1905年(明治38年)의 國富調査라고 하겠다.

日本銀行은 繼續해서 1910年과 17年の 國富를 調査 發表하였으며 그 다음은 國勢院 主管으로 1913年과 1919年度를 調査하고 1924.30.35年度는 內閣統計局이 調査함으로써 戰前까지 8회의 公式推計가 있었다. 當時의 調査資産의 內容을 보면 土地.天然森林資源 및 地下資源, 生産者保有財. 家計保有財. 金. 骨董品. 圖書館備置書籍, 博物館所藏美術品, 其他 蒐集品 및 對外純債權 등으로 되어 있어 國富의 概念規定을 넓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5年 調査는 國民所得推計와 併行實施하였는데 當時의 國民所得推計는 單純한 生産接近方法에 依拠한 매우 原始的인 것이었으므로 國富推計도 그 精度를 짐작할 수 있겠다.

그후 大戰으로 因하여 日本의 國富推計는 1955년까지 중단되었으나 終戰直後 戰災에 依한 損失調査가 한번 實施되었다.

즉 1947年에 經濟安定委員會(現 經濟企劃廳)는 「太平洋戰爭의

戦争被害調査를 実施. 發表하였는데 이것은 日本의 戦中 國富變化研究에 重要な 資料가 되고 있다.

經濟企劃廳의 主管으로 實施된 1955年 日本의 國富調査는 1953年度부터 準備作業을 하여 1957年度에 最後結果가 나왔는데 이 調査는 그 規模에 있어서 가장 크고 調査의 方法과 國富의 概念 設定등에 있어서 日本國富調査史上 가장 精度를 期한 調査라고 볼 수 있다. 本 調査를 爲하여 日本政府는 1953年에 計定이나 會計學등에 造耶가 깊은 政府官吏, 學者 및 民間人 都合 24名의 會員으로 構成된 國富調査會議을 構成하고 基礎資料의 蒐集. 分析 國富의 定義, 調査의 方法論 등 廣範圍한 研究를 實施하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國富調査會議의 建議事項中 一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1955年 調査의 主目的은 國民所得과 國富와의 關係를 明白히 하고 政府의 經濟政策이나 計劃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얻는데 두어야 한다. 따라서 過去와 같이 國富調査의 目的을 여러가지로 設定하여 애매한 것이 되지 않도록 集約的인 目的으로 轉換하여야 한다.

둘째 調査에 包括될 資産은 經濟活動에 依한 産物이어야 하고 그것은 또한 日本國 居住者의 所有物이어야 한다. 즉 國富資産은 UN의 "國民計定體系와 그 附表(S. N. A)"에서 定義된 資産에 限한다.

세째 資産의 評價는 從來 報告資料를 集計함에 不過한 主觀的인 方法으로 할 것이 아니라 客觀的인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즉 再調達價格으로 評價하여야 한다.

네째 調査結果는 S. N. A의 報告案과 같이 産業別로 區分하여
야 한다.

다섯째 調査는 使用者別 基準에 依할 것이 아니라 所有者 基準
에 依하여야 한다.

여섯째 劃一的인 資産分類方式을 制定하여야 한다.

일곱째 家計의 福祉生活程度變化를 調査하기 위하여 家計保有 耐
久財도 調査하지만 最終統計表에서는 이를 區分 整理한다.

國富資産의 概念과 資産의 評價方法 및 調査의 目的을 明示한
위와같은 國富調査會議의 建議事項은 1955年 日本의 國富調査가
크게 發展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1955年 調査의 規模를
參與人員과 予算額으로 보면 監督者級이 800名, 調査員이 7,952名
이고 最終集計에 動員된 人員은 延人員 140,000名에 達하며 總
經費는 134.4百萬圓에 이르렀다. 1955年 調査의 具體的인 事項
은 第3章에서 詳細히 考察될 것이다.

1955年 調査에 이은 1960年度 調査는 지난 5年間の 國富資産
變化推移를 보기 爲하여 實施된 것인데 家計部門(건축물은 例外로
調査함)이 除外된 것 以外는 1955年調査와 同一한 概念, 分類方
式을 따랐다.

다음에 1965年度에는 國民經濟計算體系 整備의 一環으로 企業部
門의 有形固定資産만을 調査한 特別調査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資産
의 調査를 純概念과 總概念으로 區分하였다. 이 調査는 企業을
國營, 地方公營, 法人 및 個人企業으로 4大別하고 國營企業에는

14 個의 特別會計 (造幣局, 印刷廠等) 와 13 個의 政府關係機關 (專賣
公社, 國有鐵道等) 과 其他 政府企業 (住宅, 道路公團等) 14 個를
包含시켜 自計申告에 依한 全數調査를 하고 地方公營과 法人 및
個人企業에 對하여는 各各 標本調査에 依하였다.

第 2 章 國 富 の 評 價

第 2 章 國 富 의 評 価

第 1 節 資 産 評 価

1. 資産評価의 意義

資産評価 (Valuation) 란 一定時点에서 企業이나 經濟的 價値를 所有한 諸單位가 所有하고 있는 諸資産의 經濟的 價値를 評価時点의 貨幣價値로 評価하는 것이다.

評価時期에 따라 一般企業에서는 取得價格으로 評価되는 開業時의 評価와 売却時價 또는 処分價格으로 評価되는 破産 및 清算時의 評価, 그리고 収益力이 基礎가 되는 合併 및 讓渡時의 評価, 繼續企業에 있어서 決算期의 評価가 있다.

또한 再評價法에 의한 評價와 任意的 評價, 資産單位別 評價와 繼續企業全體를 單位로 하는 評價等 利用者의 目的, 評價時期에 따라 많은 評價方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評價對象의 中心이 되는 것은 會計學上의 評價와 直結되므로 會計學上의 評價를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會計學의 主流를 形成하는 原價主義理論에 基礎한 資産評價란 企業實體 (The Business Entity) 概念을 背景으로 한 繼續企業 (The going concern, 企業은 일단 設立하면 企業體 自体가 株主나 其他 出資者와는 別個의 獨立된 人格으로서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永続한 다는 假定)의 基本的 假定을 認定하는 限 資産의 經

濟的 價値를 評定하는 것이 아니라 正確한 期間損益計算必要上 繼續되는 營業活動中 이미 消滅한 原價와 살아 남은 原價를 區別 計算하여 消滅한 原價는 期間費用에 살아 남은 原價는 資産에 計上하는 것이다.

會計理論에서 先給費用과 建物, 機械等の 有形固定資産을 同一한 原價要素로 解析하는 理由를 알 수 있을 것이다.

前述한 節次에 依하면 販売가 目的이 아닌 永続되는 數期間의 營業活動에 걸쳐 그 原價가 徐徐히 消滅되는 固定資産은 正確하게 同額이 減價된 資産의 中古品 市場은 存在하지 않으므로 經濟的價値評價는 不可能하고 살아 남은 原價와 消滅한 原價를 人爲的인 減價計算節次에 依하여 区分하는 것이다. 그러나 國富推計上의 資産評價는 一般會計處理上의 評價와는 性質을 달리하고 있다.

왜 나하면, 國富推計上 資産이란 基準時点에서 그 資産의 收益生産力에 基礎하여 評價한 經濟的 意味의 資産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經濟的意味의 資産이란 經濟活動上 資本스톡(Stock)으로서 機能을 가지고 帳簿上 評價된 單純한 資産價値와는 다른 그 資産이 지니고 있는 市場價格으로 評價된 것을 意味한다.

다만 國富를 構成하고 있는 大部分의 資産이 市場去來와 無緣한 狀態에 있으므로 眞正한 市場價格으로 評價하는 것은 어려운 難點이 많다.

이러한 難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우리는 會計學上의 評價方法을

援用할 수도 있고 餘他 特殊評價方法을 利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國富推計上 資産評價가 經濟活動上의 資産으로서, 換言하면 所得(Flow)과 關聯한 資本量(Stock)을 評價한다는 基本的인 思考를 忘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2. 評價基準

資産價額은 評價基準이 相異함에 따라 同一한 經濟的 價値를 가진 資産이 相異한 價額으로 評定될 수 있으므로 特別한 研究가 必要하다.

會計學上 原價·時價·低價·時價以下等 여러 評價基準이 있으나 近代會計學의 主된 흐름이 原價로 一貫되어 왔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債務弁濟의 可能性이 있는 即 換金化될 수 있는 資産만을 資産으로 認定하는 商法에서는 時價를 原則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利用目的이나 評價時期等에 따라 評價된 結果値가 다르므로 本稿에서는 國富統計調査의 目的에 비추어 通常의으로 援用되고 있는 評價基準은 列挙說明하고 資産種類別 適用限界性 推計上의 問題點等을 緩和 除去할 수 있는 複合的인 評價基準을 提示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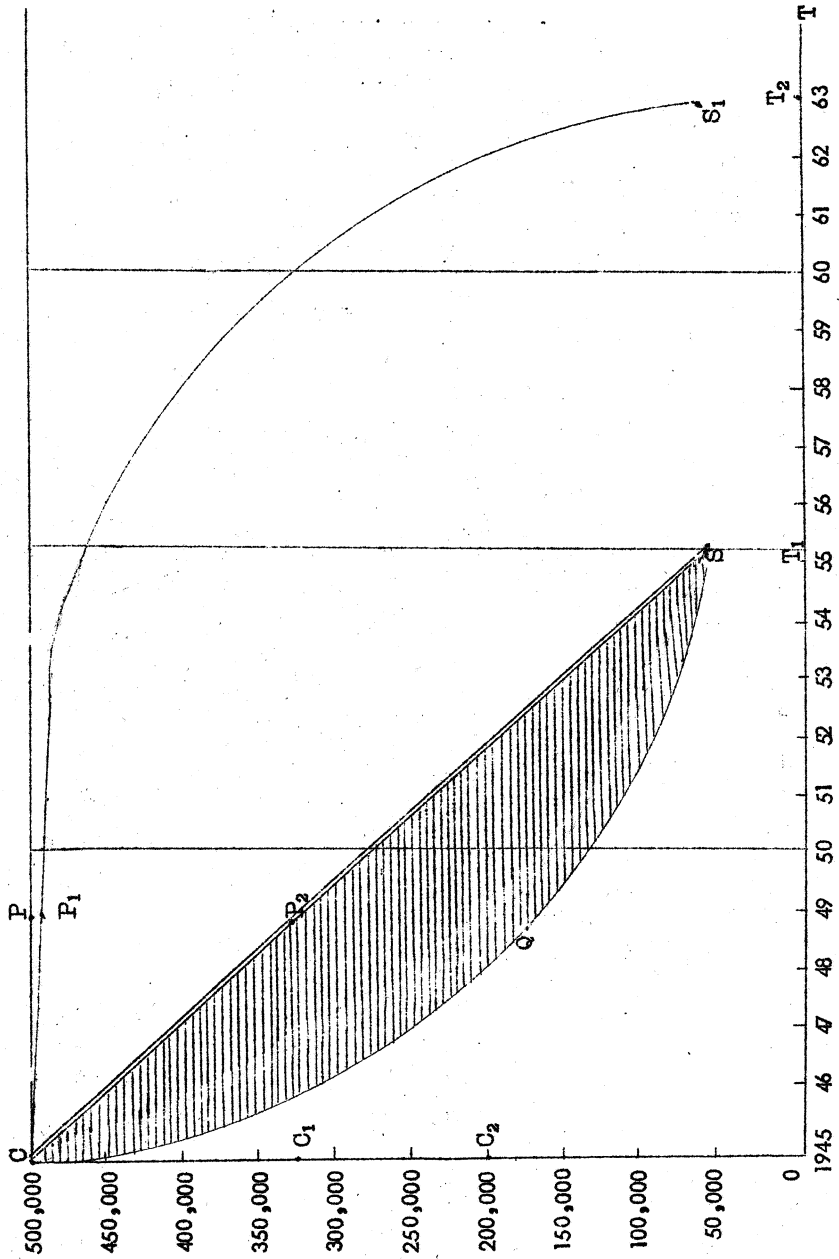
가. 原價基準 (Cost Basis)

資産을 原價로 評價하는 것을 會計學上 原價主義 實費主義라

부르고 있다. 이에 의하면 原価는 實際去來에서 나타난 檢証 가능한 客觀的 事實이기 때문에 時価評價에서 犯하기 쉬운 恣意的인 判斷이 介入할 餘地가 없고 또한 時価로 評價하면 投資者의 實際出資額을 表示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原価는 計算도 便利하며 時価에 比하여 有用한 評價라 主張한다.

美国會計學을 代表하는 W. A. Paton, A. C. Littleton 과 獨逸의 Schmalenbach, E 등은 原価主義를 強力히 支持하고 있으며 近代會計學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物価가 比較的 安定된 先進諸國에서는 그 妥當性이 認定될는지 모르나 우리나라와 같은 經濟條件下에서는 難點이 많고 特히 會計學上의 評價와는 性格을 달리하고 있는 國富推計上의 立場에서 볼 때 原価는 많은 欠陥을 內包하고 있다.

資産の減価曲線



1. 定額法 $D = \frac{C - S}{n}$ D ... 期間減価費
 C ... 取得価額
 S ... 残存価額
 n ... 推定耐用年数
 r ... 減価率

2. 定率法 $r = 1 - \sqrt[n]{\frac{S}{C}}$ D = 帳簿残額 × r
 r = 0.20567

機械 A の 年減価額

n	定 額 法	定 率 法
1	45,000	102,835
2	45,000	81,684
3	45,000	64,885
4	45,000	51,540
5	45,000	40,940
6	45,000	32,520
7	45,000	25,831
8	45,000	20,519
9	45,000	16,299
10	45,000	12,947
計	450,000	450,000

예를 들어 法定耐用年數는 10年이나 實際 18年間 使用한 後 廢棄処分한 機械 A를 1945年에 500,000 원에 購入하였다고 假定하자.

<圖表 1>은 機械 A의 減價 및 殘留原價를 表示한 것이다. 物價가 不變이라 假定하여도 法定耐用年數와 實質耐用年數가 一致하지 않아 T_1 과 T_2 間에는 8年이란 差異가 나타난다.

CS' 曲線은 機械 A의 生産力變化를 나타내고 CS 線은 法定耐用年數와 定額法에 基準하여 計算된 減價線이며 CS 曲線은 法定耐用年數와 定率法에 依한 減價曲線이다.

資産의 經濟的 價値는 期待한 去來收益을 資本現物化한 것이므로 時間의 經過에 따라 그 價値가 減耗하는 것이다.

資産의 減價計算을 經濟學的인 側面에서 考案할 때 1949年 末의 減價額은 PP_2 (180,000 원) 이나 PQ (341,884 원) 가 아니라 PP_1 (10,000 원) 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企業체에서 定額法이나 定率法의 妥當性에 立脚하여 어느 하나를 適用하는 경우는 드물다.

定額法은 資産의 價値減少가 純全히 使用期間에 基因한다고 假定하지만 經營革新·技術開發·當該資産이 生産하는 製品에 對한 嗜好·變化·政府의 政策, 管理의 程度, 偶發的인 天災地變等에 依하여 發生하는 減價는 어떻게 表示할 것인가?

그리고 定率法의 假定은 購入初年度에는 資産의 價値 減耗度가 높고 後年度에는 낮다고 보는데 初年度에는 修繕費等의 所要額이 적고 後年度에는 많기 때문에 減價費와 修繕費의 合計

額이 每年 同一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保守主義原則上 初年度에 많이 計上하여 企業의 安定을 期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購入初年度에 減耗度가 높지도 않고 修繕費가 낮지도 않다는 事實을 考慮할 때 上記 保守主義原則도 國富推計의 評價에는 問題점이 있다.

定額法 (Straight - line Method), 定率法 (Reducing charge Methods), 比例法 (Production or working hours Methods), 年數合計法 (Sum of the years' digits Methods) 廢棄 및 更新法 (Retirement and Replacement Systems), 加速償却法 (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中 그 어느 하나를 利用하여도 評價結果는 同一資產에 對하여 各各 相異하게 나타난다.

勿論 그 適用對象은 資產의 性格이나 形態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結果는 會計學上 減價計算의 自体矛盾을 反映한 것이 然 할 수 있으며 理論的 妥當性을 가질려면 <圖表 1>에서 S와 S'의 時差가 없어야 한다.

- 다음 原價基準을 使用할 때 그 欠陥과 問題점을 살펴보면
- 1) 推計上의 問題점은 別問題로 하더라도 經濟的 價值가 同一한 資產일지라도 取得時期나 製作時期가 相異하면 評價된 價值가 다르게 나타난다.
 - 2) 物價變動等 經濟與件에 變化가 甚할 때는 資產의 實質的 價值를 나타내지 못하며 物價指數에 依하여 數值를 修正한다 하더라도 技術 및 經營革新 偶發的인 價值減耗等を 反映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物価指數를 求하기 힘들고 作業이 複雜하다.

- 3) <圖表1>에서 S와 S'사이에는 8年の 時差가 나타난다. 卽 現行法規上의 耐用年數는 10年인데 實際 18年을 使用하였으므로 現行法規를 改正하지 않는 限 또는 이의 補完策이 講究되지 않는 限 物價나 經濟條件이 不變이라도 減耗分을 差減한 殘留價值와 現實的인 資産價值는 一致할 수 없다. 現行法規는 企業會計上 強制性이 賦與되어 있으므로 影響力이 크다. 故로 原價主義에 立脚한 帳簿價值는 國富推計上의 資産評價와는 距離가 멀다.
- 4) 原價基準을 一貫하면 取得原價가 없는 國家나 地方公共團體 또는 個人 등으로부터 無償으로 賦與받은 資産은 評價不能이라는 結論이 나온다.
- 5) 會計帳簿에 記錄된 原價는 期待한 未來收益의 資本換價額 卽 時價以外에 會計實務上 慣行이나 保守主義立場에서 正当化되는 價額이 加減되어 있기 때문에 經濟條件이 不變이더라도 資産의 實質價值를 反映하지 못한다.
- 6) 原價는 取得時點에 따라 記錄되어 있기 때문에 適切한 物價指數로 換算하지 않는 限 異時點間의 富의 比較가 不可能하다는 欠陥이 있다.
- 7) 上記 몇가지 問題가 解決된다고 하더라도 現實的인 問題로서 法人体는 法規의 強制性으로 帳簿組織을 保有하고 있으나 個人企業體는 帳簿를 거의 保有하고 있지 않다. 資産의 取

得時期 및 價格이 不分明하여 適用可能性이 적다.

勿論 最近에 取得한 資產은 所有主가 記憶에 依하여 對答할 수도 있겠으나 資產種類가 많고 取得時期가 오래 된 것은 把握하기가 困難하다.

以上 列挙한 外에도 여러가지 制約이 있다. 그러나 原價基準은 一般企業에서 利用할 수 있는 確實한 資料가 될 수 있으며 代置原價의 算定 時價推定의 資料가 될 수 있다. 이러한 現實的 利點이 國富推計上 日本을 비롯한 몇몇 國家에서 原價基準을 採択한 主要理由가 되었다.

나. 時價基準 (Market-Price or Current-Value Basis)

時價란 一定時点에서 市場에서 販賣者와 購買者間의 合意에 따라 決定된 價格으로서 買入時價와 販賣 내지 売却時價로 区分되나 一般的으로 會計學에서는 買入時價 即 再買時價를 意味한다.

時價는 理想的인 資產評價基準으로 財貨의 合당한 時價가 그 財貨에 對한 購買者의 適切한 滿足度를 表示하듯이 市場에서 形性되는 資本財 即 有形固定資產의 時價도 그 資產取得者가 그 資產을 經濟活動에 使用함으로써 實現할 수 있으리라 豫想되는 收益의 適切한 現在價值를 勘案하여 取得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未來收益을 資本現價化한 時價는 利用目的에 따라 時点別 部門別 富의 比較가 可能하며 評價의 共通分母가 一定時点의 時價이므로 國富推計의 目的에 合당한 評價基準

이라 할 수 있다.

時價의 理論的 根拠를 들어 보면 大概 原價基準의 欠陥에서 부터 始作된다.

- 1) 時價는 資産의 價値變動을 招來하는 諸要因 即 正常的 磨滅, 自然現象과 風化作用에 依한 腐敗腐蝕, 不可抗力의인 天災地變, 市場條件, 流行스타일, 需要構造 等の 變化에 따른 陳腐化 經營 및 技術革新 等으로 일어나는 資産의 廢化 需要增加 製造方法變更 政府의 政策等으로 惹起하는 不適應等 機能的 物理的 要因이 自動的으로 正確히 反映되어 나타난 資産의 現在 實質價値를 그대로 나타낸다.
- 2) 時價는 理論的으로 볼 때 去來雙方이 壳買目的 資産에 對한 充分한 豫備知識을 가지고 雙方合意下에 形成된 市場價格이므로 오히려 恣意的인 要素의 介入可能性을 減혀 준다.
- 3) 原價基準에 따라 評價하면 相異한 價格으로 評價되는 資産도 經濟的 價値가 同一한 資産이면 評價額의 利用目的 取得時期 取得方法 等이 相異하더라도 完全한 競爭條件만 造成되면 同一價格으로 나타난다. 具體的으로 稅源捕捉을 目的으로 評價한 資産價額과 投資者가 投資目的으로 評價한 資産價額は 同 資産일지라도 差異가 發生하며 原價基準에 依하면 收益力見地에서 經濟的 價値가 同一하더라도 取得時期가 相異하면 帳簿價格에 差異가 나타난다. 그러나 時價로 評價하면 이러한 欠陥이 除去 緩和된다
- 4) 代置原價나 再取得原價를 算定하려면 該當資産의 物價指數가 必要한데 現實的으로 그 求得이 容易하지 않다. 物價가 安

定된 條件下에서는 代用物價指數를 使用하더라도 큰 差異가 發生하지 않겠지만 激甚한 物價變動이 있을 경우에는 代用物價指數는 意義를 喪失하게 된다. 또한 物價指數를 求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計算이 複雜하다. 그러나 時價에 依하면 上記 勞苦를 덜 수 있고 그 數值도 比較的 正確하다.

5) 會計帳簿에 記錄된 價額은 記錄以前에 會計担当者가 내린 會計的 判斷에 依하여 記錄된 것이다. 이때 會計担当者的 個人的인 意見은 時價에 依하지 않는 限 除去할 수 없다.

그리고 帳簿價(原價)는 資產의 經濟的 價値와는 無關한 會計慣習이나 保守主義原則上 正当化되는 價額이 加減되어 있는데 이것도 時價에 依하면 除去할 수 있다.

上述한 것 외에도 時價의 論拠는 많다. 그러나 時價가 實査上 難點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떤 企業을 評價할 때 個別資產을 独立的으로 評價한 額을 合計하여 그 企業의 價値로 보는 方法과 各種資產의 集合體인 繼續企業을 全體的으로 評價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다. 前者의 경우 個別資產을 各各 独立的으로 評價하여야 하는데 萬若 販賣가 이루어진다면 모르되 有形固定資產은 ① 販賣가 目的이 아닌 資產이 大部分인데 어떻게 時價를 決定할 것이며 ② 販賣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技術開發 經營革新 正確한 減價計算은 評價에 어떻게 反映시킬 것인가 그리고 評價目的上 各種資產을 比較的 同質的인 單位로 集合分類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中古品市場이 組織化되어 있지 않거나 全無한 狀態下에

서 合理的인 評價基準을 어떻게 設定할 것인가는 問題가 아닐 수 없다. 具體적으로 恆常 市場價格이 形成되는 在庫資產은 問題視되지 않겠으나 建物이나 構築物等은 市場이 極히 發見하기 어렵고 機械 및 裝置도 經營革新이나 技術開發에 依하여 製作된 初期에는 去來量이 많으나 時日이 經過함에 따라 漸減되는 것이 一般的인 現象이다. 또한 理論上 評價하려는 特定時점에 各種保有資產을 全部 市販할 경우 理想的인 時價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도 不可能한 일이며 企業이나 其他資產單位가 新品資產만을 保有하고 있는 境遇는 거의 없고 또한 所有하고 있는 資產과 正確히 同量이 減價된 同一資產의 市場은 現實적으로 存在하지 않는다.

前記의 兩評價方法으로 評價한 時價額은 서로 一致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個別資產의 理想的인 時價評價가 可能하다 하더라도 역시 그렇다. 個別資產評價의 合計額과 收益力이 基礎가 되어 綜合評價된 繼續企業의 價値는 同一業체를 同一評價者가 同時評價하여도 一致하지 않는 것이 當然하다. 理由인즉 繼續企業評價에는 他企業에 比하여 超過收益力을 나타내는 營業權 (goodwill) 營業 및 製造上의 秘密이나 独占關係 特許權 商標權 等の 無形資產의 作用 機械의 配置 等に 따라 生産力이 달라질 수 있는데 資產別 評價에는 前記事項들이 價値로 反映될 수 없기 때문이다. 業체가 確保한 市場占有나 立地條件도 마찬가지이며 無形資產을 評價對象에서 除外함을 原則으로 하고 繼續企業을 한 單位로

評價할 때 無形資産의 帳簿價額 自体는 除外되더라도 他資産에 그 價値의 一部가 轉價됨이 不可避한 경우가 많다.

특히 時價는 現實적으로 發見하기 어려운 資産(建物 構築物等)이 많으므로 推定에 不過한 경우가 許多하여 恣意的인 要素가 介及할 餘地가 많다.

以上과 같이 時價도 國富推計上 原價와 같이 많은 欠陷을 內包하고 있으며 推定の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推定時價를 實際 市場에서 去來되는 理想的 時價에 近似시키려면 技術條件 市場條件 物價等 一般經濟條件이 正常的이어야 한다는 假定이 必要하며 對象資産의 需要供給狀態, 價格變動, 技術水準等に 專門的인 知識이 要求된다.

다. 代置原價基準 (Replacement Cost Basis)

有形固定資産을 評價하는데 있어서 가장 理論的이며 理想的인 基準은 時價이나 現實적인 制約性을 考慮할 때 이에 代身할 수 있는 方法이 時價를 推定하는 것이며 이 推定時價를 計算하는 一般화된 方法이 減價累計額을 差減하여 代置原價를 算定하는 것이다. 그 合理性與否는 後述하기로 하고 그 算式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text{ 總代置原價} = \text{取得原價} \times \frac{\text{評價時點의 當該資産의 物價指數}}{\text{取得時點의 當該資産의 物價指數}}$$

$$2) \text{ 代置原価} = \text{總代置原価} - \left(\text{減価累計額} \times \frac{\text{評價時点의 當該資産의 物価指数}}{\text{取得時点의 當該資産의 物価指数}} \right)$$

이것은 原価基準의 修正에 依한 方法으로 結論부터 말하면 現實性을 감안하여 考察할 때 어느 程度 合理性이 認定되나 그 計算이 複雜하고 制約性이 많다. 總額概念 (gross)인 總 資産을 時價로 推定하는데 있어서 物價變動을 考慮하여 取得原 価를 總代置原價로 評定하고 該當物價指數로 修正한 減價分을 控除하여 代置原價를 算定한다. 이 計算을 위하여는 物價指數 가 必要하다. 이것은 評價對象인 資産單位가 무엇인가에 對하 여 直接 問題를 惹起시킨다.

이 問題는 資本財의 物理的 特性이나 그 生産力이 變動함에 따라 同時에 資本財産業의 生産性이 變하는 動態經濟下에서는 重要하다.

이 問題를 考察함에 있어서 C'dward Dension의 所說에 依하면 評價單位는 物理的 特性에 따라 分類하여야 하고, 分類 된 單位間의 差額は 新旧資産 사이에 나타난 實際生産原價의 差額과 相關關係가 成立하도록 調整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美國勞動統計局이 使用한 理想的인 方法이라고 主張하 고 이어서 이 方法에 依하려면 資本財의 物理的 單位를 그 資本財의 生産費 (時間의 經過에 따라 低下되는 것이 上例)나 性能 (生産力, 技術革新等으로 時間의 經過에 따라 좋아지는 것

이 一般的임)과 混同하지 않도록 注意를 喚記시키고 있다.

처음번 混同은 容易하게 避할 수 있다. 어떤 機器가 物理的 特性이나 生産能力은 異時點間에 不變인데 産出面에서 生産性이 2倍가 되었다고 假定하자(機械當 實質的인 資本投入 必要額이 半減되었음) 이것은 資本設備의 數量이 半減된 것이 아니며 事實 아무런 變化도 發生하지 않았기 때문에 機器의 生産性이 2倍가 되었다는 것을 意味할 뿐이다. 機器數量은 機器를 生産한 特定期間的 技術水準(生産性)下에서 所要된 機器의 實際原價를 나타낸다.

時日이 經過함에 따라 어떤 特定機械를 生産하는데 效率이 높아졌다면 그 機械價格은 利潤을 包含한 平均要素價格의 變動과 當該機械 生産에 所要되는 要素의 平均生産性的 變動이 一致하지 않는 程度까지 움직일 것이다.

다음 機械의 모델(model)이 變함에 따라 資本財의 物理的 性能과 生産力이 變動한다면 實際原價에 配分된 要素의 比率에 따라 機械의 實際原價를 調整하여야 한다고 Dension은 主張한다. 만약 新舊資産의 實際原價差異가 基準期間에도 適用될 수 있다면 이 方法에 依하여 表示된 價格은 基準期間의 技術水準下의 資産原價 또는 投下量으로서 實際原價의 意味를 갖는다.

이 方法은 그 效果가 物價指數의 性格如何에 따라 左右됨은 勿論이다. 1960年末 同年에 設置한 新規有形固定資産價額이 100,000 원이고, 1960年 以前에 生産하여 아직 在庫로 保有하

고 있는 資産이 있는데 1960년에 新品으로 再生産하는데는 2,000,000 원이 所要되지만 現在 生産에 寄与하는 거와 똑같은 現技術을 利用하여 代置하는 데는 1,500,000 원이 所要된다고 하자 前述한 方法에 依하면 1960年末 資産總額은 1,600,000 원이 아니라 2,100,000 으로 評價될 것이다. 換言하면 旧資産은 生産力에 依하여서가 아니라 同日字의 再生産價格을 比較하는 것이므로 新資産과 同一視된다.

不變價格으로 表示된 總額資産을 檢討하여 보면 數年間 各各 異時점에 獲得한 總資産을 計算上 時價代身 基準年度의 物價를 使用하여 不變價格으로 表示할 수 있다. 이 結果는 取得時期가 相異한 諸資産을 同一한 時점에 生産한다면 所要된 費用이 얼마인가로 評價하여 同質視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만약 1960年 價格으로 評價된 資産總額이 1958年은 2兆원, 1960年은 2.1兆원이 된다면 當該資産의 代置原價가 1958年보다 1960년에는 5% 더 所要된다는 것을 뜻한다. 아마도 1960年度 資産은 質的改良으로 1958年 資産보다 5% 더 生産에 寄与할 수 있을 것이다. 減耗分을 差減하지 않은 總額資産額評價에 있어서 異時点間에 製作 또는 購入한 資産을 同質視하는 方法은 時價나 不變價格이나 同一하다.

다른 式으로 說明하여 보면 特定時(t)에 모델 t는 모델 t₁보다 實際 原價가 10% 높고 그 價格은 t₁年の 모델 t₁보다 15% 높으며 生産寄与度는 20% 더 높다고 假定하고 前記式으로 計算하면 純價格增加는 5%이며 모델 t의 生産寄与

도는 20% 높지만 實質資本은 10% 더 많은 結果가 된다.

이것은 價格下落에 依한 것이든 基準時價格으로 原價를 調整한 物理的 單位에 依한 것이든 하나의 結果이며 또한 이것은 現存하는 物價指數나 量的資料에 依拠獲得할 수 있거나 或은 이것들의 編制方法을 아는 것이 唯一한 解決策이다.

本質的인 資本價值는 生産量 그 自体에 있는 것이 아니라 純收益生産力에 있다는 것을 留意하여야 한다. 新機械의 生産力이 그 機械의 實際原價 보다 빨리 上昇하듯이 機械의 初期 購入者가 그 機械를 使用함으로써 얻어지는 純收益도 역시 그렇다. 經濟理論에 依하면 可能的인 競争條件이 造成되어 競争이 行하여지면 非正常的인 利得은 漸次 없어져서 新機械價格은 正常利潤이 包含된 價格과 비슷하게 되고 新投資에 對한 報酬는 資本財의 產出能力에 比例하기 보다 一連의 資本財의 모델原價 (正常的인 값 올리기 包含)에 거의 比例하여 움직이는 傾向이 있다.

上記 引用例에서 新모델 t의 購買는 모델 t₁이 前期에 實現한 것과 同額의 收益 내지 報酬를 올리는 點까지 行하여 질 것이다. 그리고 機械當 實質的인 純收入은 旧모델이 新品이었을 때 實現한 것보다 10% (20%가 아님)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모델 t의 實際價格에 作用하는 높은 產出力은 모델 t₁의 時價下落에 反映되며 이것은 後述할 減價나 減價分을 差減한 代置原價算定에 重要的인 한 局面을 보여준다.

結論으로 質的인 變化는 別個로 치더라도 特定時點價格으로

表示된 取得時期가 相異한 資産의 總代置原価는 豫想된 純收益額을 反映할 수 없다는 것이다. 理由인즉 中古固定資産의 未來純收益力의 低下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總代置原価는 資産을 어떤 特定年度에 再生産하는데 所要된 費用을 나타낸다.

不変價格으로 換價된 總資産額의 時間經過에 따른 變動은 基準年度の 當該物價指數만 주어진다면 (前試方法으로 모델의 變化를 調整함) 保有資産의 物量變化를 反映한다. 이 數値를 檢討하여 보면 資産廢棄時期 및 總資産規模를 決定하는 것은 物理的 耐用年數가 아니라 經濟的 耐用年數라는 點에서 物理的 耐用年數와 經濟的 耐用年數를 모두 考慮한 것이다.

資産純額을 推定時價로 表示하려면 資産總額의 時價를 推定한 다음 減耗分을 다시 評價하여 總額에서 差減한다. 이 純額即 推定된 時價는 資産의 期待收益을 現價化한 것으로 이것은 實質的인 純資産推定價額으로 認定되나 減價充當金은 主로 時間經過에 따른 資産의 價値減耗分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資産의 時價推定에 큰 影響을 미치는 耐用年數도 市場에서 決定되는 한 現象이므로 減價充當金과 資産純額도 역시 市場에서 決定되는 것이다.

使用中인 機械裝置나 設備資産의 市場價格은 減價資産의 直接的인 評價方法이다. 減價資産은 組織化된 中古品市場去來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減價額을 推定하는 수 밖에 없으며 經過耐用年數는 各種調査나 廢棄時의 資料로부터 人爲的으로 決定한다. 新規購入資産에 適用할 減價曲線決定問題는 더욱 어려우므

로 去來가 있는 使用資産의 資料에서 類推하여 去來없는 資産에까지 適用한다.

減價分을 差減한 代置原價와 實際時價(存在한다면)間에 差異가 發生하는데 이것은 두가지의 主된 理由때문이다. 卽 ① 曲線의 基礎가 되며 그 性質을 決定하는 資料의 不正確성과 ② 資料提供期間이 評價時點과 一致하지 않았다는 事實이다.

推定減耗分을 二次的인 性質에 關聯시켜 考察하여 보면 關係資産의 繼續的인 需要上昇 및 下落은 保有中인 固定資産 卽 長期間 減價充當金을 計上한 固定資産의 代置原價를 變動시킨다.

어떤 特定資産의 期待收益이 實現되지 못할 때는 그 資産의 市場價値는 減價分을 差減한 再生産原價 以下로 下落할 것이며 그 差는 收益以前에 期待한 水準에 到達할 때까지 新規資産의 購入이 行하여지는 것과 같이 一時的이다. 使用資産의 供給下落은 그 資産價格을 漸次的으로 減價한 代置原價까지 上昇시키는 傾向이 있다. 同時에 新規購入資産의 收益力이 期待額을 超過할 때는 使用資産의 價値는 下落한다. 또한 使用資産의 供給增加도 그 價格을 下落시킨다.

減價한 推定代置原價는 實上 時價의 概算額에 不過함에도 不拘하고 合理的으로 分析된 價額은 繼續記錄法에 依한 國富推計額과 一到된다.

資産純額價値의 推定時價를 算定하는데 新旧資産價値를 同質視하여 質的差異를 處理하는 方法은 總額資産推定에 使用된 것과 正反對라는 것을 認定하여야 한다. 純額資産은 總額資産보

다 그 價値가 낮는데 이것은 資産이 物理的으로 磨損되어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能率이 低下되고 殘留用役提供可能年數가 短縮될 뿐만 아니라 資産에 質的改良이 일어나면 使用資産의 生産力은 低下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減價充當金累計額이 物理的 磨損뿐만 아니라 陳腐化도 包含하고 있기 때문이다. 統計上 이런 問題가 發生하는 것은 減價計算에 適用한 用役提供可能年數가 物理的耐用年數가 아닌 陳腐化를 감안한 短縮된 實際耐用年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陳腐化는 減價計算을 할 때 必히 考慮되어야 한다. 이 結果 物理的 要因에 立脚하여 設定한 充當金은 別問題로 하고 取得 내지 生産時期가 다른 諸資産을 原則的으로 주어진 日字의 生産原價가 아니라 生産力에 따라 同一視하는 것이다.

모델 t_1 과 t 를 t 年度에 生産하려면 各各 100,000 원이 所要되나 年間生産額은 t 가 2 배며 모델 t_1 의 物理的耐用年數가 半減된다고 假定하여 보자.

(모델 t_1 의 生産力은 不變) t 年度の 資産總額은 200,000 원이지만 純額은 150,000 원이 아니라 125,000 원으로서 이 差額은 陳腐化를 나타낸다. 이런 理由로 純額資産의 推定額은 現時價의 概算額으로 생각될 수 있다. 不變價格으로 純額資産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前記方法은 時點이 相異한 不變價格으로 純額資産을 比較하는데까지는 關聯시켜 適用할 수 없다. 陳腐化充當金은 純額資産의 價値水準에는 影響을 미치지만 이와 類似한 充當金은 每年 設定되므로 이 充當金은 質的인 變化에

關聯하여 發生한 價值變動은 나타 낼 수 없다.

그러므로 減縮된 純額資産의 5% 增加에 立脚하여 說明하면 基準年度를 中心으로 한 次年度의 純額資産代置原価는 初年度보다 5% 더 높고 質的인 改良이 있었다면 次年度의 資産純額は 5%以上 生産에 더 寄与한 것이다.

代置原価는 以上과 같은 性格을 갖고 있으며 代置原価의 基本資料가 原価 即 帳簿價格이 主가 되므로 原価가 갖는 欠點을 그대로 갖는 것이 많다.

結局 國富推計에 있어서 總代置原価의 方法은 異時點에 取得된 諸資産을 一定時點價格으로 評價한다는 것이고 代置原価의 方法은 總代置原価에서 減價額을 控除하여 一定時點에 있어서의 모든 資産의 純額을 評價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評價方法은 國富推計上 理論的으로는 時價基準 (Current Basis)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排除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時價基準이 갖는 現實的 條件 即 時價에 依한 경우 客觀性賦与가 曖昧하다는 點에서 代置原価方法이 採用될 수 있다는 것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日本の 경우는

① 再取得價格 = 取得價格 × 物價倍率 . . . (總代置原価)

② 再調達價格 = 再取得價格 × 殘價率 . . . (代置原価) ×

(1 - 償却率)

와 같은 方法을 使用하고 있는데 이것은 原理的으로 볼 때 前述한 바의 代置原価基準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3. 資産種類別 基準의 妥当性

以上에서 国富推計上の 諸評價基準과 그 長短점을 살펴 보았다. 一端 設定된 諸基準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一律적으로 適用될 수 없고 資産의 内容과 特性에 따라 多少 그 評價의 類型을 달리 할 것이므로 現實情을 勘案하여 前述한 諸評價基準의 妥当性を 考察하기로 한다.

가. 有形固定資産 (Tangible Fixed Assets)

有形固定資産中 建物 構築物 등은 物價가 安定된 狀態下에서는 原價에 依하여 評價되어야 하나 現實적으로 原價에 依하면 그 實質價值를 表示하지 못하므로 時價를 基準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時價는 理論的 妥当성은 가질지 모르나 特히 販賣가 目的이 아닌 建物構築物 등은 中古品市場을 發見하기 어려워 그 代用方法으로 쓰여지는 것이 代置原價다. 代置原價의 正確度を 높히려면 評價資産의 物價指數가 必要한데 이 問題를 解決하여야 한다. 이보다 더 큰 難點은 原價나 代置原價를 把握함에 있어서 帳簿組織은 그 必須條件인데 個人企業中 利用 가능한 帳簿組織을 備置한 業체는 極少하므로 個人企業部門에서는 代置原價基準이 어느 程度 利用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研究課題이다. 그러나 建物 構築物 등은 市場이 極히 制限되어 있으므로 客觀的인 判斷이 必要하다. 時價를 代身할 수 있는 基準을 列挙하면

- 1) 所有主의 評價에 따르는 法 1960年度 美國의 「住宅
센서스」에서는 所有主가 住宅을 評價하였는데 大部分 그들은
資産을 時價로 推定評價할 수 있었다. 勿論 恣意的인 要素
는 어느 程度 介入하였지만 調査者의 直接的인 推定보다는
客觀性이 있었다.
- 2) 保險에 加入하고 있을 때는 保險價格을 基準하여 評價하는
法 保險價格은 比較的 最近의 數値이며 어느 程度 客
觀性이 있는 合議된 價格이므로 이를 適切하게 合理的으로
加減하여 時價로 한다.
- 3) 不動産賣買紹介所에 問議하여 定하는 法 紹介所에는
比較的 老練한 사람들이 集合하고 이들은 土着民이 大部分이
므로 当地域事情에 精通하고 識見이 있다. 또한 이들의 意
見은 一個人의 意思가 아니고 建物売渡를 願하는 所有者 購
入希望者 그리고 紹介者等 多數人에 依한 評價가 되므로 比
較的 客觀性이 維持된다.
- 4) 製作價額을 分析하여 評價하는 法 建物の 原始使用資
材 勞賃 其他 間接費를 現評價 時點價格으로 換算 評價하여
再取得價格을 算出하고 經過耐用年數를 考慮하여 資産時價를
推定하는 것이다. 이 外에도 合理性和 客觀性이 維持되는
方法이라면 可能하다. 이것은 建物이나 構築物에 限한 것이
아니라 市場이 極少한 資産에는 모두 利用될 수 있다.
機械 및 裝置 船舶, 車輛, 運搬具, 工具器具 및 備品 動植
物等은 市場이 制限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大體的으로 보아

中古品市場이나 新品市場이 存在한다. 消費者나 使用者는 그들 資産을 公正하게 評價할 줄 알며 純額資産의 処分價格이나 代置價格을 概算할 줄 안다. 金屬機械, 運搬具, 車輛等의 中古品 市場이 比較的 다루어져 있고 따라서 利用資料蒐集이 可能한 것도 많다. 有形固定資産中 工具器具 및 備品等에서 볼 수 있는데 耐用年數別로 보면 固定資産이지만 그 金額이 小額이 어서 記錄에 不便한 것이 많다. 便宜上 一定金額을 定하여 一定金額以下의 것은 一括合算하여 表示하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또한 工具뿐만 아니라 機械等에 있어서 相異한 時點에 製作 또는 取得된 資産의 種類가 過多할 때 一定基準을 設定하여 綜合的인 評價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建設仮計定은 投下原価를 時價로 評價하여 計上함이 原則이며 投下原価捕捉은 工事의 完成度에 따라 決定하여야 한다.

固定資産中 無形資産部門과 그 價値가 混合되어 있는 資産 (電話器等)은 区分하여 備品價格만 記入하여야 한다. 例로 電話器를 보면 個人企業側面에서 볼 때 이 無形資産分이 國家所有의 該當通信設備額과 一致하거나 不足할 때는 國家資産으로 把握될 것이고 超過할 때는 眞實한 無形資産이므로 除外된 것이다. 萬一 위의 假定自体를 否定한다면 個人企業側面만을 考慮할 때 自由로 市販되는 備品 그 自体는 資産性이 認定되나 備品을 超過한 것은 分明히 無形資産이다.

이러한 原理는 自動車의 番號等에도 適用됨은 勿論이다.

나. 在庫資産 (Inventory, Working and Trading Assets)

在庫資産이란 未來의 收益에 対応될 消滅하지 않은 原價로서 A I A (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에 依하면 “ 經常적인 企業活動過程에서 販賣를 目的으로 保有한 資産, 販賣를 目的으로 生産途中에 있는 資産 및 販賣에 利用될 製品이나 用役生産에 現實적으로 消費하기 爲하여 保有하고 있는 全 有形動産을 意味한다 ” 라고 規定하고 있다. 原則上 在庫資産의 評價基準도 有形固定資産과 같이 時價이나 在庫資産은 大體的으로 最近에 購入한 것이기 때문에 時價와 原價간의 큰 差異가 發生하지 않는다.

그러나 純理論面에서 볼 때 在庫資産은 大部分이 市場에서 売買되고 있으므로 現實적으로 時價評價가 可能한데 하필이면 方法에 따라 相異한 價格을 나타내는 原價에 依할 것인가? 다음 原價主義에 따른 評價方法과 時價를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在庫資産의 數量計算에 있어서 繼續記錄法 (Running Inventory Method), 在物調査法 (Physical Inventory Method), 逆算法 (Rückrechnung) 中 어느 法을 採하느냐에 따라 評價額에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그 選擇도 重要하다. 原價主義에 立脚한 諸方法은 帳簿가 基準이 되므로 保管中の 自然的 減耗 旧式化, 盜亂, 記錄上의 誤謬等은 反映할 수 없고 따라서 實際 調査에 依하여 時價로 評價된 價額과 差異가 나타난다. 또한 같은 原價主義를 採한다 하더라도 後入先出法 (Lifo Method),

先入先出法 (FIFO Method) , 個別原価法 (Identified Cost Method) , 移動平均法 (Moving Average Method) 등에서 一法을 挾하므로 差異가 나타난다. 原価法만 아니라 其他 單純平均法 (Simple Average Method) , 總平均法 (Periods Average Method) , 最終買入原価法 (Latest Costs Methods) , 基準在庫法 (Base Stock Method) , 売価還元法 (Retail Inventory Method) , 달라價值法 (Dolla-Value Method) 等 數 많은 計算方法에 따라 全部 相異한 價格으로 나타나며 또한 時價와 一致하지 않는다. 그러나 時價로 評價할 때는 實際在物調査에 나타난 數量에다 單位當 時價만 곱하면 在物資産 即 在庫品이 評價되므로 比較的 計算이 簡單하고 正確한 評價가 可能하다고 할 수 있다.

1) 原材料 (Materials, Raw Meterials)

原材料는 主副原材料, 補助原材料, 買入 및 自製部分品 등으로 大部分 市場에서 去來되므로 時價로 評價하고 만약 自製品이나 自家取得原材料 (買入하지 않은 것) 가 있다면 이것은 所要原価 내지 費用을 時價로 換算하여 計算한다. 時間的으로 原價와 別다른 差異가 없으므로 時價가 困難할 때는 時價代用으로서 原價를 使用하여도 된다. 原價主義에 立脚하여 繼續記錄法으로 原材料를 評價하면 前述한 바와 같이 計算이 더 複雜하여 짐으로 時價評價가 合理的일 뿐만 아니라 더 便利하며 國富統計目的에도 附合한다. 即 評價時點에 原材料 數量을 調査하여 單位當 時價만 곱하면 價格이 計算되는 것

이다.

2) 在工品 (Goods in Process)

在工品은 原価計算上 製造計定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着手品이라고도 하며 一時點에서 製造過程中에 在工되어 製品이나 半製品이 되지 않은 資産을 말하며 會計學上 在工品價格은 主要材料費나 加工費를 個別的으로 計算하여 評價하거나 在工品에 所要된 主要材料費와 勞務費中 어느 一部分만 評價한다.

理論上 在工品の 評價에는 在工品の 進陟度를 正確히 決定함이 重要한데 이것은 原価要素別로 分析하여 在工品狀態에 따라 決定한다. 在工品 價格計算을 爲한 在工品進陟度는 在工品の 作業技術的 進陟度와 製造費의 發生과를 比較 檢討한다. 즉 그 算式은

在工品完成品換算量 = 在工品數量 × 在工品進陟度

在工品價格 = $\frac{\text{在工品完成品換算量}}{\text{製造費에 対応하는 完成品換算量}} \times \text{製造費}$

위의 公式에 依하더라도 平均原価法 先入先出法等의 計算方法中 어느 것을 採하느냐에 따라 評價額에 差異가 나타난다. 在工品에 消滅한 原価要素는 大部分 市場價格이나 그 代用物이 存在하므로 市場價格等을 基礎로 計算하면 原価主義에 나타난 欠點이 補完될 수 있다.

3) 半成工事 (Uncompleted Contracted Works)

半成工事란 造船, 機關車, 建築, 道路, 貯水池, 防波堤等의 工事에서 볼 수 있듯이 完成에 長期를 要하는 것으로서 完成

이 되어야 建設依頼者에게 引渡하는 것이 普通이다. 理論的인 面에서 考察하면 依頼者로부터 前受한 金額을 消費하여 建設된 部分만큼은 依頼者의 建設仮計定에 記入될 것이고 請負業者의 自担費消額만 半成工事に 記錄하여 在庫資産에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完成費 (Percentage of Completion) 를 測定하는 等 會計実務와 理論上 複雑한 問題가 發生하지만 國富推計의 目的에 비추어 볼 때 評價基準日 現在 當該 建設에 所要된 資材 賃金等の 原材料費 및 勞務費, 其他諸間接費 總額을 依頼者로부터의 前受金 費消分과 自担한 原価費消分으로 区分하여 自担分만 半成工事額에서 時価로 評價하여 計上함이 妥當하다. 그러나 実査上 難點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評價者의 適切한 区分이나 判斷이 要請되며 請負業者와 依頼者間 重復計上이 되지 않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4) 半製品 (Partly Finished Part)

一部工程이 完了되어 다음 工程에 다시 繼續될 完成品 또는 部分品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음 工程에 移行할 中間段階에 있는 未完成品이면서도 販賣나 貯蔵이 不能한 點에서 在工品과 區別되며 市場價格을 發見하기 쉬우므로 時價評價가 可能하다.

만약 時價가 存在하지 않을 때는 前述한 在工品과 類似한 式으로 時價를 推定한다.

5) 副産物 및 作業屑 (By-Product and Waste or Scrap)

副産物은 製品生産 過程에서 必然的으로 發生하는 生産의

主目的이 아닌 副次的인 財貨로서 主製品價値에 比하여 낮은 것이 一般的이다. 作業層은 製品製造에 發生하는 原材料의 小片等を 말한다.

이것들은 業体の 會計政策이나 慣習에 따라 製品の 生産原價에서 差減하는 方法, 收益으로 処理하는 方法等이 있는데 生産原價에서 差減하는 業体는 그 價値가 製品에 転價되므로 別問題가 없으나 收益으로 處理할 때는 그 販賣時價를 計算하여 在庫資産에 包含시켜야 한다. 이들을 原價나 再取得原價를 算定한다는 것은 無意味할 뿐만 아니라 그 計算節次가 몹씨 複雜하다.

6) 貯藏品 (Stores)

包装材料, 運送材料 事務用品 燃料等 消耗性 品目으로 會計政策에 따라 購入時 費用으로도 處理할 수 있으므로 原價主義에 依한 帳簿에는 資産이 아닌 費用으로 計上되어 在庫資産 把握時 漏落될 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時價評價 即 實際 在庫調査에 依하여 數量에 單位당 時價를 곱하여 計算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7) 商品 (Merchandises)

商品은 販賣를 目的으로 保有한 諸財貨를 뜻하는 것으로서 去來가 行하여지는 것이므로 時價에 따라 評價한다.

商品은 그 種類가 많을 뿐만 아니라 場所的 占有的인 面에서 볼 때 複雜한 樣相을 나타내기 때문에 在庫資産總額把握上 問題點을 実査面에 立脚하여 解明하여야 한다.

原則上 所有權基準에 設定되면 所有權의 有無에 따라 在庫品에 包含與否를 決定한다. 具體的으로 例挙 說明하면

가) 積送品 (Merchandises Outward on Consignment)

間接販売의 一種으로 手数料를 支給하는 條件으로 販売를 他人에게 委託하기 爲하여 積送한 商品일 경우 委託賣買品の 法的 所有權은 委託者에게 있기 때문에 売出確認書나 販売完了通知가 있기 前에는 販売完了 積送品은 積送者의 在庫品에 包含시켜야 하고 受託品은 除外하여야 하며 評價基準은 勿論 時價基準이 된다.

나) 未着品 (Merchandises in Transit)

會計實務에서는 買入品은 引受基準, 販売品은 積送基準을 適用하여 未着品の 在庫品包含与否를 決定하나 代金を 支給하였거나 契約이 成立되어 所有權이 移轉되었다면 買入未着品은 在庫資産에 包含시켜야 하고 販売品은 除外하여야 한다.

다) 試料品 (Merchandises on Approval)

買主가 商品을 試驗적으로 使用하여 보고 適性を 判斷하여 適切하지 못할 때는 返還할 수 있는 條件으로 移送한 것으로서 會計實務上 返品率이 極히 낮을 때는 売出된 것으로 処理하나 어디까지나 所有權은 販売者側에 있으므로 買入確認書を 入手하거나 買入通知를 받기 前에는 販売者의 在庫에 包含시켜야 하며 評價基準은 勿論 時價가 된다.

라) 割賦売買品 (Merchandises on Installment)

割賦売買은 商品代錢을 數回로 分割하여 授受하는 売買로서 所有權은 販売者側이 갖는다. 會計實務에서는 商品讓渡時에 販売收益을 認識하는 法과 割賦金 回収時마다 分割認識하는 方法이 있다. 純法律的 解析에 따르면 所有者의 在庫品에 包含시켜야 하겠지만 契約期間이 長期이고 商品은 割賦購入者가 占有使用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인 現象이므로 例外로서 冥査上 占有者를 基準하여 時價로 評價함이 마땅하다. 普通割賦売買品은 耐久財나 準耐久財이므로 所有權이

完全히 移轉되지 않더라도 減價되는 것이 一般的이므로 時價 評價가 더욱 合理性을 갖는다.

마) 抵當品 (Pledged or Hypothecated Merchandises)

抵當된 商品의 所有權은 担保品提供者에게 있으므로 提供者의 在庫品에 包含시켜야 할 것이며 期間이 長期일 때는 特히 原價와 時價間에 顯著한 差異가 發生할 수도 있다.

그러나 時價評價에 依하면 이런 差異는 容易하게 除去된다.

바) 賣買契約品

賣買契約는 契約金を 授受하였다 하더라도 所有權에 變動을 가져오지 못하므로 在庫品計算評價에 影響을 미치지 못한다.

사) 外國販賣品 外國買入品

輸出入品の 計算評價는 賣買條件의 相異에 따라 積送 내지 運送中の 商品을 處理하는 法이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省略하고 그 評價만 論及한다.

結論부터 말하면 輸出品은 國內時勢의 高下를 莫論하고 輸出原價 卽 販賣原價로 計算되며 輸入品에 있어서도 輸入原價는 不問하고 國內市場價格으로 評價되어야 한다.

아) 內部販賣品

內部販賣는 二種으로 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 同業체內에서 販賣처別 또는 部門別 商品移替가 發生하는 것인데 會計學上 獨立經理上 複雜한 問題가 發生하지만 國富推計上 占有別 基準으로 實査評價하여도 無妨하다. 둘째 關係会社間의 販賣인데 우리나라의 實情으로 보아 個人業체가 子会社를 保有管理하는 業체는 全無하므로 問題化되지 않는다.

第 2 節 資産評價의 一般的方法

國富調査上 有形資産의 評價에는 몇가지 어려운 問題點이 있다. 그 어려운 點은 資産이 기껏해야 企業의 帳簿에서 評價되고 있다는 事實에서 緣由된다. 또한 資産의 取得時期가 各各 다르므로 그 評價에 統一性이 없다.

國富統計目的을 위하여 市價나 其他 時價가 바람직하나 不幸하게도 資産의 所有者가 自己의 巨額資産의 時價를 推定하기란 그렇게 容易하지 않다. 그래서 推定機關에서는 帳簿價額을 集計하고 關係 資料를 活用하여 帳簿價額을 推定市價로 調整시키는 作業을 하여야 한다.

1. 帳簿價額

經濟學者는 帳簿價額이나 原始原價 (Original Cost) 로 國富를 推計하는 것은 市價나 其他 時價로 推定하는 것 보다 意味가 없다는 實際的인 意見을 갖고 있다.

一般物價나 關聯된 物價가 相當히 變한다면 取得原價는 그 意味를 喪失하게 된다.

短期資産이나 新規資産은 例外지만 取得原價는 國富의 運用에서 나오는 豫定純收益의 現價나 人力으로 만들어진 資本 (Man Made Capital) 의 代置原價를 反映하지 못한다. 資産의 使用年數分布가 企業이나 部門 (Sector) 마다 다르기 때문에 帳簿價額은

充分히 比較될 수 없다.

또한 帳簿價額은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比較될 수 없다. 原始原價는 이미 適用될 수 없으며 또한 帳簿上 固定資産減價法은 經濟的 價値의 減少를 反映하지 못하고 稅法上的 會計實務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原始原價나 取得原價 (Original or Acquisition Costs) 를 表示하는 帳簿價額은 私企業이나 帳簿를 備置하지 않은 企業체에 있어서는 確實히 有用한 資料가 된다. 그러므로 取得原價를 蒐集하는 것은 時價主義 (Current-Value Basis) 에 依한 推定에 必須不可欠한 것이다. 어떤 專門家は 一聯의 貸借對照表를 帳簿價額으로 作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多少間 限界性은 認定되더라도 이러한 帳簿價額은 課稅額과 경우에 따라서는 稅率規定과 같은 意思決定 (Decision) 에 參考가 된다. 貸借對照表를 取得原價에 따라 作成할 때 統計上 利點은 既存資本價額의 變化를 아무런 修正을 하지 않고 한 時點에서 다른 한 時點사이의 變化를 總投資에서 資本消耗分을 差減함으로써 說明할 수 있다는 點이다.

FRB 部分 貸借對照表는 主로 帳簿價額 即 額面 價額으로 作成되었다. 그러나 再評價와 時價推定이 역시 必要한 것이다.

2. 時 價

現市價는 資本財構成要素를 評價하고 結合할 때 가장 바람직하고 合理的인 基礎를 提供한다. 國民生産은 市價나 市價代用價額으로 表示된다. 그래서 國富를 不變價格으로 表示하기 위하여서 同一한 基準으로 評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消費財의 市價는 購買者가 期待하는 滿足度を 代表하는 것과 같이 資本財의 市價는 豫想收益의 創出能力에 따라 各 部門別로 比較할 수 있으며, 現在 收益과 対応된다. 그러한 價額은 資本財를 基準日의 市價로 表示할 수 있도록 市價變動을 考慮한 때에도 比較될 수 있다.

市價評價의 一般的인 原理는 一般的 目的을 提供한다. 이 原理의 適用上 實務的인 問題가 많이 發生한다. 經濟學者는 個別 資本財의 總計에 關心을 갖을 것인가 或은 資産集合體인 繼續企業 (Going Concern)에 關心을 갖게 될 것인가가 問題視된다.

前者를 採択한다면 技術的인 動的變化가 일어난 때에도 特히 比較하기 위하여서는 個別資本財를 如何히 規定할 것이냐가 問題視된다.

資本財가 프라이싱 (Pricing) 目的 때문에 同一한 單位로 規定될 수 있다고 假定할지라도 資産市場이 構成되지 않거나 存在치 않을 때는 如何히 되며 또한 市價에 代身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된다.

3. 總資産評價와 繼續企業評價

企業經濟部門에서 生産의 單位工場을 構成하는 個別資本財의 價
值總計와 繼續企業(Going Concern)으로서 生産單位의 價値總計
사이에는 差異가 있다. 基本的으로 이것은 証券市場의 市勢에서
會社の 負債와 資本의 市價를 推定하고 企業内の 資産時價를 把
握하도록 企業資産의 市價를 差減하는 것이다.

이것은 個別의 土地 構築物 施設 在庫資産을 形態別 取得年度
別로 市價(或은 再評價를 위하여 原始原價)에 依한 推定에서
얻고 이를 다시 産業別로 合計하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方法과
對照된다.

統計的으로는 後者の 節次가 長点이 있다. 國富는 資産의 主
要形態別로 細分化하여 推定할 수 있다. 國富推計에는 生産分析
에 有利한 企業體單位보다 事業體單位로 産業을 分類하는 것이
有益하다. 더욱이 繼續企業評價法은 非企業部門(政府, 非營利團體,
家計)에는 適用할 수 없으므로 어떤 경우에는 資産形態別評價法
이 經濟主要部門에 適用되어야 할 것이다.

法人部門에 있어서는 資産形態別評價法으로 推定을 하게 되는
한편 法人企業資料는 거의 繼續企業評價에 活用될 수 있다. 그
러나 法人體資産/現金流動比率을 非法人企業- 심지어 同種産業 同
一規模企業일지라도-에 適用할 수 있는가에 關하여서는 問題가
좀 있다. 自己企業을 市價로 評價하기란 좀 危險한 面이 있다.

株式을 市場價格으로 評價한다면 流動性이 있다는 理由로 反
對되어 왔으나 株式은 每年末價格을 移動平均한 價格으로 評價하
도록 提議되었다. 그래서 Smith教授는 市價豫測과 價格變動의 流

動性이 價格의 要諦를 構成한다고 強力하게 主張하였다.

끝으로 Edward Dension이 論及한 바와 같이 企業資產의 總計는 生産函數를 分析하기 위하여 株式의 實價를 推定하도록 價格變動에 適用할 수 있는 것이다.

理論的으로는 以上の 두가지 方法의 活用に 關하여 많은 論議가 있다. 純純競争下에서 (完全한 豫測)는 以上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企業의 價額은 無形資本을 包含하여 投下資本의 價額과 同一하여야 한다.

그러나 完全한 知識이 없는 現實競争에 있어서는 資源은 어느 程度 잘못 投資될 수도 있으며 特히 龐大한 固定施設資本이 오래 동안 專門化 (例로서 鐵路道床 및 車輛에서와 마찬가지로) 된 것이면 이를 쉽게 變更할 수 없는 것이다. 需要測에 不利하게 市場이 展開되면 構成資產의 總價額 (적어도 部分的으로는 對替使用價額)은 單一企業이나 企業群의 價額보다 超過할 수 있다. 市場變動이 固定資本의 整理 (Adjustment) 關係로 急變한다면 넓게 말하여 거의 半世紀 동안 美國의 農業에서 그러하였던 바와 같이 需給의 不均衡이 數十年 동안 持續될 수 있는 것이다. 市場이 有利하게 變動된다면 그 反對現象이 造成될 것은 勿論이다.

Smith教授가 指摘한 바와 같이 産業別로 繼續企業價値와 構成資產의 總價額을 比較한다면 投資需要分析에 매우 有用할 것이다.

그러나 國富調査實務班의 評價에 關한 심포지움에서 強調된 바와 같이 Smith教授가 提案한 繼續企業의 價額은 主要有形資產의 價額보다 많은 價額으로 売却된다는 것이다.

競争이 純粹하지 않으면 繼續企業의 價額은 独占의 程度 經營의 豫測 其他 要素에 依하여 影響 받는 바와 같이 企業의 相對的 市場位置를 반영한다. 또한 繼續企業의 價額은 無形資本의 價額과 스탠의 「知識」(Know How) <註 1>에서 나오는 準地代의 價額(研究, 開發, 訓練의 投資에서 部分的으로 얻어지는 것) 그리고 特定企業과 産業의 特異한 組織을 反映한다.

더욱이 証券市場의 價格은 時時로 變하여 配當額, 所得稅, 資本利益, 稅率, 割引率의 變動과 같은 純粹한 財務的 要因에 依하여 影響을 받는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繼續企業評價法은 企業 特히 法人企業部門에서 國富推計에 有益한 資産의 充當金을 設定한 然後에는 繼續企業價額은 全體로서 各 部門의 國富量을 概括적으로나마 比較할 수 있으며 分析的으로 볼 때 産業別 差異가 매우 意義있게 될 것이다.

Gornan氏가 提案한 바와 같이 企業部門에서 市價에 依한 負債와 請求權(Claims) <註 2>의 市價會計額과 繼續企業價額의 差異로 産業部門 및 國民貸借對照表에 나타난다.

이런 方法으로 Smith方法은 國民貸借對照表에 適用할 수 있으나, 産業別有形資産의 國富推計의 基準으로서는 不當하다고 볼 수 있다.

4. 資本財市場의 制約性

在庫資産 市場에 比하여 資本財의 現市場에서는 一般的으로 多種 少量資産이 去來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새로운 種類의 資本財를 처음으로 生産할 때는 例外지만 一般的으로는 新種資本財는 總去來量의 一部를 占하는 것이 現實이다.

中古再生産可能 耐久財 (Used ReProducible Durable Goods) 와 再生産不能財 (NonreProducible Goods) 는 總스토크의 極少量에 不過하다.

一定한 時間內에 資本財를 去來 (Market) 하려는 것은 틀림없이 不可能하다. 그래서 全스토크에 適用된 市價는 正常的인 市場條件下에서 決定된 價額을 意味한다. 個人의 自由스런 意思에 따라 預金하고 引出하는 것이 商業銀行의 慣例 (Rule) 인 것과 같이 資本財의 價額은 代置 再販賣 流動化 等等의 正常的인 去來에 따라 左右된다. 中古再生産可能財, 公有地, 鉸山 몇가지 課稅對象資産의 경우에 있어서는 市場去來가 設令있다 하더라도 數年만에 한 두 件밖에 안될 것이다.

이런 경우 時價는 市價를 適用하는 것보다 다른 方法으로 推定하여야 하는 것이다.

建設原價 (Constructing Cost) 는 國民所得 計定에도 使用된다.

一般政府나 非營利機關이 生産한 財貨 및 用役은 通常的인 意味의 市場에서 去來되지 않으며 原價 (그러나 資本補償을 위하여 充當金을 設定하지 않는 것이 보통임) 로 評價된다.

自己所有建物 (Owner-Occupied Houses) 의 使用料와 여러가지

現物支払 価額은 市場에서 去來된 価額을 非市場性的 경우에 適用
함으로써 轉換한다.

5. 代用市價

資本財의 代用市價는 市價의 決定要素로 볼 수 있는 3大 카
테고리로 分類하여 볼 수 있다.

한편 特定資本財의 需要側은 潛在購買者나 所有者가 將來 豫想
利益의 割引價額을 推定함으로서 決定된다.

이때 이런 計算値를 倍로 推定할수도 있다. 또한 再生産可能
財의 경우에 있어서 供給側은 收益能力을 造出하는 機會原價 (
Opportunity Cost) <註 3 >를 反映한다. 그리고 이 機會原價
도 推定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需給兩側의 交叉點은 市價를 의미하며 있을 수 있
고 散発的인 去來나 類似한 資本財形態로 가끔 이루어진 去來에
익숙한 사람이 推定할 수 있다. 우리는 評價技法이라고 볼 수
있는 세계 方法부터 다를 것이다.

6. 評 價

資産의 現在價值는 直接的 또는 保險價額과 같은 間接的으로
所有者나 或은 資産價格에 밝은 專門家인 外部評價者가 評價할
수 있다. <註 4 > 勿論 評價者는 類似資産의 市價水準 및 趨勢,

良好한 收益能力, 代置原価, 其他 要素를 評價 한다. 評價專門家는 例로서 願買者 및 購買者를 假想하여 어떤 假定的인 条件下에서 얻을 수 있는 市価를 推定한다.

그 첫째 方法은 財産評價法이다. 그런데 財産評價法은 財産稅를 賦課할 目的으로 評價한 方式이며 査定價格과 市場價格 사이의 推定關係를 表示한 比率에 依한 것이다. 이것은 美國의 1850 ~ 1922年 初期國富센서스에 主로 適用한 方法이다. 地域別査定價格 對 市價率은 美國聯邦裁判所 裁判官 (Marshal) 과 센서스局職員이 決定한다. 美國의 最近 센서스報告書에 의하면 形態別 地域別로 그 해의 所有權이 移轉한 標本資産의 査定價格과 市場價格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였다. 이 比率은 市場에 있는 一部分의 財産에서 얻은 比率이 全財産을 代表한 것이라는 合理的인 假定下에 形態別 地域別로 모든 査定價格에 適用될 수 있음이 分明하다. 그 査定方法은 動産보다 不動産에 더욱 많이 適用될 수 있다. 各州의 稅法은 不動産보다 課稅動産에 關하여 매우 다르며 課稅節次는 더욱 다르다. 그러나 不動産에 關한 査定價格은 企業体応答者로 부터 直接 求한 數値에서 適切한 附隨的인 方法 및 檢討를 通하여 補完된다.

7. 将来推定利益의 割引

둘째 主要方法은 一般的으로 売買되지 않거나 或은 法規上으로 売買가 禁止된 資産의 경우 将来豫想所得을 割引하는 方法이다.

이 방법은 土地와 鈹山資源에 適用하기에 알맞다. 鈹山資源의 價額을 推定한 것은 美國 內務省 (Interior Department) 에서 使用하였던 것이다.

이 방법은 (a) 生産率, 生産性, 投入算出價格 그리고 資本設備의 總 및 純所得을 策定하는 것 (b) 財産의 現價計算을 위하여 豫想純所得에 割引率을 適用하는 것의 節次가 있다.

(a)의 策定은 複雜하나 私企業체가 新資本支出의 良好한 収益性을 豫測한 것보다는 덜 複雜하다 割引率을 適切하게 策定하는 問題가 있는 바 公企業에서의 割引率을 策定할 때는 平均借入利率을 參考한다.

만약 施設을 適切히 活用하지 않아서 純收益이 減少된다면 (特別히 公共財産에도 해당한다) 資本價値가 非效率的인 利率로 策定된 純收益을 資本化함으로써 低評價될지의 여부에 關한 의문이 야기될 수 있다. 非金錢的인 所得이 없다고 假想하면 그 解答은 否定的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價値는 現實에 關聯되며 使用形態 및 使用密度가 주어진 現實的이고 豫想된 收益에 關聯되기 때문이다. 公企業은 副收益으로 補償하지 아니하며 資産을 制限하여 使用한다면 그 資産은 단지 一般大衆에게 轉稼하여 減少시킬 뿐이다.

만약 實際使用者負擔이 適正線 (現在 價値를 極大化하는 것) 以下이면 賃借公正資産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後者 (補助金) 가 推定되고 轉稼된 評價가 될 수 있다. 施設의 大部分이 無償으로 設備되었다면 그 問題는 더욱 어렵게 된다. 代替하여 使用

한 價值 (類似한 財産이 인접하여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比較할 수 있다면 그 價值로 使用할 수 있는 바와 같이)로 施設 (國立公園과 같은)의 價值를 推定할 때는 서어비스의 純價值를 推定한 것보다 誤謬가 더 적을 것이다.

8. 代置原価

再生産 가능한 固定資産 (構築物 및 施設)의 市價를 推定하는 一般的인 方法은 減價消却한 代置原價를 推定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여 이러한 方法에는 總代置原價를 알기 위하여서 資産形態別로 前期各年度의 購入品을 前年度價格 對 市價率을 乘하고 純價額 即 減價消却한 代置原價를 얻기 위하여서는 既存耐用年數의 資産과 同一한 資産의 價值消耗를 推定함에 따라 計算한 減價費를 購入原價에서 控除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以上과 같은 方法이 利用되나 그 理論的 內容과 條件이 認定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時價에 依한 總스토크

—— 첫째 物價變動을 考慮하여 原始原價 (Original Cost)를 代置總原價로 評價하여 보자. 代置原價를 表示하도록 資本財를 再評價하기 위하여서는 新資産의 物價指數가 必要한 것이다. 이것은 곧 物價單位나 再評價單位에 關한 問題를 惹起시킨다. 이런 問題는 資本財生産의 生産性이 變動되고 同時에 資本財의 物理的 性能과 生産 및 收益産出能力이 달

라지는 動態經濟下에서는 重要な 것이다.

이러한 問題를 다룰 때 우리는 再評價單位가 資本財의 物理的 性能에 따라 細分되어야 한다는 Edward Dension의 意見과 一致하며 資産代置時에 新旧形態(物價算定時 Bureau of Labour Statistics의 理論的인 節次)間的 生産費差異에 따른 調整과도 一致하게 된다. <註 5> 資本財의 物理的單位는 그 資本財生産에 所要된 投入量이나(이는 時間의 흐름에 따라 一般的으로 減少된다) 그 資本財의 生産能力(이는 時間의 흐름에 따라 보통 增加한다)과 混同되어서는 안된다는 點이 重要な 것이다.

上述한 차례의 混同은 避하기 쉽다. 例로서 物理的 特性과 生産能力이 兩時點間에 變하지 않으나 이 機具를 製作하는 경우에 生産性이 倍加되는(機具當 實際收入要素가 半減되는) 하나의 機具를 들어 보자. 또한 우리는 資本施設의 數量이 半減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即 이는 實際로 發生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나 生産性이 倍加되었음을 意味할 뿐이다. 많은 機具는 그 처음 生産時에 技術水準(生産性)에 주어진 實際原價를 表示하여야 한다.

標準機具의 生産能率을 增大시키자면 그 機具의 價格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 平均要素價格(利益包含)이 그 生産에 所要된 生産要素가 平均生産性的 變動만큼 變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資本財의 物理的 性能이 모델의 變化와 더불어 달라진 것을 생각하여 보자 이 點에 關하여 Dension(그리고 BLS의 理論的인 節次)은 그 性能의 差에 따라 實際原價로 機具原

價를 調整하였을 것이다.

設令 우리가 初期에 新・旧型機械를 購入한다 할지라도 이 節次는 初期技術로 原價나 投入量을 表示하는 實際原價의 意味를 갖는다. 이러한 節次の 一般的인 効果는 뚜렷한데 이는 物價指數에 따라 特定지워진다. 1970年에는 同年에 施設된 新減價資産의 價値는 1千億弗이라고 假定하자 1970年以前에 生産되어 아직까지 스톡으로 남아 있는 減價資産을 再生産하는 데는 20,000億弗이 所要되었으나 旧資産을 現技術로 生産한 資産으로 代置하는 데는 불과 15,000億弗이 所要된다고 假定하자 既述한 節次에 依하여 1970年末에 總資本量은 16,000億弗이 아니라 21,000億弗로 測定될 것이다. 換言하면 旧資本財는 生産에의 寄与能力을 比較한 것이 아니라 同日字에 再生産原價를 比較함으로써 新資本財와 一致될 것이다.

不變價格에 依한 總스토크 ————— 여러 해를 거쳐서 不變價格으로 總스토크의 價値를 알자면 計算上 時價代身에 어떤 特定基準年度의 價格으로 代置하면 된다. 그 結果는 이러한 資産의 生産原價面에서 相異한 두 時點에 있는 資産을 同一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1970年 價格으로 評價한 總減價資産이 1968년에는 20,000億弗로 1970년에는 21,000億弗로 된다면 이것은 1968年스토크보다 1970年스토크를 代置하는 것이 5% 더 비싸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1970年 스토크는 아마 性能이 進歩되었기 때문에 1968年 스토크보다 生産에 5% 더 많은

寄与를 할 수 있을 것이다. 總스토크를 測定할 때 相異한 時
點에 生産한 減価資産을 同一化 하는 方法은 時價와 不變價格을
一致시키는 것이다.

上述한 例를 다른 方法으로 說明하여 보자 모델 t는 주어진
날에 모델 t-1보다 實際原價가 10% 높으며 모델 t의 價格은
t-1년에 모델 t-1의 價格보다 15% 높으며 모델 t는 生産
에 寄与度가 모델 t-1보다 20% 많다고 假定해 보자 우리의
調整節次에 依하면 價格의 純增加는 約5% ($\frac{1.15}{1.10}$)로 推定된다.
그리고 모델 t는 生産에 寄与度가 20% 많다고 할지라도 實際
資本이 모델 t-1보다 10% 더 많다 이것은 價格低落 (Price
Deflation)에 依하여 兪어진 것이는 初年度 價格에 依하여
原價가 調整된 物理的 單位를 追加하여 兪어진 것이는 하나의
結果이다. 그것은 現在하거나 알 수 있는 物價指數나 物價水準
과 함께 兪어진 唯一한 結果인 것이다.

資本의 實際價値는 純利益의 創出能力에 있는 것이지 生産量
그 自体에 있는 것이 아니란 點을 銘心하여야 한다. 新機械의
生産能力이 實際原價보다 빨리 上昇하는 것과 같이 純收益도 역
시 機械의 初期購入者가 使用함에 따라 上昇한다. 經濟理論에
依하면 非正常的인 利得은 競争이 進行됨에 따라 점점 減少한다
고 한다. 그래서 新機械의 價格은 正常利益을 包含하여 그 原
價에 接近하게 된다. 新投資에 對한 收益 (Return)은 그 生
産能力보다 資本財의 繼續的인 모델原價 (正常 Markups 包含)에
거의 比例하여 움직인다. <註 6 >

위에서 든 예에서 新모델 t 는 前期의 旧모델 $t-1$ 과 同率의 收益을 獲得한 点까지 購買될 것이다. 그래서 機械當 實際收入은 旧모델에 依한 機械보다 10% (20%가 아님)가 높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델 t 의 높은 生産能力은 모델 $t-1$ 의 時價減少에 反映될 것이다. 이것은 後述할 減價消却費와 減價된 代置原價를 推定하는 重要한 一面이 된다.

結論적으로 말하면 品質의 變更은 재치 높고라도 一定한 時點의 價格으로 資本財의 總再生産原價는 豫想純收益力을 反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固定資産의 未來純收益力の 減少傾向은 反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一定 時點에서 스톡을 새로이 生産하기 위한 費用을 反映한다. 時間의 흐름에 따라 總스톡을 不變價格으로 表示한 初年度의 推定物價만 주어진다면 (規定된 方法으로 모델變更을 調整하고) 物量의 變化를 反映한다 그 推定은 經濟的이며 物量基準에 입각한 것인데 이는 스톡의 廢棄時期와 總스톡의 規模를 決定 짓는 諸固定資産의 經濟的壽命이지 物理的壽命이 아닌 것이다.

時價로서의 純스톡 ————— 減價資産의 總價値를 時價로 推定하게 되면 減價消却을 推定하여 純價値를 알기 쉽다. 市價推定方法과 같이 純스톡은 資本財로 부터 未來에 豫想되는 收益 흐름의 現在價値 (現價)에 接近하게 된다.

減價資産價値를 推定하자면 國富를 알 수 있도록 다른 市價推

定値와 적절히 結合하여야 한다. 減價推定은 實際總費用測定으로 看做되어 왔으나 減價充當金은 주로 資産價値의 減少를 經濟적으로 測定하는 것이다. 資本財의 價値는 —— 真正한 意味에서는 壽命 —— 市場에서 決定된다.

減價充當金과 純스토크推定도 마찬가지이다. 使用中인 工場과 施設의 市價는 減價資産을 評價하는 直接的인 方法일 것이다. 大部分의 資産이 組織的인 中古品市場에서 去來되지 않기 때문에 減價는 推定될 수 밖에 없다. 多種多樣한 資本財의 壽命은 여러 가지 調査나 廢棄日에 따라 決定될 수 있다. 新資産에 適用될 수 있는 減價費曲線의 模型을 推定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去來된 資産의 流通價格에 입각한 資料로부터 類推하고 去來되지 않은 것에도 適用될 수 있다.

減價된 代置原價와 市價(이것이 存在한다면)의 差異는 두가지 主要한 理由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그 하나의 理由는 減價曲線에 基礎를 둔 資料의 正確性이 曲線形式上的 性質, 그리고 減價消却이 期間에 無關하다는 事實에 關聯된다.

減價推定을 間接的인 性質의 觀點에서 다룬다면 需要의 繼續的인 變化는 固定資産의 市價가 延長된 時期에 特定資産의 代置原價보다 떨어지거나 오르게 하는 作用을 한다. 特定資本財의 收益을 豫想하지 못한다면 中古資産의 市場價値는 減價된 再生産原價보다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利益이 以前의 豫想水準에 達할 때까지 新資本財의 購買는 減少되기 때문에 그 差異는 一時的인 것이다. 中古資本財의 供給이 相對的으로 떨어지면 그

財貨의 價値는 減價된 代置原價를 向하여 오르는 傾向이 있을 것이다. 新財貨의 購買가 增加하고 따라서 中古資本財의 供給이 漸增하므로 이러한 現象은 收益力이 豫想을 超過하는 中古財貨의 價値를 끌고루 떨어지게 하는 傾向이 있다.

減價된 代置原價를 推定하는 것은 市價나 實際價格이나 假想價格에 다소 近似함이 分明하다. 이러한 近似值에도 불구하고 繼續記錄法 (Perpetual Inventory Method) 에 입각하여 富를 推定할 때는 有用한 分析을 하여야 한다.

市價로 純스토크를 測定하기 위하여 新旧資本財의 價値를 同一하게 하도록 品質을 變更시킨 方法은 總스토크를 測定하는 方法과 서로 矛盾된다. 減價資産의 純價値는 總價値의 減價額以下로 떨어진다. 그 理由는 그 資産이 物理的인 面에서 減耗되고 그래서 時間이 지남에 따라 效率이 減少하고 物理的壽命이 減少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中古財貨는 改良될지라도 生産能力面에서 新資本財보다 相對的으로 떨어진다. 이것은 不足한 減價充當金으로 物理的消耗과 陳腐化를 充當하는 데서 招來된 것이다. 統計的으로 말하면 이러한 現狀은 減價消却의 計算上 適用한 耐用年數가 物理的壽命이 아니라 陳腐化로 짧아진 만큼 現實壽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陳腐化는 減價消却計算公式을 選定할 때 考慮되고 또 되어야 하기 때문에 惹起된 것이다. 그 結果는 物理的要素에 대한 充當金은 除外하고라도 서로 다른 年度에 生産한 減價資産은 原則的으로 주어진 時点의 生産原價에 依하여서가 아니라 生産能力에 따라 同一하게 되는 것이다. 모델 $t-1$ 과 모

모델 t는 t年度에 製作될지라도 다같이 100弗이 所要되었으나 모
 델 t는 年当生産寄与度가 2倍가 될 수 있음을 想定하여 보자 모
 델 t-1의 物理的寿命은 半減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자 (그러나
 生産의 寄与度는 節減되지 않는다) t年度에는 두 資産의 總스토
 크는 모두 200弗이다. 그러나 純스토크 (割引要素를 無視하면)
 는 150弗이 아니라 125弗이며 그 差異는 陳腐化를 나타 낸다.
 이 理由때문에 純스토크의 推定은 現市價에 接近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不變價格에 依한 純스토크

上述한 것은 서로 다른 年

度에 不變價格으로 純스토크를 比較하게 된 것이 아니다. 廢棄
 充當 (Obsolescence Allowance)은 純스토크의 水準에 影響을
 주나 每年度에 類似한 充當이 되므로 品質變更으로 減縮된 純資
 産의 움직임에 影響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減縮된 純資産의
 5%增加에 依한 說明 (이 問題에 關한 限)은 初年度에 第2次
 年度의 純스토크를 代置하는 原價는 第1次年度의 純스토크를 代
 置하는 原價보다 5% 높다는 것이다. 스토크의 品質을 改善한
 다면 第2次年度의 純스토크의 生産寄与度는 5% 높다.

[註1] Know-how란 製造技術上的의 方法으로 同種会社間의 競争에
 對處하기 위하여 機密로 保持하는 것이 보통이다. Inno-
 vation speed가 빠른 現代産業社會에서 超過利潤을 創出
 하는 主要한 原動力이 이 know-how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開發途上의 나라는 先進國의 know-how 使用料로 막대한 licencefee를 支払하고 있다.

〔註2〕 廣義로 請求權이란 自己資本과 他人資本의 合計인 總資本을 말하나 여기서는 좁은 意味로 自己資本만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貸借對照表 貸邊 總計에서 他人資本인 諸負債를 差減한 價額으로서 表示되며 細分하면 資本金과 諸剩餘金이 있다.

이 말은 会社를 解散하거나 解散한다고 假定할 때 資本主가 会社에 對하여 要求할 수 있는 所持分價額이란 뜻에서 緣由된다.

〔註3〕 機會原價는 材料・勞動 또는 設備 等の 諸資源에 對한 代替的 諸用途中 어떤 하나를 扞함으로써 다른 用途를 犧牲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이러한 犧牲을 貨幣價値로서 算定한 것을 말한다.

〔註4〕 Tibor Barna는 英國에서 代置原價에 有用한 方法으로 火災保險評價法을 適用했다. F. A. Lutz와 D. C. Hague의 稿 「所得과 富」 Vol. Ⅳ의 「資本測定의 代替的方法」 그리고 「資本理論」의 「資本測定에 關하여」參照

〔註5〕 Edward F. Dension, 所得과 富의 研究 Vol. 19 「資本形成問題에 있어서 質的變化, 資本消耗, 純資本形成에 關한 理論的 考察」: Measuring Nations Wealth 1964.의 附錄 I J部 參照

〔註6〕 Oohn W. Kendrick, 「美國經濟研究紙 Vol. LI, No. 2,

第 3 節 資本資産의 評價

十餘年前만 해도 資本理論을 「混亂」(Mess) 그것의 代名詞처럼 생각하는 傾向이 있었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 成長經濟學 (Growth Economics) 이 學界의 關心을 끌기 始作한 以來 資本 즉 資本의 理論과 그 評價에 對한 從來의 態度는 바뀌어지고 있다. 資本 資産에 있어서 그 分析上 또는 實際上的 諸難點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資本理論의 重要性은 널리 認識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其間 斯界의 一般的인 認定을 받아 온 바 있는 資本 資産의 評價를 爲한 諸方法을 概觀하려 한다. 各己의 評價方法은 同一한 資本資産을 相異한 側面에서 評價하게 됨에 따라 그 評價 方法이 評價를 意圖하는 바 資本資産概念의 評價能力 程度에 따라서 批判的으로 論議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 小考는 事業體 (Establishments) 의 純市場價値에 立脚하는 바 資本資産의 補完的 評價方法 - 즉 資産計定上의 附加價値에 依하는 方法을 試圖코저 한다.

1. 資本의 概念

論者가 생각하기에 「資本」이라는 用語가 가지는 바 그 特性은 그 存在가 바로 生産이라든가 販賣 등의 經濟活動에 必要不可

決한 것이며 나아가서 이러한 活動을 擴大시킨다는 事實에 있다.

한편 資本資產의 이러한 存在性 (This quality of being present) 은 上記의 諸經濟活動에 依하여 쉽사리 變更되지도 않는다. 어떤 意味에서였던 投下資本의 消耗라는 것은 原材料라든가 動力등의 消費와는 本質的으로 区分되어야 한다. 이러한 理由로 所謂 資本消費 (Capital consumption) 라는 用語가 잘못 解釋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資本이 가지는 바 그 唯一한 特性은 그것이 消費되지 않는다는 事實에 起因하기 때문이다. 經濟的인 效率性を 勘案함으로 資本資產은 更新될 따름이며 결코 消費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生覺하여 볼 때 知識 (普通 人的 資本으로 分類된다) 이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보면 使用에 의하여 消費되는 것이 아니며 차라리 大部分의 有形耐久資產보다도 더욱 資本다운 所以를 갖게 된다. 한편 上述한 存在 (Presence) 의 概念으로 부터 導出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資本概念을 생각할 수가 있다. 즉 그 所有者의 未來所得을 增大시키는 것은 어느 것이 되었던 資本資產의 範疇에 包含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資本資產이 生産의이며 現在 消費되지 않는다는 事實로서 이미 叙述된 바와 같다.

以上の 基本的인 議論은 나아가서 資本資產의 「플로우」概念과는 對比되는 「스톡크」의 問題를 提起한다. 적어도 資本資產의 正當한 評價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評價는 生産 내지 販賣變動 가운데서 存在하는 「스톡크」 내지 「在庫」로서 把握되어야 만

한다. 「耐用年數」(Services)는 資本資產이 生産過程에 存在함으로써 그 資産의 生産上의 寄與度를 測定함에 있어서 有用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生産性의 分析이라고 하는 觀點에서 볼 때 이는 實際上 別로 効用이 없다는 것이다. 大部分의 資本資產에 있어서 例를 들면 建物の 耐用年數(Building-Hours)라든가 送水管의 耐用年數(Pipe-Line-Hours)등과 같은 「耐用年數」의 把握이 別다른 意味를 갖는다고는 보지 않는다. 機械 등과 같이 一定期間의 稼働後에는 磨滅되고 마는 資本資産의 경우 그 機械의 耐用年數가 生産途中에 消費되는 原材料라든가 動力 其他 經常投入量 등을 들 때, 評價에서 누락되었던 餘他資産의 獨立的인 評價基準을 마련하여 준다고는 보지 않는다. 資本資産이란 生産이 일어날 때 거기에 存在하는 바로 그것이며 그 使用度(The Intensity of Utilization)는 一定한 產出高比率을 낳는 經常投入比率에 의하여 把握될 수가 있다. 機械의 耐用年數는 使用度の 概略的인 把握(the crudest measure) 以外에는 別로 効用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機械가 餘他の 機械보다도 倍以上의 稼働能力을 發揮하더라도 결국 두 機械는 모두 同一한 耐用年數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어느 한 機械가 다른 機械에 比하여 倍의 稼働能力을 發揮하기 爲하여서는 다른 機械의 그것보다도 더욱 많은 原材料를 必要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經常的으로 投入되어 消費되는 物量(Vector)은 資本資産과 더불어 或者가 「機械의 耐用年數」에 의하여 推計를 試圖하려는 資本資産의 諸側面을 充分히 說明

하여 주는 것이라고 본다. 일정水準의 綜合段階에서 그 意圖하는 바 目的에 따라 或者는 餘他の 經常投入量 代身에 工場稼働時間 (Plant Operating Hours) 과 같은 요인을 導入할른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만일 별로 많은 費用이 所要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센서스」樣式으로 부터 적당한 設問을 除外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以後 우리의 觀心을 「스톡크」로서의 資本資産의 評價問題에만 局限시킬 생각이다. 특히 그 밖에 것에 對하여는 實際 上 별로 問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資本 「스톡크」의 物價變動問題에만 觀心을 가질 것이다. 勿論 그 評價價值는 物價變動을 勘案하여 「디플레이트」한다거나 또는 리플레이트함으로써 具體적인 數值 (Physical-like terms) 로서 表現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도 看過하고 싶지 않은 問題들이 많으나 實際 이러한 指數문제에 對하여서는 별로 얘기할 것이 없고 이에 對한 議論을 以上으로 마친다.

2. 資本「스톡크」의 傳統的評價方法

從來의 經濟學者들이 試圖했던 바 資本「스톡크」의 評價는 다음의 세가지 方法으로 要約될 수 있겠다.

첫째 廢業処分 (Retirements) 과 物價變動을 勘案하여 그 資産에 對한 累積的 投資支出로서 評價된 粗 (또는 未減價償却 (Undepriciated) 「스톡크」

둘째 現存「스톡크」를 經常市場價格으로 評價하여 나오는 純(또는 減價償却된)「스톡크」

셋째 「스톡크」의 所有로 부터 豫想되는 將來純所得의 割引된 現在價值

우리는 觀心の 焦點을 粗概念 및 純概念에 立脚하는 「스톡크」의 評價問題에 局限시키려 한다.

資本資産評價에 있어서 위의 세 가지 方法은 經濟分析上の 觀心에 따라 相異한 效用을 갖게 될 것이다. 粗「스톡크」는 資本의 實質粗費用(The gross real cost of capital)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評價하려는 資本資産을 形成하기 爲하여 投下되었던 財貨 또는 用役의 總價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評價方法은 再生産이 可能한 有形資産의 評價에 흔히 導入되는 것으로서 基本的으로 이러한 評價方法은 餘他形態의 資産評價에도 利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教育이나 訓練에 投下된 公共支出 및 民間支出의 推計 系列로 부터 知識「스톡크」(즉 人的資本 내지 組織資本 Organizational capital)의 評價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純「스톡크」에 의한 評價는 現存 「스톡크」의 選擇的 源泉價值(The alternative resource value)를 나타낸다. 純「스톡크」는 粗「스톡크」보다도 작다. 왜냐하면 使用하여 오던 資本財의 市場價值는 新品資本財의 그것보다도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理由를 보자면

- ① 老朽化(Deterioration) - 過去로부터 使用하여 오는 資本財는 同一한 技術下에서 新品資本財에 比하여 그 生産性이

낮을 것이며 더욱 重要한 理由는

- ② 그 資本財의 經濟的 壽命의 消滅 (Exhaustion of Economic Life) 에 있다. 使用하여 오던 資本財는
- ㉠ 그 生産性的 遞減으로 因하여 實質生産年數는 줄어들게 될 것이며 한편 現存資本財에는 導入될 수 없는 技術發展에 따라 經濟的 代置 (Economic Displacement) 라고 하는 恆常的 危機에 直面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粗概念에 의한 資産「스톡크」의 評價를 採할 것인가 아니면 純概念에 의한 評價를 取할 것인가 할 때 前者를 採할 것이 좋다. 그 하나의 理由는 이렇다. 즉 利用可能한 實際的인 資料의 面에서 볼 때 粗「스톡크」의 評價를 爲하여 利用할 수 있는 「데이터」가 純「스톡크」의 評價를 爲하여 使用된 「데이터」보다도 보다 正確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理由는 粗「스톡크」에 의한 評價가 生産性이라는 또는 生産函數의 分析등과 보다 깊은 連關을 가지는 것이며 또 實際 資本資産의 推計가 가장 많이 利用되는 것도 이러한 類의 分析에서 利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基本的으로 볼 때 資本이 本來의 機能을 發揮하는 것은 資本資産이 生産活動에 寄與하기 때문이며 同時에 粗「스톡크」는 生産性的 分析에 있어서 重要한 하나의 變數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見解는 資本財를 비롯하여 工業部門의 生産函數로부터 實際적으로 強力히 뒷받침 되고 있다. 한편 Barna 教授의 標本調査에 의한 研

究結果는 보다 正當한 論證을 보이고 있다.

㉔ 代置原価 (RePlacemEnt) 는 다음의 두 概念으로 나누어 考察할 수가 있다. 즉 未減價代置原価 (RePlacemEnt Cost New) 와 減價代置原価 (Written-down RePlacemEnt Cost) 가 그것이다. 經濟理論上의 資本價値라는 觀點에서 보자면 後者가 보다 妥當할 것이며 前者의 경우 역시 諸生産關係의 研究에 그 重要性을 가질 것이다.

一般的으로 어느 資本資產의 價値는 그 經濟的 效率性的 遞減보다도 훨씬 빨리 遞減하는 것이며 또 實際에 있어서 어떤 資本資產은 그 效率性이 全然 減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理由로 未減價代置原価와 產出高간의 關係는 減價代置原価와 產出高간의 그것 보다도 훨씬 安定的인 것이며 여기에서 前者의 方法이 資本資產의 附加投資分을 豫測하는 點에 있어서 보다 妥當性을 갖게 될 것이다.

어느 產業에 있어서는 維持費가 그 資產의 廢棄에 이르기 까지 繼續됨으로서 資產의 價値가 保全되나 그렇지 못할 때 그 資產은 價値를 잃고 말 것이다. 建物등은 補修라든가 現代化에 의하여 同一한 形態의 새로운 建物과 比較가 될 정도로 現狀의 維持가 可能한 것이다.

純「스톡크」보다도 粗「스톡크」에 의한 評價를 주장하는 것은 生産性的 分析이라고 하는 觀點에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地域이라든가 產業 내지 國家에 있어서 蓄積된 資本「스톡크」가 가지는 選擇的 源泉價値를 評價하는

數値에 觀心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純「스톡크」에 의한 評價方法이 보다 適切하리라고 본다. 生産性的 分析이라고 하는 한 가지 要求만으로 서도 왜 純「스톡크」에 의한 評價보다도 粗「스톡크」에 의한 評價를 주장하는가 하는 理由는 說明될 수 있다는 것이다. 以外에 粗「스톡크」를 区分하는 세번째의 理由를 볼 수 있다. 投資支出이란 其 實 正確하게 實現되고 있지 않다. 特히 新型資本財의 경우 그 投資支出은 期待하였던 것보다도 많거나 또는 적게 資産의 具體적인 實現을 招來할 것이다. 結果는 生産이 適正規模로 擴大될 때까지 最初로 生産된 財貨에 있어서는 資本收益을 가져 올 수도 있으며 반대로 그 資本財가 期待하였던 것 보다도 낮은 生産性을 나타낼 때 그 資本支出의 價值는 급격한 下落을 나타낼 것이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이러한 資本財에 있어서는 純「스톡크」에 의한 評價가 生産性的 研究라는 觀點에서 보자면 粗「스톡크」에 의하는 것 보다도 妥當할 것이라 생각된다.

資産評價의 第3의 方法 즉 資産의 割引된 現在價值를 求하는 方法은 人的 資本의 評價에 있어서 가장 많이 利用되어 왔다. 人的 資本이라고 하는 特殊한 資本資産은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바 市場도 없는 것이며 이러한 市場에서 新・舊의 區別도 不可能한 것이고 또한 磨滅(Scrap)이라는 現狀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별로 이상스러울 것이 없다. 이러한 姿意性은 다음의 割引公式에서도

分明하다.

$$V = \sum_{t=1}^{\infty} \frac{E(R_t)}{(1+r)^t}$$

여기에서 r 은 割引率, $E(R_t)$ 는 t 期에 있어서豫想되는資本資産의豫想收益, 그리고 V 는資本資産의現存價值이다. V 를算定하기爲하여서 $E(R_t)$, $t = 1, 2, \dots$ 를推計해야 하며 r 을選定해야만 한다. 여기에서推計上誤差의潛在的可能性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가. 有形資産「스톡크」의 粗價值

過去の文獻으로부터粗「스톡크」評價의 두가지의方法을알 수 있다. 하나의方法은火災保險 내지 이와類似的한評價方法을援用하는 것이며 다른方法은繼續記錄法(Perpetual Inventory Method)에 의한 그것이다.

大體的으로火災保險評價에對한調査上の知識을 얻기가 어느 정도實現可能性이 있는가는疑問이다. 「R·W·Goldsmith 教授」가 말하듯이 이方法은1913年獨逸에서導入하였던 것으로서傳統的인評價方法이다. 그는 나아가서 이러한評價는全體的인計數의把握에 있어서는 별로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Barna」教授는英國에서 이러한評價資料의 수집이 가능하였던 것으로報告하면서帳簿價格의利用을主張하였다.

聯邦政府에 依한 全般的이며 繼續的인 國富推計가 이루어 지

지 못하였던 당시에 国立經濟研究所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의 R.W. Goldsmith 教授와 그의 同僚들은 1896年에서 1958年에 이르는 동안의 全国家有形資産의 總評價를 試圖한 바 있었다. 이러한 一連의 系列은 Goldsmith 教授가 주장하였던 「繼續記錄法」 (Perpetual Inventory Method) 을 導入함으로써 再生産이 可能な 有形資本 「스톡크」의 評價는 그 資産의 豫定耐用年數 (Assumed Life) 에 걸쳐 이루어진 資本支出의 總計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었다.

i 型의 資産이 一定한 耐用年數 L_i 을 가진다고 假定할 때 이 는 以前의 總資本支出로 부터 廢棄分 (Retirements) 을 差減한 것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E_i(t)$ 가 t 期에 걸쳐 i 型 資産에 對한 總投資支出 그리고 $R_i(t)$ 가 t 期에 廢棄되는 資産을 代置하기 爲한 總支出을 나타낸다면 T 時點에서 i 型 資産의 粗 「스톡크」는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3.1) \quad G_i(T) = \sum_{t=1}^T [E_i(t) - R_i(t)]$$

最初의 假定에 의하여 $R_i(t) = E_i(t - L_i)$, 한편 최근에는 $R_i(t) = E_i(t - L_i) = 0$, $1 \leq t \leq L_i$ 이므로 윗식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3.2) \quad G_i(T) = \sum_{t=1}^T [E_i(t) - E_i(t - L_i)] \\ = \sum_{t=1}^T E_i(t) - \sum_{t=L_i+1}^T E_i(t - L_i)$$

$$= \sum_{t=t_i+1}^T E_i(t)$$

Goldsmith 教授의 이러한 評價方法은 어느 資産이 一定한 耐用年數에 이르기까지는 그 機能이 持續적으로 維持되나 (Zero Mortality) 그以後에는 갑작스러운 機能의 消滅을 招來한다고 하는 極히 單純化된 (아마 必要하겠지만) 假定에 立脚하고 있다.

理想的으로 追求하는 評價方法과 그리고 必要에 따라서 또는 費用등에 의하여 制約되는 評價方法을 区分하여야만 되겠다.

理想的으로 $F_i(t)$ 가 t 期에 있어서 資産의 殘存價率 그리고 M_i 을 i 資産의 極大耐用年數라고 한다면 T 年에 있어서 i 資産의 粗「스톡크」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난다.

$$(3.3) \quad G_i(T) = \sum_{t=0}^{M_i-1} E_i(T-t) F_i(t)$$

$F_i(t) = 1, 0 \leq t < M_i = L_i$ 이라는 假定에 의하여 위 式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3.4) \quad G_i(T) = \sum_{t=0}^{L_i-1} E_i(T-t)$$

이는 (3.2) 式과 同一하다.

Barna 教授는 이 評價方法의 假定 내지 前提 (Approximation), 즉 모든 資産이 一定한 耐用年數에 이르면 廢業된다고 하는 것을 批判하였다. Barna 教授가 英國製造業資産의 耐用年數 (Mortality)를 直接的으로 標本調査한 結果는 (3.4)

式이 나타내는 直角曲線 (Rectangular Curve) 과 對比되는 殘存價가 線型的 減少曲線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러한 諸見解가 資産의 耐用年數에 對한 一般的인 特徵을 말하는 것이 라면 다음과 같은 線型的 假定 (Linear Approximation) 이 必要할 것이다. $E_i(t) = 1 - \frac{t}{2L_i}$, 여기에서 $M_i = 2L_i$, L_i 은 i 財의 平均耐用年數이다. (3.4) 式 代身에 評價式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begin{aligned}
 (3.5) \quad G_i(T) &= \sum_{t=0}^{2L_i} E_i(T-t) \left[1 - \frac{t}{2L_i} \right] \\
 &= \sum_{t=0}^{2L_i} E_i(T-t) - \frac{1}{2L_i} \sum_{t=0}^{2L_i} t E_i(T-t)
 \end{aligned}$$

Barna 教授는 1955 年 英國製造業에 있어서의 $G_i(T)$ 를 그의 直接的인 評價와 P.Redfern 氏의 繼續記錄法에 의한 評價를 比較하고 있다. 그는 그가 얻었던 重要資産으로서 50%의 약 $\frac{1}{2}$ 정도는 繼續記錄法에 의한 評價에 있어서는 耐用年數假定과 合致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Barna 教授의 이러한 主張이 一般的으로 모든 資産에 適用될 수 있다면 (3.5) 式과 같은 評價式이 $G_i(T)$ 의 보다 正確한 評價를 나타낼 것이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政府에 의한 國富統計調査를 爲하여서는 資産의 耐用年數에 關한 보다 妥當한 資料의 수집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點을 알아야 될 것이다.

나. 有形資本「스톡크」의 粗價值

純「스톡크」의 價值는 構築物 내지 裝備등의 新品價格과 使用中의 資産의 市場價格으로 부터 分明히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는 極히 一部の 特殊한 資産에만 妥當할 것이다. 運輸裝備(트럭·트레일러·飛行機등) 農機具 및 一般機械器具 原動機 등이 이에 屬할 것이다. 가능한 限 이러한 「데이타」는 蒐集되어야 하며 이는 理論적으로 粗「스톡크」의 評價와 關聯을 갖기 때문이다. 비록 制限된 범위의 資産일 망정 純「스톡크」의 價值가 價格「데이타」로 부터 얻어질 수 있다면 이는 同一한 資産에 있어서 減價償却 控除後의 帳簿價格 내지 粗價值(or 支出)로 부터 얻어진 純「스톡크」 價值와의 比較가 可能할 것이다.

純「스톡크」의 評價에 많이 利用되는 것이 帳簿價格에 의한 評價方法이다. 帳簿上의 資料에 의한 評價方法이다. 帳簿上의 資料에 의한 諸「데이타」는 税金控除後의 收益率을 極大化하려는 方向으로 減價償却比率이 決定되기 쉬우며 따라서 이는 그 資産의 市場價值의 減少와는 無關하거나 아니면 거의 乘離된 狀態에서 決定되기 쉽다는 欠點이 있다. 大部分의 資産은 稅法이 規定하는 바 最低耐用年數(Minimum Write-off Periods)를 屢센 超過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稅法上의 規制를 別途로 하더라도 一般的으로 企業의 減價償却對策은 極히 妥하기 쉬우며 또한 恣意的이다.

Stigler, Creamer, Dobrovolsky 및 Boranstein氏와 餘

他人의 研究는 大部分이 企業稅務報告로 부터 수집된 帳簿價格에 依存하고 있다.

따라서 上記 諸研究者들은 投下資本의 센서스 定義를 利用한다. 즉 土地·建物·機械 기타 裝備등으로 構成되는 固定資本과 現金 在庫資産 및 受取計定으로 이루어 지는 運轉資本이 그것이다. 이는 特許權이라든가 營業權과 같은 無形資産이 센서스 定義에 包含되는 것을 빼고서는 모두 國民所得統計上의 定義와 一致하는 것이다. 이러한 諸定義가 有形 및 無形諸資産의 實質資本「스톡크」를 評價함에 있어서 適當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만일 再生産이 가능한 有形資産「스톡크」를 評價하자면 現金이나 受取計定등과 같은 財務上の 諸資産 (Financial Assets)은 除外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無形資産까지를 包含하는 資本「스톡크」를 評價하자면 特許權이라든가 營業權등의 無形資産의 帳簿價格의 利用은 減價償却을 控除한 資産의 帳簿價格보다도 正確性を 잃게 될 것이다. 決算上의 理由로 企業체는 無形資産에 價值를 부여하는 것에 極히 保守的인 것이다.

純「스톡크」의 評價를 爲한 第3의 方法은 資産粗支出에 對하여 減價償却法則에 의한 調整을 導入하는 方法이다. 따라서 Goldsmith教授는 모든 形態의 資産에 定額法에 의한 減價償却을 假定함으로써 粗價值로 부터 純「스톡크」를 推計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推計는 國內收益서어비스協會의 帳簿價格에서

얻어진 推計와는 別途의 系列을 나타낸다. 豫想될 수 있는 바와 같이 Goldsmith教授에 의한 粗「스톡크」의 推計는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推計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것으로서 前者는 항상 後者보다 큰 數値를 나타낸다. 그 差異는 戰後 1945 ~ 57年度에 있어서 7% 以上을 超過하지는 않았다. 反面에 繼續記錄法에 의한 純「스톡크」 評價値는 IRS 推計値보다도 6% ~ 7.5% 사이를 超過하고 있다.

3. 傳統的 評價方法의 批判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有形資產評價의 傳統的 諸方法은 제 나름의 價値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 自身이 그 利用面에 있어서 所望스러운 評價方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純「스톡크」의 評價方法은 概念的인 諸欠陷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에 純資產評價의 한 補完策을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비록 모든 種類의 資本裝備라든가 構築物의 實際 市場이 成立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서 그들 資產의 再取得價格 (新品價格) 과 市價에 對한 知識이 完全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單純한 構成價格 (Component Prices) 의 結合만으로 有形資產의 正當한 評價가 이루어 질 것인지 의문이다. 그 例로 大部分의 資本財가 相互 分離될 수 없는 性質을 갖게 됨에 따라 일단 設計段階가 끝나서 一定한 크기의 形態로 資本財의 個別單位가 建築되고 裝置된다. 따라서 이러한 資本財가 設置된다면 理論적으로 우리는 그 資本

財의 價值가 限界價值生産物과 그 價格이 一致하게 調整된다고 假定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內在價值 (Internal Value) 는 表面價值 (External Value) 와 같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物件은 變하기 마련이며 特히 耐久消費財는 그 耐用年數에 걸쳐 뚜렷한 變化를 나타 낼 것이다. 이는 企業이 그들의 資本裝備을 內在價值와 表面價值가 恆常 一致하게 調整한다는 것은 아니다. 理論上 企業은 적어도 그 再壳渡價格 보다도 많은 沈沒投資 (Sunk Investment) 를 保有할 것이다. 따라서 그 企業에 있어서의 資本財가 生産上에 가지는 寄與價值는 그 市場價格보다도 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格差가 어느 정도의 크기에 이르면 同一한 (Parallel) 生産單位들이 장치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工場이 附設되는 경우와 같이 不規則的 間隔을 두고 일어 날 것이다.

어느 企業에 있어서 資產構成要素의 市場價格의 總利가 그 企業資產 全体가 生産上에 가지는 價值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企劃 (Planning) 이라든가 設計 (Design) 등의 要素가 企業組織에 投下됨으로서 이는 重要한 資本資產을 이루게 된다. 變動하는 여건 아래서 그리고 不確實性的 前提下에 거의 繼統的으로 重大한 意思決定이 要求되는 物件下에서 그 組織은 每日의 操作이 效果的으로 組織되는 制度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運營組織은 그 企業의 資產과 더불어 企劃이라든가 設計등의 要因이 混合되어 하나의 有機體를 形成함으로써 따라서 資本資產의 價值가 結合的으로 決定되는 것이다. 現在 稼動中이거나 長期計

割上에 있어서 어느 企業이 가지는 바 組織으로서의 價值는 그 企業의 個別的 有形資產의 評價만을 試圖한다면 이로 부터는 完全히 除外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現實적으로 나타나는 未來의 豫想收益의 面에서 볼 때 固定資產의 採用은 資本資產의 一部分에 不過함에도 研究 및 開發活動에 對한 아무런 考慮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諸技術產業에 있어서의 知識資產 - 電子產業, 製藥 宇宙開發產業 등 - 은 有形資產의 推計에 評價를 局限시킬 경우 현저하게 低評價될 것이다. 「用役組織」 즉 經營이라든가 科學・工學 등의 相談會社는 無視할 정도의 資本資產을 가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결국 金融 (Finance) 과 交換 (Exchange) 을 媒介시킴으로서 貨幣制度 및 信用制度가 實質적인 生産資產에 寄與하는 바는 銀行建物 (Bank Premises) 과 같이 固定된 實質資產만을 고려하는 어떠한 評價方法에 의하더라도 現狀을 低評價하는 것이다.

以上の 理由로 우리가 概觀하였던 바 有形資產의 諸評價方法은 國民所得計定에 利用할 수 있는 評價에 對應할 정도의 正確한 國富計定을 마련하지는 못한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 必要한 것은 企業에 의하여 이루어진 國民所得計定上的 附加價值와 合致하는 個別企業의 意思決定 (Decision Making)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附加資產의 評價인 것이다. 前者의 評價方法은 事業체의 적절한 總和에 의 함으로서 部門別 地域別 國家的인 總實質生産資產의 推計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는 産業의 附加價值에 立脚한 總所得의 現在의 推計를 補完하게 될 것이다. 産業의 附加

價値는 결국 資本과 勞働의 結合에서 發生되는 것으로 보아 이 두 概念은 결코 比較할 만한 것은 아니다. 産業의 附加價値로부터 勞働에 對하여 주어지는 家計에의 支拂을 差減한다면 그 産業의 純現金「플로우」는 「資産計定上의 附加價値」와 類似한 經常計定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資産計定上의 附加價値의 評價가 (不完全하지만) 競争的 條件下에서 決定되는 市場價格에 依存할 때 이는 그 國民經濟의 廣範한 범위에 結晶 利用이 可能할 것이다. 現存 法人에 對한 請求權 (Claims) 이 相互去來됨으로서 그 事業체에 對한 評價가 繼續的이며 全體的으로 이루어지는 証券市場의 例가 있다. 이 경우 그 評價는 그 企業의 生産活動에 의하여 얻어지리라고 보는 未來豫想收益의 現在價値에 對한 그 市場의 評價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所望하는 評價일 것이다. 이러한 評價는 끊임없이 變動할 것이며 때로는 急激히 變動할 것이나 이는 우리가 評價하려는 資産의 實體的 特性에 緣由되므로 豫想은 바뀐다. 따라서 그 企業의 請求權에 對한 市場評價는 影響을 받게 되는 것이며 또한 當然히 該해야만 한다. 한편 現在價値를 評價하는 이와 같은 方法은 未來의 豫想收益을 直接的으로 評價할 必要는 없으며 適當한 割引率을 導入할 必要도 없다.

이러한 評價方法은 資本이 人間勞働 내지 知識水準과는 別途의 生産手段이며 單獨的으로 去來 (Marketable) 될 수 있다고 하는 見解와는 相反됨이 分明하다. 그러나 그 안에 包含된 人間勞働 이라든가 知識水準 내지 熟練度가 賣買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로 부터 실제로 이들이 企業組織에 기여하는 바 資本資産과 유사한 역할을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資本評價方法이 部門別 企業別 내지 産業別 勞動에 對한 支拂을 除外한 附加資産의 價値를 나타 낸다고 하면 組織資本 (Organigational Capital) 으로서 分類되는 無形의 諸資産이 가지는 바 生産上의 寄與는 任意로 除外될 수 없다는 것이다.

· 資産計定上의 附加資本價値의 補完的인 評價方法

가. 純附加資産價値와 粗附加資産價値의 定義

資本資産의 粗「스톡크」와 純「스톡크」의 諸評價額은 貸借對照表上의 資産計定에 記帳할 必要가 있다. 帳簿價格을 利用할 경우 이러한 記帳은 直接的으로 推計에 利用된다. 市場價格을 利用할 경우 元帳의 資産邊에 나타나는 項目의 市場價格을 策定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論者가 提案한 資産評價는 市場價格을 元帳의 負債邊에 나타나는 모든 項目에 걸쳐 策定하여 또 資産邊에 나타나는 純粹한 財務上의 諸資産에도 이를 導入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주어진 事業體에서 資産計定上의 粗附加價値 내지 단순히 粗附加資産을 工事業體에 對한 모든 請求權 即 払入資本金 社債·優先株·普通株·支拂計定·未払稅計定 配當, 従業員利益配當 등의 市場價格으로 定義하겠다. 어느 事業體의 總實質生産資本 즉 純附加資産의 評價는 粗附加資産으로 부터 그 事業體가 所有하는 諸財務資産의 市場價値를 控除함으

로서 얻어진다고 본다. 말을 바꾸자면 우리가 國民所得計定에서 附加價值의 概念이 企業間的 모든 中間去來分을 除外하는 것처럼 政府를 포함하여 그 企業이 다른 企業에 所有하는 모든 請求權을 除外한다. 이는 現金(銀行에 對한 請求權) 未払稅計定・政府債權(政府에 對한 請求權) 資産으로서의 他企業의 株式 受取計定등을 除外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結果數値는 그 企業의 有形固定資産 在庫資産 營業權 特許權 그리고 가장 重要한 것으로서 組織資本(Organizational Capital) 即 經營組織 내지 研究組織 企業內的 連絡組織 그리고 意思가 決定되며 問題가 解決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開發되는 體系를 포함하는 現業 事業體의 市場價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資本」의 概念에 對한 定義의 大部分(특히 製造業 企業의 경우)이 現金이라든가 受取計定 등의 項目을 包含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이를 除外하여야 할 何等의 理由도 없다. 分明히 이들은 個別 事業體의 流動性資産(Liquidity) 내지 資力(Solvency)의 一部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實質生産資産의 一部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어느 企業의 附加資産에 이러한 財務資産(Financial Assets)까지를 포함한다면 이는 二重計算이 될 것이다. 주어진 企業에 있어서 現金資産에 의하여 나타나는 實質資産은 銀行에 對한 評價에서 이미 포함되는 것이다.

受取計定上的 實質資産目錄은 다른 企業의 支払計定에서 評價되는 것이다. 貨幣制度와 信用制度가 實質生産資産에 기여하는

与件을 造成 하여 준다는 事實이 否定되는 것은 아니다. 反對로 附加資産에 의한 評價方法은 이러한 寄与를 勘案하는 것이다. 그것은 金融 및 財政部門에 對한 評價中에 포함된다. 理論적으로 이러한 部門은 國民經濟의 生産性에 기여하지 않는 한 收益을 낳지 않으며 우리의 評價는 이러한 未來收益의 資本化價值 (Capitalized Value) 이다. 이는 그 評價를 産業公團 (Industrial Corporation) 에 利用할 때 포함되는 것으로서 後者は 財政部門과 같이 貨幣制度和 信用制度의 收益利潤을 共有하는 것이다.

나. 諸問題點

從來의 모든 資本評價方法은 現實的 應用上的 難點에 逢着하게 되는 것으로서 附加資産에 依한 評價方法 역시 그 例外는 아니다. 이러한 이러한 諸難點은 粗「스톡크」나 純「스톡크」에 의한 評價보다 附加資産에 의한 推計評價가 더 어렵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시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에서 不完全한 議論이나마 알아 보자

1) 어느 事業체에 對한 모든 請求權이 去來되는 것은 아니다.

支払計定과 같은 請求權은 別로 難點을 招來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우리가 假定하기에 個個의 財貨와 用役의 市場價格에 의하여 記帳되는 것으로서 買入한 財貨와 用役에 對한 債務를 나타 낸다. 短期의 어음이라든가 借用証券 등은 帳簿價格과 近似한 市場價值를 나타 낼 것이다.

企業이 繼續적으로 發行한 社債 및 發行株式을 保有하며 組織的 証券市場이나 去來所에 있어서 時價가 適用될 수 없을 때는 우리의 評價方法에 의한 附加資産의 推計는 不可能하다. 이 때 그 評價는

- ① 그러한 企業들의 現金流入 對 附加資産의 比率이 証券이 賣買되는 同種産業의 다른 企業체의 그것과 同一하다고 假定함으로서 또는 그 産業의 平均價格收益比를 導入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으며
- ② 적당한 回歸方程式에서 收益이라든가 現金流入, 配當分, 企業의 成長率등을 變數로 하는 函數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

2) 모든 事業체가 法人形態를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1)의 경우와 같은 評價上的 問題가 뒤따른다. 有一한 解決方案은 現金流入이라든가 收益 내지 回歸方程式에 의한 方法에 의하여 그 事業체의 資産을 評價하는 것이다.

3) 海外活動을 하는 企業의 경우가 있다.

이를 適切하게 取扱할 方法을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美國의 油類会社들이 莫大한 海外資産을 가질 경우 그 資産의 市場價值가 分明히 그들의 資産價值를 反映할 것은 틀림 없으나 그러한 市場價值는 美國의 純國富資産으로 解決될 수는 없다. 이러한 資産은 分明히 美國市民의 支配를 받는 純資産의 一部일 것이고 보면 상당히 興味로운 것이 된다. 調整이 可能할런지도 모르나 역시 粗雜한 것이 될 것임은

分明하다. 그렇다고 粗「스톡크」로 부터 純「스톡크」를 推計하기 爲한 調整方式 이라든가 資産의 形態에 따라 平均耐用年數를 推計하는 方法만큼은 粗雜하지 않을 것이다.

4) 一定한 時點에 있어서 어느 事業體의 「真正한」 資産이 과연 証券時勢에 의하여 正確하게 評價되는가 특히 그 証券時勢가 急上昇勢 내지 下降勢를 나타 낼 때나 또는 投機的인 時勢가 支配할 때는 如何히 될 것인가 大部分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는 評價上의 問題점을 가친다. 어느 事業體의 証券이 時勢의 커다란 影響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問題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資本이라고 부르는 幻想的인 實體의 評價方法에 의하여 그 資本資産의 眞面目이 如何히 把握되는가 하는 點에 있다. 그러나 大部分의 証券時勢가 現在 그들의 交換價格에 一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購入할 만한 價值가 있다는 點에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點이 있다. 經常計定上의 附加價值를 얻기 위하여서는 市場價格이 援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同一한 問題點이 역시 內在한다.

雪糖價格과 콩價格의 投機的인 變動은 如何히 取扱할 것인가? 보리·밀·목화의 價格이 人爲的으로 維持될 때 그들의 真正한 價值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들 商品의 價值를 그들의 去來價格으로 評價하여 資産에 對한 請求權에 對하여서도 同一한 方法을 使用할 것이다. 大部分의 評價는 實로 独占的인 人爲的인 要因이 포함된다. 理論的으로 이러한 要因들은

非効率성을 招來하며 非合理的인 資源分을 가져 오는 것으로서 이는 그 社會의 所得에 對하여 純全히 逆效果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影響은 우리들의 純國民所得 내지 純資產의 評價에 反映되어야 한다. 市場價格은 最少限度 어떠한 代替物보다도 훌륭한 基準이라고 생각한다.

5) 若干의 事例

資本의 한 評價方法으로서 附加資產에 의한 評價方法의 意義를 알기 爲하여 가장 좋은 方法은 이를 推計함으로서 餘他の 評價値와 比較 檢討하여 그것이 가지는 科學的인 意義를 理解하는 것이다. 이를 爲하여 여기에서 나는 이러한 評價를 多樣한 活動에 從事하는 企業體標本에 適用함으로서 興味로우며 論争的인 問題를 解決하려고 한다. 資料는 모두 무디 産業年鑑 (Moody Industrial Manual) 내지 무디 金融財政年鑑 (Moody Bank and Finance Manual) 을 利用하였다.

<表 1 >

제너럴·모터스, 1961

(單位: 百萬弗)

A. 粗附加資產의 推計

1. 總流動負債 (B)	_____	1,425
2. 海外對從屬會社의 負債 (B)	_____	144
3. 從業員利潤分配 制度를 爲한 留保金 (B)	_____	26
4. 株式選拔 売買制度를 爲한 信用預受金 (B)	_____	22
5. 雜負債 (B)	_____	241

6. 諸準備金 (B)	25
7. 一般海外準備金 (B)	142
8. 社債 (3.25 % 1979年償還) (M)	197
9. 優先株 (5 弗) (M)	197
10. " (3.75 弗) (M)	83
11. 普通株 (M)	14,001
粗附加資産	<u>16,503</u>

B. 다른 事業体에 對한 請求權의 推計

1. 現金 (B)	405
2. 政府証券 (B)	1,291
3. 受取計定	987
4. 未・統合子会社	433
5. 其他証券投資 및 雜資産 (B)	18
6. 鉄剛供給会社에 對한 貸付・先払 및 株式 (B)	32
7. 金庫株式 (M)	98
8. 前払金 및 移延費用 (B)	73
다른 事業体에 對한 総請求權	<u>3,337</u>
純附加資産	<u>13,166</u>
純財産・特許權・營業權 (B)	3,092
在庫資産 (B)	1,800
純實質資産	<u>4,892</u>

註 (B - 帳簿價格, M - 市場價格)

<表2>

株式会社 신텍스, 1961

(单位:千弗)

A. 粗附加資産의 推計

1. 総流動負債 (B)	1,376
2. 6%付優先轉換株 (優先株 - 株当 10 個의 普通株株式은 去來되 지 않음 (推測市價)	1,645
3. 普通株	51,139
粗附加資産	<u>54,160</u>

B. 다른 事業体에 對한 請求權의 推計

1. 現金 (B)	847
2. 流通性証券 (B)	36
3. 受取計定 (B)	2,263
4. 前払金 (B)	101
5. 移延費用 (B)	775
다른 事業体에 對한 總請求權	<u>4,022</u>
純附加資産	<u>50,138</u>
純財産・特許權・營業權 (B)	2,563
在庫資産 (B)	3,677
純實質資産 (B)	<u>6,240</u>

<表 3 >

인 디아나 · 스탠더드 · 오일, 1961

(單位：千弗)

A. 粗附加資産의 推計	
1. 總流動負債 (B)	263,584
2. 어음 · 子会社株式 기타債權 (B)	206,523
3. 社債 (M)	16,021
4. 社債 (M)	203,250
5. 少数株 (B)	2,108
6. 普通株 (M)	1,824,995
粗附加資産	<u>2,516,481</u>
B. 다른 事業体에 對한 請求權의 推計	
1. 現金 (B)	133,024
2. 流通性証券	111,318
3. 受取計定 未受取어음 (B)	285,035
4. 前払金計定 (B)	9,497
5. 뉴저지 · 스탠더드 · 오일株式 (M)	80,724
다른 事業体에 對한 總請求權	<u>619,598</u>
純附加資金	<u>1,896,883</u>
純財産 (B)	2,136,922
在庫資産 (B)	225,635
純實質資産	<u>2,362,557</u>
原油貯藏品 (推測市價)	<u>2,618,000</u>
純實質資産 (貯藏品포함)	<u><u>4,980,557</u></u>

<表 4> 뉴욕 FNCB, 밋선開發株式会社
및 美国研究開發会社, 1961

(单位:千弗)

会 社	年 度	粗附加資産	純附加資産	純実質資産 (純財産・特 許權・營業權 在庫資産)
뉴-욕 FNCB	1961	9,888,750	473,500	115,793
밋선開發株式会社	"	128,395	- 38,302	0
美国研究開發会社	"	39,565	2,477	0

<表 1>은 「제네랄·모터스」의 1961年度 附加資産을 推計하
여 본 것이다. 市場價格에 依하는가 아니면 帳簿價格에 依
하는가 하는 評價上의 基準은 項目마다 括弧안에 表示되어
있다. 大部分의 項目은 帳簿價格에 基準을 두고 있다. 좀
더 高次的인 推計를 爲하여 이러한 諸項目은 資料의 利用이
可能하도록 調整될 수 있었다. 例를 들자면 受取計定은 貸
損充当金 比率을 導入함으로써 不良債權의 調整이 可能하였으
며 政府証券은 企業資産의 使用年數의 구성이 알려지고 있는
市場에서 評價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其他 投資項目등에서
도 適用될 수 있다. 이러한 方法은 「제네랄·모터스」의
경우 이러한 調整이 稀薄하며 또 關係項目이 純附加資産中에
차지하는 比率이 적으므로 너무 사소한 것만을 따지는 것이
될 듯 싶다. 그러나 모든 企業체가 이렇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理解를 돕기 위하여 株式價格과 社債價格은 年中을 통한 平均價로서 나타냈다. 普通으로는 주어진 날자의 時價를 應用하였다. 「제네랄·모터스」의 경우 純資産價額은 約 125億弗에 相當한다. 有形 내지 無形資産의 直接的인 粗評價 및 純評價를 爲한 資料를 얻을 수 없음에 따라 比較를 爲하여 純實質(非財務的)資産 (純財産 特許權 營業權 및 在庫資産)의 帳簿價格(約 49億弗)을 利用하였다. 成長株의 企業체에 있어서 純生産資産은 物理的 構築物 裝備 乃至 在庫資産의 減價後의 價値에 特許權이나 營業權과 같은 無形資産의 帳簿價格을 보낸 것의 倍를 上廻하고 있다.

1961年 株式會社 (신텍스) (表2)는 원래, 医薬品研究 機關이었다. 따라서 이 會社를 그 事業체의 市場價値가 研究開發活動과 關聯되는 "組織資本"의 一種으로서 거의 独占的으로 決定되는 極端的인 一例이다. 이 會社의 경우 純附加資産은 帳簿上의 純資産價値의 8倍를 上廻하고 있는 것이다.

고무 石炭 等の 自然資源資産을 所有하는 事業체에 있어서 우리의 資産評價方法은 이러한 減耗資本資源에 屬하는 資産까지를 包含한다.

<表5>은 「인디애나·스탠다드·오일·컴퍼니」의 純附加資産이 19億弗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純實質資産은 그 事業체의 原油 및 天然가스等 貯藏品을 包含하지 않고 約 24億弗의 帳簿價格을 나타낸다.

萬一 原油埋藏量의 推定額을 배럴당 1弗 (이는 市價의 $\frac{1}{3}$ 程度에도 未達이 지만) 이 라고 본다면 實質資產은 26億弗의 帳簿價格을 가지게 될 것이다. 實質資產의 帳簿價格과 事業體에 있어서 生産的 資產의 市場價格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隔差가 생기는 理由는 다음의 두가지로서 볼 수 있겠다.

即 ① 市場은 現在 埋藏中의 그 價値를 配賦當 1弗이라는 높은 價格을 갖게끔 單純하지 않으며 25年 乃至 30年後에는 거의 無用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 期間內에 石油은 이미 「에너지」의 主供給源의 位置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市場은 原油埋藏量의 價値를 銳利하게 割引하는 것이다.

② 1961年度 石油産業은 過剩供給에 의하여 株式의 下落勢를 보였으며 油類價格의 暴落을 가져왔다. 따라서 産業活動의 萎縮을 招來하였으며 이는 市場이 未來收益의 現在價値의 低落을 나타낼 때 豫想되는 것이었다.

<表4>은 뉴욕 FNLB의 株式會社組織의 및선開發公社(타이트·위트石油의 株式의 $\frac{1}{2}$ 以上을 所有 支配하고 있다)와 投資會社인 美國研究開發會社의 純附加資產을 나타낸다.

一般 商業銀行에서 볼 수 있듯이 純附加資產은 粗附加資產의 적은 部分(5%)에 不過하나 本質的으로는 純實質資產(銀行의 財産)을 上廻한다. 持株會社는 그러한 組織에 對한 請求權의 그 會社에 가지는 資產의 市場價格의 거의 30%나 낮게 割引됨에 따라 여기에 包含된다. 및선開發會社의 경우 純附加資產은 3,800百萬弗의 資本蚕食을 나타낸다. 이로부터 우리의

評價方法을 따르자면 當該會社는 만일 그 企業이 持株會社에 의하여 支配된다고 할 때 그 純資産에의 기여도는 輕微할 것이다. 그 理由는 무엇인가 한편 우리의 評價方法에 이러한 割引을 고려하여야만 하는가 여러가지 見解가 있겠으나 本人은 이러한 結果를 그들의 額面價額으로 取하고 싶다. 市場에서 볼 때 負의 資本價値는 企業體의 基本的 내지 有一한 目的이 經營上의 統制에 集中되므로 이러한 統制를 危機로부터 效果的으로 保護하기 爲하여 存在하는 企業組織에 둘러야만 한다. 結果는 따라서 嫁動中の 持株會社組織에 包含되는 「組織資本」의 評價額을 줄이는 것이 될 것이다. 萬一 이러한 評價가 正當한 것이 라면 純附加資産은 이러한 割引結果를 反映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投資會社에 이러한 評價方法을 導入할 때에도 同一한 現象을 볼 수 있다. 앞의 例에서 본 「美國研究開發會社」는 正의 純附加資産을 나타내고 있으나 大部分의 投資會社는 負의 價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美國研究開發會社는 資本을 必要로 하는 小規模의 將來性있는 會社를 發見하는 것에 名聲을 갖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技術은 正의 資本價値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反面에 이러한 投資會社는 零 내지 負의 純附加資産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

第3章 國富調査の方向

第3章 国富調査의 方向

第1節 日本의 国富調査

(一) 戰前(1945年前)의 調査

日本의 国富調査는 1905年 日本銀行에 依하여 最初로 實施되었다. 日本銀行의 第1回調査가 있기 以前에도 몇차례의 推計가 試圖되긴 하였다. 즉 1941年度부터 日本国内 혹은 外國의 經濟學者들의 손에 依하여 數回의 調査가 있었다. 그러나 1905年以前에 實施된 調査는 單純히 산발적인 資料를 概括적으로 蒐集推計한 데 不遇한 것이었다. 따라서 公式的이고 組織的인 調査로서는 1905年의 日本銀行調査가 日本国 国富調査의 最初로 看做되어야 할 것이다.

戰前의 日本国富調査는 아래와 같이 8回 實施되었다. 그러나 여덟번의 調査라 하여도 1930年과 1935年의 調査를 除外하고는 모두 既存資料에만 依拠한 推計로서 調査의 方法이 극히 未熟하였다. 1930, 1935年度의 調査에서는 ① 直接調査 및 調査表利用이 試圖됨으로써 既存資料의 補完이 이루어 졌고 ② 國民所得과의 關係를 重視하여 國民所得推計를 併行實施한 點等을 보아서는 戰後 調査의 한方向을 提示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그 當時의 國民所得推計方法도 生産接近方式에 依한 극히 原始的인 것으로서 国富調査上에 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은 事實이나 이때부터 国富와 國民所得과의 關係를 明確히 해보려는 努力이 었보였다는 點이 重要하다.

戰 前 の 日 本 国 富 調 査

回 数	実施年度(西紀)	統 計 作 成 処	国富推計評価額
1	1905年	日 本 銀 行	2,259千円
2	1910 "	"	2,943 "
3	1913 "	国 勢 院	3,204 "
4	1917 "	日 本 銀 行	4,570 "
5	1919 "	国 勢 院	8,608 "
6	1924 "	内 閣 統 計 局	10,234 "
7	1930 "	"	11,019 "
8	1935 "	"	12,434 "

資料； 1964年12月 日本經濟企劃庁刊

「1960年 国富調査報告」

現今의 日本国富調査는 日本政府当局의 統計機關에 依하여 体系化되어있으므로 戰前의 国富調査中 政府에서 実施하였던 것을 골라 考察하여 보기로 하며 이것은 戰後의 日本国富調査를 理解함에 보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1913年, 1919年 国勢院實施의 国富調査

日本政府가 最初로 實施한 国富調査는 1913年の 調査이긴 하나 이 調査는 그後에 實施된 1919年の 調査와 함께 1921

년에 추계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兩個年の 調査体系等に 對하여는 差異點이 없다. 當時에 國富를 調査하게된 動機는 國際關係上의 必要 즉 國際聯盟의 8大工業國 決定을 위한 參考資料로서 國際聯盟이 日本國에 依賴한데 緣由된 것이었다. 따라서 調査의 主眼은 國富의 增減, 國力의 強弱判斷에 두고 主로 美國의 國富調査를 參考하여 物的方法에 依한 推計를 하였다. 調査項目을 보면

- | | |
|-------------|----------------|
| 1. 土地 | 13. 橋梁 |
| 2. 鉞山 | 14. 農產品 |
| 3. 海湖川 및 港灣 | 15. 林產品 |
| 4. 樹木 | 16. 工產品 |
| 5. 建物 | 17. 鉞產品 |
| 6. 冢具 및 冢財 | 18. 水產品 |
| 7. 製造工業機械 | 19. 輸入品 |
| 8. 冢畜 및 冢禽 | 20. 金, 銀, 貨幣用金 |
| 9. 鐵道 및 軌道 | 21. 各省의 財產 |
| 10. 諸車 | 22. 皇室의 財產 |
| 11. 船舶 | 23. 其他 |
| 12. 水道 | 24. 對外債權債務等 |

24 個項目이었다.

國富로서 推計된 이들 資產中에는 各種의 性質이 混在되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自然物로서의 土地, 海湖川, 原始林埋藏鉞物等의 天然資源 즉 人間의 經濟活動의 產物이 아닌 資產과 둘째로 人間의 經濟活動에 依하여 生産된 資產으로서 建物, 工業用機械, 器具,

生産品, 家具財等の 再生産可能な 有形資産, 세 번째로 經濟活動의 蓄積이긴 하나 再生産이나 評價가 困難한 美術品, 圖書等の 資産, 네째로는 對外債權債務等이다.

한편 調查方法으로는 資産의 所有主体를 官公有와 私有로 2大別하여 資産項目別로 既存統計資料에 依하여 推計하였다. 推計方法을 概略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土地

土地에 있어서는 논, 밭 그리고 其他 種目別의 土地面積에 다 府県別 中等地 売買價格을 單位로 하여 推計하였고 売買價格이 不明한 것에 대하여서는 논, 밭等の 單價에 對한 倍率을 求하여 推計하였다.

② 建物

建物에 있어서는 一般住宅, 団体建物, 公有建物の 3種으로 나누어 推計하였다. 一般住宅을 例로 보면 家屋売買登記料로부터 戸当價格을 算出하여 그 2가지를 單位로 하여 거기에서 現在戶數를 곱하여 推計하였다.

③ 製造工業機械

製造工業機械에 있어서는 1913年末 工業会社払入資本金의 總額 814,304千円의 70%를 固定資産으로 假定하여 그 7割을 諸機械의 價額으로 假定하고 推計하였다.

즉 製造工業機械 = $\left[\frac{70}{100} (814,304) \times \frac{70}{100} \right]$ 千円이다.

④ 家具 및 家財

家具 및 家財에 있어서는 一般住宅價額의 50%를 家具

및 家財의 價額으로 보아 推計하였다.

以上の 推計方法에서 그 特徵을 找으면

- A) 既存統計에 全적으로 依存된 推計이므로 調査의 精度는 既存統計資料에 依하여 制約되었고
- B) 評價에 있어서는 個別의 評價基準과 独自の 方法의 二重方法을 採択한 點
- C) 既存統計가 없을 境遇는 間接的推計方法이 採用된 點等이라 생각된다.

2. 1924年의 国富調査

1924年 国富調査는 1922年末에 設어진 国勢院에 代置된 内閣統計局에 依하여 實施되었다. 調査의 目的은 역시 国富의 年次比較와 国富量을 明確히 把握하자는 靜態的目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24年의 調査는 1913年 1919年과 같이 外部的動機에 依한 實施가 아니고 日本国 自体의 必要에서 始作된 點이 相異하다.

이 調査의 資産種類, 推計方法에 있어서는 皇室財産을 除外한 以外에는 前回の 調査와 큰 變化는 없었다. 單只 利用된 諸統計資料自体가 前回보다 훨씬 整備된 것이 있으므로 国富調査 그 自体의 精度가 比較的 높아 졌다고 짐작된다.

3. 1930年 国富調査

1930年의 調査는 從來의 調査에 比하여 크게 發展되었

그 理由는 同調査가 우선 既存統計를 利用하면서 照會調査, 實地 調査를 併用하였고 다음으로 國富와 國民所得과의 關係를 究明하고 자 試圖한 點이다. 즉 國富調査와 併行하여 國民所得推計를 實施한 것이다. 비록 1930年調査에서는 調査目的이 明示되지 않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國富의 意義를 國民經濟體系 테두리안에서 求하자는 意圖가 움트기 始作한 것이다.

調査概要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調査範圍

1930年末 本土(日本國)의 物的財貨의 總額 및 對外 債權債務差額

나. 調査項目

- | | | |
|---------------|--|-----------------|
| 1. 土地 | 2. 鉞山 | 3. 港灣 및 運河 |
| 4. 橋梁 | 5. 樹木 | 6. 家畜 및 家禽 |
| 7. 建物 | 8. 工業用機械器具 | 9. 鐵道 및 軌道 |
| 10. 諸車 및 航空機 | 11. 船 舶 | 12. 電氣 및 瓦斯供給設備 |
| 13. 電信 및 電話設備 | 14. 水道設備 | |
| 15. 所藏財貨 | { 1. 家具家財 16. 其 他
2. 生產品
3. 鑄貨 및 金銀地金 17. 對外債權債務差額 | |

등의 17個項目으로 分類하였다.

다. 調査方法

17個項目에 對한 財貨의 價額은 既存資料, 照會調査, 實地 調査等에 依하여 官有, 公有, 私有 그리고 府縣別로 表示하여 調査

하였다. 但 国富各項目中 府県別価額이 不明한 것은 그 總額을 一定標準에 依拠 府県에 按分하였다. 그리고 価額의 算定標準은 原則的으로 減耗가 勘案된 再生産價格으로 하여 再生産価額에 依함이 不適當한 財貨에 對하여서는 時價로 하였다.

以上에서 본바 그 特徵으로는

① 国富의 資産分類가 若干 變更되어 있다. 그것은 海湖川이 빠진 反面 運河가 追加되었고 諾車項目에 航空機가 들었으며 電氣 및 瓦斯供給設備, 電信 및 電話設備가 獨立項目으로 各各 追加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從來調査에서는 獨立資産項目이었던 農產品, 林產品, 工產品, 鈦產品, 水產品等이 所藏財貨속에 한류음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中에서 流動資産的인 것들은 生産品으로 一括되었고 그外는 家具 및 家財, 金銀地金 및 鑄貨等으로 分類되었다.

② 評價方法도 從來보다 改善되었다. 그것은 價額의 算定標準을 原則的으로 減耗가 勘案된 再生産價格으로 못박아 두어 從來의 別個基準方法(統一的評價基準이 아닌)과는 方法上的 差異가 뚜렷하다. 물론 1930年調査方法인 統一的評價基準으로서의 再生産價額은 實際上 現今의 評價方法에 比하여 未備點이 많았음은 再言을 要치않는다.

4. 1935年 国富調査

1935年の 調査와 아무런 變化가 없는 것으로 結論된다. 구태어 差異點을 찾는다면 調査時點에 實地調査가 實施되었다는 點 뿐이다. 즉 1930年の 調査는 1932年에 實際로 調査하여

1930年末의 時價로 換算되어진 것에 對하여 1935年の 調査는 1935年12月31日이란 時點에 맞추어 實地調査를 行하였던 것이다.

(二) 戰後의 調査

1. 1955年 國富調査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난 1945年度以後 日本國은 3차례의 國富調査를 하였다.

1955年 1960年 그리고 最近의 1965年度の 調査가 그것인데 戰前調査와는 20余年이란 긴 間隔이 있는 것이다. 20余年의 中間에는 單只 國富調査에 準하는 것으로 1947年度에 實施된 "太平洋戰爭의 戰爭被害調査" 만이 있었다. 이같이 긴期間을 國富調査가 實施되지 않았던 理由는 經濟外的인 事件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停頓時期를 기다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1955年度 日本國富調査는 現今까지의 總11回調査中 規模面에서 가장 클 뿐더러 國富體系를 確然히 整備시킨 點에 있어 日本의 國富調査中 重要視되는 調査라 하겠다.

가. 調査의 目的

調査의 目的은 他年度の 國富調査와 같이 1955年末의 國富를 찾는 데 두고는 있지만 國富와 國民所得과의 關聯을 보다 깊이 考慮하여 國富를 調査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國民資本의 蓄積度 및 效率等 經濟分析에 利用될 資料에 着眼한 調査를 하였다.

나. 調査對象 및 範圍

調査對象은 國民經濟內的 再生産 가능한 有形資産과 對外資産 負債殘高라 規定하였다. 즉 耐用年數 1年以上의 有形資産에 限定하여 이를 有形固定資産과 流動資産으로 나누었다. 家計資産도 耐用年數 1年以上의 83 個品目으로 限定하였으며 이 83 個品目以外의 資産에 對하여는 그것이 耐用年數가 1年以上일지라도 對象에서는 除外하였다. 다음 無形資産에 있어서는 國內分에 對하여 相殺概念에서 全部 對象에서 除外하며 單只 對外無形資産만을 包含 시켰다.

從來의 調査와 比較하면 土地, 天然資源等과 美術品等 評價困難資産을 除外하고 있다. 뒤에서 言及될 것이지만 資産의 分類는 家計以外의 企業, 政府, 地方公共團體等이 所有하는 資産에 對한 分類로서 家計資産은 이와는 別途가 되어 있다. 家計資産은 아래와 같이 83 個品目を 選定하여 調査하였다.

① 住宅

② 家具類 (43 品目) ~ 主要品目으로는 장농類, 책상, 소파, 스투우브, 電氣洗濯機, 재봉틀, 라디오, 自轉車, 벽시계等

③ 衣類및裝身品 (32 品目) ~ 主要品目으로는 오-바코-트, 毛布, 손목시계, 구두 (靴) 等

④ 特殊品 (7 品目) ~ 應接셋트, 주단, 침대, 冷藏庫, 蓄音機, 피아노, 울건

다. 調査體系

居住者主義에 依한 所有主體別의 實態調査를 中心으로 하였다. 調査結果는 所有主體別, 産業別로 發表하였다. 既存統

計資料의 利用은 道路, 橋梁, 河川에만 머물었는데 바로 이 점이 從來調査의 既存資料에 對한 制約性을 改善한 點이다.

라. 評 價

資産의 評價는 再調達價格을 評價基準으로하여 稅法上의 耐用年數 그리고 國富調査를 爲하여 作成된 物價倍率이 利用된 統一的 客觀方法에 依하였다. 이 點도 從來調査가 資産을 個別的으로 評價한 것과 相異한 點이다. 評價方法을 간단히 보면 아래와 같다.

取得價格 × 物價倍率 = 再取得價格 (Gross Base)

再取得價格 × 殘價率 = 再調達價格 (Net ")

前章에서 考察되었지만 1955年의 資産評價로는 ①所有者別接近 ②特殊資産에 對한 個別接近 (物價倍率 耐用年數等 別途作成) ③倍率算出에서 原價倍率作成이 많았다. ④殘價率作成은 原則적으로 定率法에 依하였다. 등이 特徵으로 들 수 있다. 그러면 1955年 調査의 內容을 좀더 具體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所有者別調査

國富를 所有者別로 아래와 같이 나누었다.

- (1) 國家가 所有하는 資産
- (2) 公社 公庫等 政府關係機關所有의 資産
- (3) 法人 (非營利法人 特殊法人을 包含) 所有의 資産
- (4) 地方公共團體所有의 財産
- (5) 個人企業 (農林漁家包含) 所有의 資産
- (6) 其他 團體所有의 資産
- (7) 一般家計財産 그리고

(8) 对外資産

으로 나누었다.

㉔ 資産의 分類

(一) 有形固定資産

1. 建 物

A. 住 宅

B. 非住宅

C. 建物附属設備

2. 構築物

A. 交通施設

B. 治水利水施設

C. 其 他

3. 機械 및 裝置

A. 動力設備

B. 汽罐設備

C. 作業設備

D. 運搬設備

E. 其 他

4. 船 舶

A. 鋼 船

B. 木 船

C. 其 他

5. 車輛 및 運搬具

A. 鐵道車輛

B. 航空機

C. 自動車

D. 其他

6. 器具 및 備品

7. 建設假計定

8. 家畜 家禽

9. 其他

(二) 在庫資産

1. 原料

2. 在工品 및 半製品

3. 完成品 및 商品

4. 貯藏品

(三) 對外資産負債殘高의 差額 그리고 家計는 앞서 본 바와 같다.

◎ 産業分類

(一) 農業

(二) 林業 및 狩獵業

(三) 漁業 및 水産養殖業

(四) 鉦業

A. 金屬鉦業

B. 石炭鉦業

C. 其他鉦業

(五) 建設業

A. 綜合工事業

B. 職別工事業

(六) 製造業

A. 武器製造業

B. 食料品製造業

C. 煙草製造業

D. 紡織業 製造業

E. 衣服 및 裝身品製造業

F. 木材 및 木製品製造業 (家具除外)

G. 家具 및 裝備品製造業

H. 紙 및 類似品製造業

I. 印刷 出版 및 類似産業

J. 化学工業

K. 石油 및 石炭製品製造業

L. 고무製品製造業

M. 皮革 및 皮革製品製造業

N. 유리 및 土石製品製造業

O. 第1次金屬製造業

P. 金屬製品製造業 (機械 및 輸送用機械器具를 除外)

Q. 機械製造業 (電氣 機械器具除外)

R. 電氣機械器具製造業

S. 輪 및 機械器具製造業

T. 理化学機械 写真機 光学機械器具 및 時計
製造業

U. 其他製造業

(七) 都壳 및 小壳業

A. 都売業

B. 小売業

(八) 金融 및 保險業

A. 銀行 및 信託業

B. 中小商工金融業 및 庶民金融業

C. 証券業 및 商品取引業

D. 保險業

E. 其他金融 및 保險業

(九) 不動產業

(十) 運輸通信 및 其他 公益事業

A. 鐵道業 (地方鐵道 및 軌道業을 除外)

B. 地方鐵道業 및 軌道業

C. 道路旅客運送業 및 道路貨物運送業

D. 水運業

E. 倉庫業

F. 其他運輸業

G. 通信業

H. 光熱 및 動力供給業

I. 水道業 및 衛生業

(十一) 서비스業

等 11 個大分類를 하였다.

① 調査体系 (表参照)

㉔ 調査結果発表

中央集中 調査로서 아래表를 作成하였다.

1. 部門別 資産項目別 国富評價額
2. 産業別 資産項目別 企業資産評價額
3. 資本金階級別 資産項目別 法人資産評價額
4. 資産額階級別 資産項目別 法人 및 個人企業資産評價額
5. 各種項目別 組合에 다른 彙計資産評價額
6. 主要資産의 經過年數分布

2. 1960年国富調査

1955年の 国富調査後 日本国の 經濟는 政府의 經濟開發計劃을 上廻할 程度로 急速한 成長을 繼續하였다. 이같은 情勢에서 첫째 그와같은 經濟成長을 可能케한 要因이 어디에 있는가를 究明하고 둘째 經濟政策 經濟計劃 特히 長期經濟計劃을 檢討 樹立키 위하여 最近의 国富現在額 構成內容 및 變動을 把握하는 일이 크게 要請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곧 1960年 즉 戰後 第2回의 調査를 實施하게 된 動機였다.

1960年調査는 前回の 調査(1955年度)와 比較하여

① 調査規模가 半程度였고

② 国富의 概念 評價等은 1955年調査時의 方法을 그대로 踏襲한 것이었다. 그런데 1960年調査의 重点은 調査結果의 連續性에 두었다. 1960年調査의 目的을 參考로 보면 아래와 같다.

1960年国富調査는 國民經濟活動의 基礎인 1960年末現在의 国富現在額을 調査 推計하여 그 水準 및 構造를 明確히 합과 同時

에 1955年国富調査時点以後의 投資実績을 把握하고 国民所得計定上의 Flow인 投資와 国富調査에 의한 Stock間의 關係를 밝힘으로써 進捗中인 国民經濟計算整備에 寄与하고 또 經濟計劃樹立의 基礎資料를 提供함에 그 目的이 있었다.

따라서 1955年調査에서 対象資産이 되었던 家具耐久財等은 1960年調査에서는 經濟計劃樹立資料로서의 無用性を 認定하여 全部除外하였다. 1960年調査와 1955年調査의 相違点を 要約하면 아래表와 같다.

1955年 国 富 調 查 実 施 要 領

資料；1957年3月（日本国經濟企劃庁 刊「1955年国富調査の 方法」）

部門	主体	調査資産	本 調 査		補 正 調 査			備 考
			調査法	記入方法	目 的	調査法	記入方法	
公 共 団 体	国	公共物 一般資産 物品会計所定資産	間接推計 센서스調査 센서스調査	既存資料 自計申告 自計申告	(1) 評価方法의 補正 (2) 項目分類의 補正 (3) 調査時点의 修正	資産項目抽出	転写	
	地方	公共物 一般資産 物品会計所定資産	間接推計 標本抽出調査 標本抽出調査	既存資料 自計申告 自計申告	部落所有財産	標本抽出	自計	本調査 指定統計第89号 補正調査 報告調整法 行政管理庁承認番号第1514~1516号
企 業	国	固定資産 在庫資産	센서스調査 센서스調査	自計申告 自計申告	(1) 評価方法의 補正 (2) 項目分類의 補正 (3) 調査時点의 修正	資産項目抽出	転写	
	地方	固定資産 在庫資産	標本抽出調査 標本抽出調査	自計申告 自計申告				本調査 指定統計第89号
	法人	固定資産 在庫資産	標本抽出調査 標本抽出調査	自計申告 自計申告	(1) 調査에서 누락된 法人의 再調査 (2) 地域抽出에 의한 産業의 偏差의 修正	有為抽出	自計	本調査 指定統計第81号 補正調査 報告調整法 行政管理庁承認番号 1509号
	個人	固定資産 在庫資産	標本抽出調査 標本抽出調査	自計申告 自計申告	(1) 地域抽出에 의한 産業의 偏差의 修正 (2) 在庫資産의 調査時点修正	標本抽出	自計	本調査 指定統計第85号 補正調査 報告調整法 行政管理庁承認番号第1501~1513号
非営利	固定資産 在庫資産	法人 및 個人 企業이 同一	自計申告					法人 및 個人企業에 準함
家 計	耐久財 半耐久財	標本抽出調査	自計申告	83 指定品目과 全品目과의 相關發見	標本抽出	自計	本調査 指定統計第86号 補正調査 報告調整法 行政管理庁承認番号第1523~1524号	

1955年国富調査와 1960年国富調査의 相違点

(資料 ; 1964年12月 日本經濟企劃庁刊 "1960年国富調査報告")

	1955年 調 査			1960年 調 査		
	調査의 方法	資 産 의 範 圍	推 計 의 方 法	調査의 範圍	資 産 의 方 法	推 計 의 方 法
国	照会調査	1. 固有財産法所定の 財産 2. 物品會計規則所定の 財産 (武器等を 包含)	1. 固有財産台帳価額을 国富評價額에 調整 2. 取得時期別 計算	同	1. 同 2. 同 (物品管理法 所定の 財産) (武器等を 除外)	1. 原則적으로 固有財産台帳價格에 依함 2. 同
公共物	既存資料에 依함	道路 橋梁 河川 (市町村道 港灣을 除外)	物的推計에 依하여 再調達 價額을 求하고 이것을 代替 資産取扱을 하였음	關係各省에 照会하여 行政投資額의 資料를 얻어 推計	同 (市町村道 港灣을 包含)	1901年以後行政投資額 + 同期間災害 復旧費 - 同期間減失額
政府關係機關	照会調査	1. 有形固定資産 2. 在庫資産	1. 公社는 公社의 評價額을 調整 其他는 「法人」과 同一 2. 在庫資産은 実地在庫調査	同	同	1. (1955年国富 - 1955年資産의 廢棄分) + (1956年~1960年取得分) - (1956~1960年減失分) 2. 同
地方公共団体 및 公共組合	統計調査 (品目別調査)	1. 有形固定資産 2. 在庫資産	1. 取得時期別로 計算 2. 在庫資産은 実地在庫 調査	同 1956~1960年取得 減失分資産 項目別調査	同	1. (1955年国富 - 1955年 資産의 廢棄分) + (1956年 - 1960年取得 分) - (1956年 - 1960年減失分)
法人	統計調査 (品目別調査)	1. 有形固定資産 2. 在庫資産	1. 取得時期別로 計算 2. 在庫資産은 実地在庫 調査	同 1956~1960年取得 減失分資産 項目別調査	同	1. (1955年国富 - 1955年資産의 廢 棄分) + (1956年~1960年取得分) - (1956年 - 1960年減失分) 2. 同
個人	統計調査 (品目別調査)	1. 有形固定資産 2. 在庫資産 (一般世帯의 貸家를 包含)	1. 取得時期別로 計算 2. 在庫資産은 実地在庫 調査	同	同 (一般世帯의 貸 家를 包含치 않음)	繼續事業体分은 1960年資産과의 相 關關係로부터 一次式에 依한 推計, 新 設事業体分은 新設事業体의 資産率 (繼續分에 對한)에 依한 推計
家計	統計調査 (住宅 및 主要 家財 83品目)	1. 住 宅 2. 家 財	取得時期別로 計算	既存資料에 依함	住 宅	1955年住宅資産 + (1956年~1960 年新設) - (1956年~1960年減失)
对外純資産	既存資料에 依함	貨幣用金 保有外貨 貿易債 權 債務 对外借款 対日投資等	國際収支表에 依한 資産 負債差額	同	同	同

3. 1965年 国富調査

戰後 3번째가 되며 最近年の 調査가 되는 1965年の 調査는 国民經濟計算体系의 整備에 基本方針을 두었다. 1960年調査와의 相違点으로서 가장 큰 것은 ① 企業部門에서 調査範圍를 国内分에만 限定한 것. ② 非營利事業체를 除外한 것. ③ 그리고 調査 時点 및 期間이다.

가. 調査對象과 方法

調査對象資産의 範圍는 다음과 같은 經濟主体가 所有하는 国内에 있는 再生産可能한 有形固定資産에 限定하였다.

(1) 国营企業

A. 特別會計 (14 特別會計)

B. 政府關係機關 (13 機關)

C. 其他政府企業 (14 企業)

(2) 地方公營企業 (200 業体 ~ 標本抽出에 依함)

(3) 法人企業 (2,060 企業 ~ ")

(4) 個人企業 (1,770 企業 ~ ")

以上の 調査對象에 對하여 各企業의 自計申告方法에 따라 調査하였다.

나. 調査資産

調査資産은 耐用年數 1年以上 取得価額 1万円以上 (但 1964年 4月 以後의 法人企業資産은 3万円以上) 의 資産으로써

- (1) 建物 (企業이 所有하는 住宅을 包含)
- (2) 構築物
- (3) 機械 및 裝置
- (4) 船 舶
- (5) 車輛 및 運搬具
- (6) 工具, 器具 및 備品
- (7) 土地 造成, 改良 (土地自体에 對한 價額은 除外함)
- (8) 大動植物
- (9) 建設假計定等으로 分類하였다.

다. 調査時点 및 期間

調査는 1965年 12月 31日 現在에 行하지 않고 調査實施期間은 다음과 같다.

- (1) 國營企業 ; 1966年 10月 ~ 1967年 1月
- (2) 地方公營企業 ; 1966年 7月 15日 ~ 8月 15日
- (3) 法人企業 ; 資本金 1千萬元以上の法人 ~ 1966年 7月 15日 ~ 8月 15日
; 資本金 1千萬元未滿의 法人 ~ 1966年 8月 15日 ~ 9月 15日
- (4) 個人企業 ; 1966年 8月 15日 ~ 9月 15日

라. 其 他

그 밖에는 1960年의 調査와 거의 같은 方法 (評價), 分類 (産業, 項目) 를 하였는데 한가지 2種以上の 事業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當該企業의 主要事業이 所屬된 産業에 一括分類 (兼業部門의 分離를 않고) 하였다. 1960年과 1965年의 調査上 相違點은 다음 表와 같다.

1960年 国富調査와 1965年 国富調査의 相違点

(資料; 1967年 8月 日本国經濟企劃庁刊
"1965年 日本国富調査報告")

企 業	1960年 調 査			1965年 調 査		
	調査의 方法	資産의 範圍	推 計 의 方 法	調査의 方法	資産의 範圍	推 計 의 方 法
国营企業 (政府關係 機關包含)	照会調査	1. 国有財産所 定의 것 2. 物品管理法 所定의 것	台帳價額 1960年末)의 純増分 1955年末 을 平均經過年數에 따라 調整하고 1955年国富 結果에 加算	同	同	同 政府關係機關 은 取得時期別 로 計算
地方公營企 業 (指定統 計第89号)	統計調査	1. 有形固定資産 2. 在庫資産	1955年国富調査結果에 그 後의 純増(減) 分을 加(減) 算	同	有形固定 資産	取得時期別로 計算
法人企業 (指定統計 第81号)	統計調査	1. 有形固定資産 2. 在庫資産	同 上	同	同 上	同 上
個人企業 (指定統計 第85号)	統計調査	1. 有形固定資産 2. 在庫資産	取得時期別로 計算	同	同 上	同

※ 1965年 調査에서는 純資産額과 함께 總資産額에 對하여서도 推計하였다.

第 2 節 우리나라의 國富調査

1. 調査沿革

政府는 一次 및 二次經濟開發 五個年計劃을 樹立하여 修行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資本存在量 혹은 資本스톡(Capital Stock)에 관한 統計資料가 不充分한데 對하여 많은 隘路가 있었으므로 三次 五個年計劃樹立을 爲하여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資本存在量을 把握하는 國富調査의 必要性을 切感하였다.

그리하여 1966年初에 있었던 統計委員會委員懇談會에서 累次 이 調査를 實施하기 爲한 方案을 檢討하였는데 여기에서 우선 本調査의 龐大性에 비추어 몇 개의 調査機關이 共同으로 調査하기로 하고 各 調査機關에서 要員을 差出하여 實務者그룹을 構成하고 그 具體的인 調査企劃을 세우도록 하였다.

各 機關要員으로 構成된 實務者그룹은 67年 4月頃부터 日本을 비롯하여 先進諸國의 調査內容을 分析하고 本 調査를 政府部門, 法人部門, 個人事業體部門, 家計部門 및 對外資産部門으로 区分하여 各 調査機關의 業務分野와 關心에 따라 政府 및 對外資産은 韓國銀行 法人部門은 韓國産業銀行, 個人事業體部門은 中小企業銀行 그리고 家計部門은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調査하기로 方案을 세우고 67年 11月부터 調査統計局에 調査本部를 두어 各 分野別로 研究를 本格的으로 始作하였다.

그후 實務者그룹은 그간의 研究結果를 土台로 調査企劃을 세우고 이와 아울러 本 調査에 隨伴되는 諸問題點을 經濟企劃院長官에게

上申하여 裁可를 얻어 68年 4月 17日에 本 調査의 必要性和 協助를 強調하는 大統領 指示覺書가 下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本 調査를 爲한 諸般企劃業務가 활발히 진척되어 第 1次案으로 作成된 各 部門別 結果表案 調査表案 및 其他 調査要 領을 68年 7月부터 9월까지 實施된 3次에 걸친 試驗調査의 結果에 따라 數次 改善하였고 그해 10月에는 本 調査要員을 美国・ 日本・和蘭等に 派遣하여 研究케하는 한편 67年 12月 부터 美国 의 國富調査 專門家 Mrs. Alice H. Jones 가 6個月間 滯韓하면서 諮問한 事項을 바탕으로 하여 調査企劃을 細密하게 修正 補完하였 다.

그리하여 그 結果를 68年 11月 15日 開催된 第29次 統計委 員會에 上程 審議하였는데 여기에서 指定統計로 指定할 것이 議決 되어 68年 11月 21日 經濟企劃院告示 第51号에 의거 指定統計 第21号로 指定告示하였고 이 會議의 議決에 따라 各 部門別 調査 計劃을 統計委員會 國民計定分科會議에 上程하여 各各 다음과 같이 審議 檢討하였다.

即 69年 3月 18日 個人資産部門調査計劃을 審議하고 4月 4 日 政府資産部門, 5月 14日 法人資産部門 및 殘價率表部門 그리고 9月 11日 物價倍率表 作成計劃을 檢討하였는바 68年 10月 5日 開催된 分科會議에서 檢討한 家計資産部門調査計劃까지 합쳐서 全 分野에 걸친 調査計劃을 統計委員會의 面密한 審議過程을 거쳤다.

以上과 같이 審議 檢討된 內容에 따라 69年 1月부터 各 機關 이 事前調査를 實施하고 各 機關의 調査對象을 本部에 提出하여

69年 3월에 제반 調査計劃을 確定하고 同年 4월부터 各 機關이 實際調査를 시작하였다.

그후 本 調査結果는 各 機關에서 提出된 集計表를 가지고 70年 4月 28日부터 約 1個月間에 걸친 實務者會議에서 審議檢討하고 70年 6月 17日 및 70年 7月 27日 兩日 동안의 担当機關 課長會議와 70年 10月 19日에 開催된 調査担当의 審議를 거쳤고 對外純資産部門은 既存資料를 가지고 推計하여 70年 5月 12日 開催된 分科會議에서 檢討하였다.

그리하여 本 報告書는 最終적으로 71年 11月 27日 開催된 國民計定分科會議 및 71年 12月 15日에 開催된 第41次 統計委員會會議의 審議를 거쳐 公表하게 된 것이다.

2. 調査目的

이 調査의 目的은 國民經濟活動의 基礎가 되는 富의 存在量을 把握함으로써

- 가. 經濟的 國力の 把握
- 나. 國民所得과의 比較 및 國民計定の 補完
- 다. 資本蓄積의 計測
- 라. 國家資源의 國際比較
- 마. 富의 分配構成 等に 關한 基礎資料를 얻어 經濟開發計劃, 國家動員計劃 國土建設計劃 等 諸般 經濟施策 立案 및 分析의 資料로 利用하는데 있다.

3. 調査時点과 実査期間

調査時点과 実査期間은 아래와 같다.

部 門 別	調 査 時 点	実 査 期 間
政 府	1968.12.31	69. 4 ~ 9
法 人	1968.12.31	69. 7 ~ 10
個 人	1968.12.31	69. 7 ~ 9
家 計	1968.10.31	68.10 ~ 12
对 外	1968.12.31	70. 1 ~ 4

4. 調査根拠

統計法에 依拠한 指定統計調査(指定統計 第21号)로서 実施하였다.

5. 調査範圍

가. 調査地域의 範圍

調査基準時点 現在로 大韓民國의 主權이 現實的으로 行事되고 있는 全領域에 걸친다.

나. 調査客體의 範圍

調査의 対象客體는 調査地域內에 所在 또는 居住하는 政府, 地方自治團體 및 共公團體, 政府關係機關, 法人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그리고 一般家口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法令에 依하여 設立 되어 國內에 本社, 本部等의 事業活動의 場所의 本拠地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法人의 構成員인 社員, 株主, 組合員 等の 全部 또는 大部分이 外國人으로 構成되었더라도 혹은 資本 또는 出資의 전부 또는 大部分이 外國人の 出資에 依하여 運營 되더라도 調査對象에 包含시켰다.

또 國內에 事業活動의 本拠地를 가지고 있는 個人의 单独 또는 共同經營의 事業체는 그 經營者가 우리나라의 國籍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調査對象으로 하였다. 이와 反對로 우리나라의 國籍을 가진 사람이 設立한 会社일지라도 外國法人인 경우에는 調査對象에서 除外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의 外國에 對한 出資나 外國人の 우리나라에 對한 出資 등은 對外資産 또는 負債로서 별도 把握하였다.

한편 一般家口에 있어서는 國內에 居住하는 一般家口는 모두 調査對象의 客体로 對象範圍에 包含되나 外國의 外交官 領事官 등의 外國官吏나 駐韓 外國軍隊와 構成員의 家口는 調査對象에서 除外하였다.

이와는 反對로 우리나라의 大使館 銀行, 会社 등의 海外支店 및 事務所 등의 資産은 財産目録에 表示되어 있는 한 調査에 包含시켰다.

다. 調査對象資産의 範圍

調査對象資産은 우리나라의 住民이 所有하는 人間勞動의 結果이며 同時에 再生産可能한 有形固定資産 在庫資産 家計資産 및

對外純資産에 限定하였다. 따라서 埋藏物 土地·自然林 등 天然
資源은 勿論 藝術品 天然記念物 骨董品圖書 등과 같은 非經濟財와
無形資産은 除外하였다.

여기에서 調査對象이 되는 有形固定資産은 建物, 構築物, 機械 및
裝置, 船舶, 車輛 및 運搬具·工具·器具 및 備品 建設仮計定에 計
上되어 있는 未完成의 資産動物 植物 등이다. 또한 在庫資産은
原料 半製品 및 在工品 完製品 및 商品 貯藏品 등이며 有價証券
은 除外하였다. 그리고 國防部 所有資産中 防衛目的에 使用되는
資産은 調査對象에서 除外하였다. 따라서 國富資産은 다음과 같이
分類되었다.

國富資産의 分類

1. 有形固定資産
 11. 建物
 12. 構築物
 13. 機械 및 裝置
 14. 船舶
 15. 車輛 및 運搬具
 16. 工具 器具 및 備品
 17. 建設仮計定
 18. 動物
 19. 植物

2. 在庫資産

21. 原材料

22. 半製品 및 在工品

23. 完製品 및 商品

24. 貯藏品

3. 家計資産 (별개 이의의 것)

4. 對外純資産

4. 調査方法

가. 一般的인 調査方法

(1) 所有者主義 方法

原則적으로 調査되는 資産의 所有關係 (법적귀속관계) 를 基準으로 한 所有者 主義方法에 의하여 調査하였다. 그러나 이 基準에 의한 調査가 調査資産의 經濟的인 寄与 또는 소득창출과 무관한 調査가 되지 않도록 當該資産을 基礎로 하여 實質的인 經濟活動을 하는 使用者를 基準으로 한 使用者主義를 準用하였다.

그리고 本 調査에서는 所有主体를 다음과 같이 7 個로 区分하였다.

가) 一般政府

1) 中央政府

2) 地方自治團體 및 其他 公共團體

國家로 부터 그 存立目的이 賦與된 公法上的 法人 즉

地方自治団体が 가지고 있는 地方財政法上 公有財産 및 物品과 土地改良組合 水産業協同組合 등 公共組合 및 當造物法人이 所有하는 資産

(㉠) 政府企業

政府가 直接 經營하는 企業, 例를 들면 鐵道庁, 專売庁 等

(㉡) 政府管理企業

아래와 같은 重要政府出資企業이 所有하는 資産을 말한다.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 韓國住宅銀行, 大韓損害再保險公社, 韓國造幣公社, 韓國証券去來所, 朝興銀行, 商業銀行, 韓一銀行, 第一銀行, 서울銀行, 大韓石炭公社, 韓國電力株式會社, 大韓石油公社, 大韓鐵鉾開發株式會社, 大韓重石鉾業株式會社, 韓國鉾業製鍊公社,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仁川重工業株式會社, 大韓造船公社, 韓國機械工業株式會社, 忠州肥料株式會社, 大韓塩業株式會社, 大韓通運株式會社, 大韓海運公社, 大韓航空公社, 國際觀光公社, 大韓住宅公社, 大韓浚濬公社, 韓國水資源開發公社, 國定教科書株式會社,

(㉢) 法 人

商法上의 營利法人과 民法上의 財團法人 및 社團法人.

(㉣)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個人이 单独 또는 共同으로 經營하고 있는 商店 또는 工場 등의 個人企業 및 法人格을 갖지 않는 모든 團體.

(㉤) 一般家口

(㉥) 對外純資産

(2) 全數調查와 標本調查方法을 並用

1968年 國富統計調查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實施되어 標本調查하기 爲한 既存資料가 未備하기 때문에 原則적으로 全數調查方法에 의하였으나 調査對象이 龐大하므로 調査技術上 아래표와 같이 調査客體別로 全數調查와 標本調查方法을 並用하였다.

A. 一般政府	全數調查	自計式
B. 政府企業	"	"
C. 政府管理企業體	"	"
D. 法人資產	"	他計式
E.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資產	標本調查및全數調查	"
F. 一般家口	標本調查	"
G. 對外純資產	既存統計利用推計	既存資料

(3) 他計式 記入方法과 自計式 記入方法의 並用

위의 表와 같이 調査客體別로 他計式 記入方法과 自計式 記入方法을 並用하였다.

나. 有形固定資産과 調査方法

原則적으로 各 資産마다 個別的으로 再造達價格을 算出할 수 있도록 調査하였다.

(1) 調査資産의 單位

調査資産의 單位는 物理적으로 把握되는 1個의 財貨가 아니고 그 財貨에 對한 投下時期가 다른 各各의 資本支出을 各各 1個의 資産으로 생각하여 調査單位로 하였다. 그러나 同一한 種類 品質構造의 財貨에 對한 同一年次의 資本支出을 하였을 경우에는 一괄하여 記入하였다.

(2) 評價方法

(가) 原則

資産은 原則적으로 取得價格에 物價倍率과 經過年數에 따른 殘價率을 곱하여 산출하되 再取得價格(총국부)과 再調達價格(순국부)을 同時에 推計하였다.

여기에서 再取得價格(총국부)이라 함은 그 財貨를 1968年末에 새로이 取得(구입)하려면 얼마가 必要한가를 市場價格으로 評價한 것으로 말하자면 그 財貨의 新品價格이 된다. 즉 再取得價格 = (取得價格 × 物價倍率)로 表示된다.

再調達價格(순자산액)이라 함은 위의 再取得價格에 의한 總資産額中에서 減價償却充當金을 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 財

貨를 1968年末 現在の 現狀態로 購入하는 것으로 생각한 価額이다.

즉 再調達 価額 = (再取得 価額 × 殘 価率)이다. 따라서 有形固定資産의 評價를 위하여는 첫째로 取得 価額을 把握하고 둘째로 物價變動을 反映시켜줄 物價倍率表에 의하여 再取得 價格을 算出한 후 세째로 定率法에 의한 殘 価率에 의거 再取得 價格을 再調達 價格으로 다시 算出하였다. 따라서 有形固定資産 (순국부) = 取得 價格 × 物價倍率 × 殘 価率이 된다.

1) 物價倍率

國富調査에 의한 國富構成資産의 評價는 財産의 同一基準時點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資産의 取得時點과 評價時點間의 物價變動을 勘案하여 資産의 評價時點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必要하다.

物價倍率의 作成單位는 資産分類別로 細分하여 加급적 세분된 個別 物價倍率을 使用하였다.

이번 國富統計調査에서는 利用 가능한 價格資料와 集計能力 등의 制約을 考慮하여 첫째로 物價倍率表의 作成單位는 國富統計調査 資産分類와 符合시켰고 둘째로 物價倍率表의 時系列은 1910年 부터 1968년까지 每年次別로 作成하였다.

2) 殘 價 率

國富評價에서 말하는 殘 價率이란 $1 - \text{償却率}$ 을 말한다.

즉 $d = 1 - \sqrt[n]{\frac{s}{c}}$ 를 말한다. (주: $d = \text{償却率}$, $s = \text{殘存價格}$, $n = \text{耐用年數}$, $c = \text{固定資産 取得價額}$)

여기서의 償却率은 定率法에 의한 各資産의 減價償却率로서 이

償却率을 각 有形固定資産의 耐久年數別로 算出한 후 이에 対応한 그 資産의 經過年數에 따라 償却率을 1에서 公제한 것을 殘價率로서 定하였다.

殘價의 한도는 資産의 取得時點으로부터 經過年數가 到達한 때의 殘價率을 10%로 하고 經過年數가 耐用年數의 2倍에 도달한 때의 殘價率은 1%로 하였다

(나) 取得價額 등이 불명한 資産의 評價

取得時期와 取得價額中 取得價額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再取得價額에 經過年數에 따르는 殘價率을 곱하여 求하고 取得時期와 取得價格을 전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時價로 評價하였다.

이때 時價로 評價한 분에 대하여는 總國富와 純國富에 各各 包含시키고 이를 註記하였다.

(다) 耐用年數

耐用年數는 國富資産分類 및 耐用年數表에 明示된 것을 말하며 取得時期로부터의 그 經過年數가 耐用年數에 達할 때의 殘價率을 10%로 하며 耐用年數를 넘을 때에는 殘價率 1%가 될 때까지 同一率로 減價하는 것으로 하였다.

有形固定資産中 機械 및 裝置를 제외한 모든 資産(建物·構築物·車輛 및 運搬具·工具·器具 및 備品·建設仮計定·動物·植物 등)은 모든 産業에서 公同으로 保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한데 묶었고 機械 및 裝置는 다른 有形固定資産과는 그 分類方法이 다르므로 適用하는데 便利하도록 別途의 表를 만들었으며 특히 政府部門의 機械 및 裝置는 政府對外資産調査支部에서 別途로 定한 것에

의하였다.

(㉑) 建物評価方法

物価를 住居 非住居用別과 用途構造別로 구분하여 68年末 建物坪当基準價格表를 算出하여 各 部門別 調査結果의 審査資料로 하였고 家計部門調査中 住宅은 建物の 構造와 建物坪數만을 調査하고 이 基準表에 의거 住宅評価額을 算出하였다 (별표 1. 건물평가기준표 참조)

(㉒) 其 他

鉅業用資産에 대하여서는 生産庫比例法을 適用하는 등 再調査價格이나 時価로 接近하는데 困難 또는 不合理할 경우에 各 調査支部에서는 해당 評価方法을 本部와 協議한 후 採択하였다.

다. 在庫資産의 調査方法

(1) 調査資産의 單位

國富資産分類表의 在庫資産中分類(原材料 半製品 및 在工品 完製品 및 商品 貯蔵品)까지를 알 수 있도록 調査하였다.

(2) 評価方法

調査基準時点에서 실시한 在庫調査의 帳簿價格을 評価額으로 하였다. 그러나 調査時点現在 실지 在庫調査를 實施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째 調査基準時点에서 가장 가까운 時点에 行한 在庫調査의 帳簿價格을 國富로 評価하였으며 둘째 실지 在庫調査를 行한적이 없는 在庫는 調査基準時点의 帳簿上의 價格을 國富로 셈하고 셋째 帳簿가 없는 것은 調査機關의 客觀的인 基準에 의거 時価로써 在庫評価하였다.

라. 動植物의 調査方法

(1) 育成年數 및 數量

物價의 경우에는 離乳期로부터 現在까지의 育成年數를 調査하였고 植物에 있어서는 種苗의 경우에 播種으로 부터 現在 種苗에 이르기까지의 育成年數를 셈하고 成苗의 경우는 種苗로 부터 現在까지의 育成年數를 각각 区分하여 調査하였다.

그리고 數量은 動物에 있어서는 頭 또는 數 등으로 植物은 주 또는 속등으로서 記入하되 動物의 경우 現在 母乳로서만 生存이 가능한 것먹이는 어미의 숫자속에 包含시켜 어미와 함께 評價하였다.

(2) 評價方法

農水産部를 비롯한 關係機關의 協助를 얻어 68年 12月 31日 現在の 動植物評價基準表를 만들고 動植物의 育成年數別 數量을 調査하여 이 數量에 評價基準表에 의한 單位當 時價額을 승하여 評價하였다. (별표 2. 動植物評價基準表 參照)

7. 調査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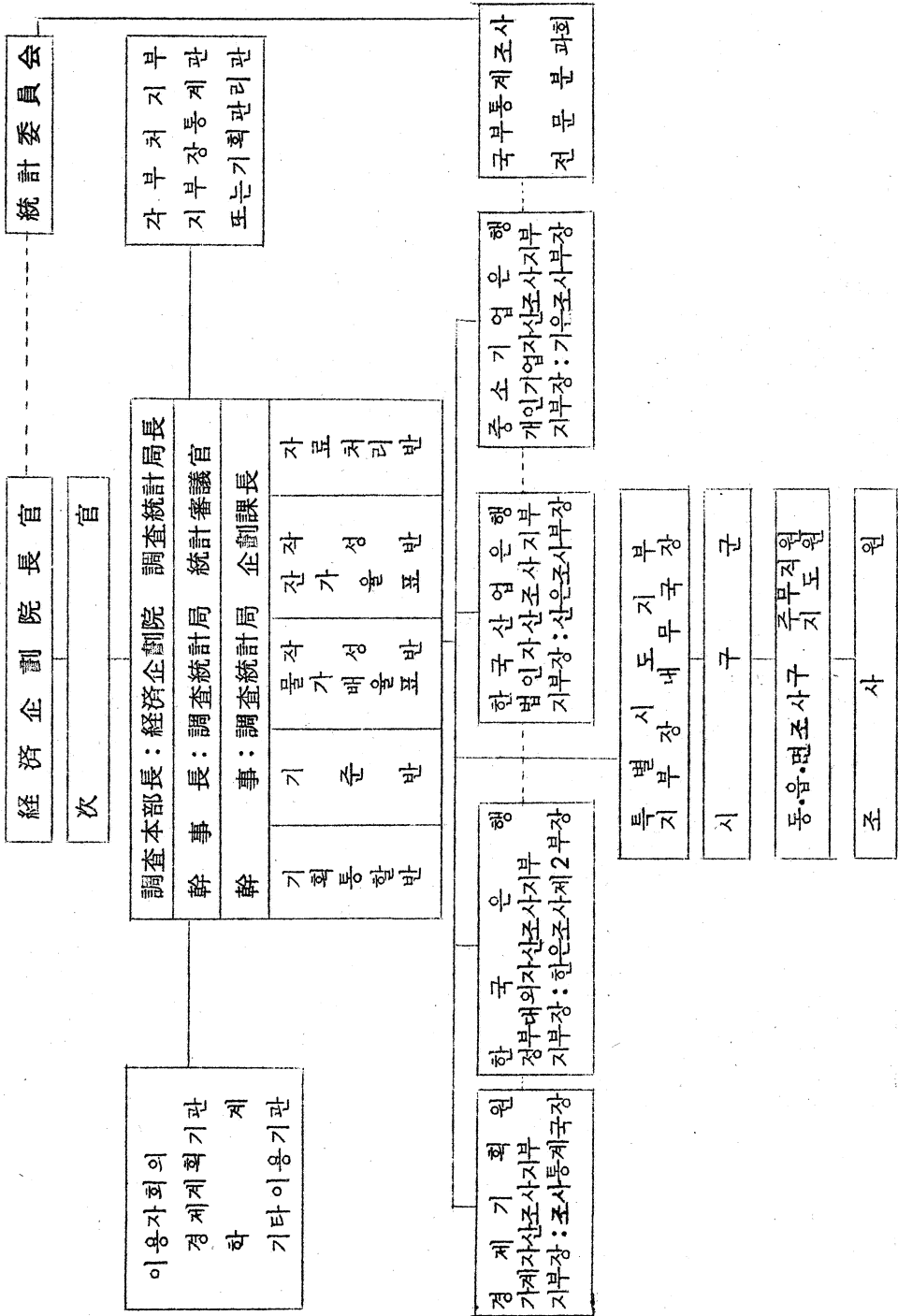
이번 國富統計調査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統計調査이고 또 調査의 龍大性과 技術上의 制限에 때문에 單一機關에서 실시하지 않고 國富統計調査 施行規則(經濟企劃院訓令 第50号 69.5.31 公布)에 의거 다음 表와 같은 調査機構를 形成하여 經濟企劃院,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 等 各 調査担当機關의 相互 有機的인 協助下에 실시되었다.

그리고 各 支部의 担当部門과 対象資産의 範圍를 具體적으로 보면 아래 表와 같다.

특히 農林水産業部門은 家計部門과 個人企業部門을 区分하기 어려우므로 別表 3 과 같이 個人企業部門에 속하는 部門을 명백히 하고 여기에 包括되지 않는 対象은 전부 家計部門에서 調査하였다.

(別表 3. 農林水産業의 個人企業部門 調査対象基準表 参照)

우리나라 富統計 調査 機構



조사담당기관	조사대상부문 및 자산		비고
	부문	자산	
1. 정부및매의 자산조사지부 (한국은행)	1. 일반정부	1. 국유재산법 소정의 자산	1. 정부관리기업체중 다음의 금융 기관이 소유하는 자산에 한한다 ①한국은행 ②한국산업은행 ③중소기업은행 ④국민은행 ⑤농업협동조합 ⑥한국의환은행 ⑦조흥은행 ⑧상업은행 ⑨한일은행 ⑩제일은행 ⑪서울은행 ⑫주택은행 ⑬지방은행
	(1)중앙정부	2. 불품관리법 소정의 자산	
	(2)지방자치 단체및기 타공공단 체	1.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 물품 2. 지방재정법상 공공단체 (토지개량조합 수산협 동조합등) 가 소유하는 자산 4. 영조물 별인이 소유하는자산	
	2. 정부기업 3. 정부관리 기업체		
	4. 사회간접 자본시설	1. 도로 2. 하천	

<p>2. 법인자산조 사지부 (한국 산업은행)</p>	<p>5. 대외순자 산</p> <p>1. 법 인</p>	<p>3. 향만 4. 기타의 사회간접자본시설</p> <p>1. 상법상의 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2.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설립 된 사단, 재단, 기타법인및조합 등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p>	<p>1. 정부태외자산지부에서 조사하는 정부관리기업체를 제외한 모든 정부관리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p>
<p>3. 개인기업자 산조사지부 (중소기업은 행)</p>	<p>1. 개인기업 2. 비법인단 체</p>	<p>1. 개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공장, 상점 등의 개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2. 법인격을 갖지않는 모든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p>	<p>1. 농업 (한국표준산업분류 01), 임업 및 벌목업 (" 02), 수렵업 (" 03) 어업및수산, 양식업 (" 04)에 있어서는 규모로 보아 기업성을 띤 업체가 소유하는 자산만을 조사한다. (부표 농업수산업의 개인기업부문을조사대상기준표 참조)</p>
<p>4. 가계자산조 사지부</p>	<p>1. 일반가구</p>	<p>1. 일반가구 (농가, 비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p>	<p>1. 가구가 보유하고있는 자산중 건물과 내용년수 1년이상의 내구재만을 조사대상자산으로한다. 2. 농업, 임업및벌목업, 수렵업, 어업및수산업및어업에 있어서는 규모로 보아, 일반농가가 소유하고있는 자산을조사한다. (별표 3 참조)</p>

8. 結果의 公表

가. 製表의 原則

(1) 基本的인 製表는 每 調査客体마다 資産項目別로 集計하고 調査客体의 屬性에 따라 国富를 構成하는 有形資産全体에 대하여 所有者別과 經濟部門別(共公, 企業, 非營利 및 家計部門)로 分類하였으며 企業部門은 다시 産業別로 分類하였다.

(2) 有形固定資産은 再取得價格(總国富)과 再調達價格(純国富)으로 区分하여 製表하였다.

(3) 産業分類는 68年 韓國標準産業分類(区分類)의 中分類別로 区分하고 調査되는 資産은 国富統計調査를 위한 国富資産分類表上의 小分類까지 集計 製表되도록 하였다.

(4) 地域別分類는 道別까지만 把握되도록 製表하였다.

나. 製表結果의 處理

(1) 調査結果値가 製表된 內容은 利用者の 便宜를 위하여 可能한 한 公表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各部門別 調査內容에 따라 結果表의 數가 다르다.

(2) 結果表의 數가 너무 尙大하기 때문에 總括報告書 內容에는 再調達價格(純国富)에 의한 結果表를 中心으로 収録하여 公表하고 再取得價格(總国富)의 結果는 各 支部別로 公表하도록 하였다.

9. 用語(資産項目)의 定義

가. 建物(11)

사람이 居住, 使用 등의 目的으로 建築한 것과 建物使用의

必要上 또는 使用을 便利하게 할 目的으로 建物에 부속된 設備를 말하며 住宅, 旅館 등의 住宅用 建物과 倉庫, 事務所 등 非住宅用 建物 및 電氣 照明施設 등 建物附屬設備로 分類한다.

住宅과 店舖를 한개의 建物에 包含하고 있는 竝用住宅이나 建物の 同一部門을 營業 및 生活場所로 混合 使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建物面積 및 使用程度에 따라 企業部門(非住居用建物) 또는 家計部門(住居用建物)으로 分類한다. 따라서 10坪의 建物에서 店舖 6坪 住居用 3坪 其他 1坪으로 利用하였을 경우에는 이 建物は 非住居用建物로 分類되며 個人病院에 設置된 에레베-타가 환자와 介구성원들의 混合利用일 경우 이 에레베-타는 企業部門으로 分類하는 것이다.

나. 構築物(12)

土地에 定着된 모든 土木設備 또는 工作物을 말한다. 즉 發展 및 送配電施設, 軌道, 橋樞 등의 交通施設 修理 및 給水施設 등이다.

따라서 停車場의 建物이나 倉庫 등은 建物로 家畜飼育場은 構築物로 港灣같은 構築物の 효용을 위한 기중기설비 같은 것은 機械 및 裝置로 分類된다.

다. 船舶(14)

사람 또는 物建을 싣고 물에서 이것을 運搬하기에 適合한 構造物을 말한다. 보통 必要한 範圍의 附屬物을 包含한다. 여기에는 鋼船 木船뿐만 아니라 「모터보트」등도 포함한다.

라. 車輛 및 運搬具 (15)

移動하는 모든 運搬機關 및 運搬用具를 말한다. 예컨대 自動車, 汽車, 航空機, 리야카 등이다. 그러나 일정한 場所에 고정된 運搬設備는 機械裝置에 分類된다.

마. 工具, 器具 및 備品

工具란 活字 등과 같이 機械 또는 手工에 의하여 直接 物件을 제작 또는 가공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用具를 말하고, 器具 및 備品은 工具 이외의 用品을 예를 들자면 「라디오」, 사무용 탁자, 시계, 도량형기기, 간판, 이용기기, 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바. 建設假計定 (17)

建設假計定에 計上되어 있는 未完成의 資産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計上하였다.

(1) 直轄工事 또는 自家製造에 의하여 取得한 資産

(2) 製作, 建設을 제 3자에 發注하고 그에 따르는 原材料, 資材 등을 현물지급한 경우에 그 원재료 등의 대가가 建設假計定에 計上되어 있을때 그 對象額

(3) 인수가 완료되었으나 편의상 建設假計定에 두고 있는 경우

사. 動物 (18)

農業使役用, 小運搬用, 繁殖用, 競走用 등에 사용할 目的으로 飼育하는 동물을 總稱한다. 그러나 愛玩用의 동물은 포함되지 않으나 牛馬車用의 畜絹, 방목장의 방견 등은 포함한다.

아. 植物 (19)

農業用, 繁殖用 등의 果樹 및 植物 예컨대 사과나무, 배나무

홍차 등이며 1年生의 草木, 2년에 걸치는 임모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庭園, 宅地 등에 散在하여 재식되고 있는 果樹는 설령 收益이 있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자. 原材料 (21)

工業, 鎭業 등 기타 商業 이외의 事業을 영위하는 事業체가 그 製品의 生産에 投入할 目的으로 외부에서 構入한 모든 소재적 재화를 말하며 大部分의 경우 生産의 第1要素가 되고 製品의 基本체가 되는 것이다.

차. 半製品 및 在工品 (22)

半製品은 최종제품 또는 部分品の 生産을 위하여 제공 또는 가공중이지만 그 판매가 가능한 것을 말하며 在工品은 製造 및 가공중인 것으로서 商品으로서의 販売가 不可能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청부공사중의 建物 등은 여기에 포함된다.

카. 完製品 및 商品 (23)

完製品은 販売를 위하여 製造加工이 完了되어 工場에 있는 製品을 말하며 商品은 商業 등 판매업일 경우에 있어서 그 事業체가 보유중인 製品을 말한다. 販売를 위하여 他人으로부터 수탁 받은 상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타. 貯藏品 (24)

燃料 事務用品 짐꾸리기 발송재료 配達運搬具用品 廣告用品을 構入한 경우 그것이 상당한 分量으로 貯藏해 두었을때 이를 調査 対象에 포함시킨 것이다.

파. 對外純資産 (4)

우리나라가 所有하고 있는 貨幣金融 保有外貨 貿易債券 및 對外投資 등의 對外資産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外國의 投資 및 賠償 등의 對外負債를 차감한 差額을 對外純資産이라 통칭되며 이번 國富調査에서는 調査基準時点 現在 確定되었던 債權債務에서 產出하였다.

別表 1.

建 物 評 価 基 準 表

1. 1968年 建物坪当 基準価格表 (住居, 非住居用別)

住居用建物 45,624 원

非住居用建物 36,895 원

2. 1968年 建物坪当 基準価格表 (用途構造別)

(單位: 원)

用 途 / 工事構造別	철근철골조	연와석조	목 조	농 가	기 타
주 택 건 물	48,465	37,941	39,648	19,380	39,548
산업주거겸용건물	34,684	26,861	28,427	-	28,425
사 무 소 건 물	54,802	43,155	24,630	-	24,610
점 포 건 물	28,715	27,216	25,678	-	25,593
시 장 건 물	28,689	27,130	25,942	-	23,903
공장및작업장건물	40,016	36,603	28,734	-	28,717
창 고 건 물	41,560	23,732	23,058	-	23,115
차 고 건 물	41,092	23,946	23,448	-	22,593
여관숙박소건물	62,878	57,628	52,411	-	52,719
육 장 건 물	43,888	39,921	36,917	-	36,426
극장·영화관건물	57,794	52,952	-	-	-
요리·음식점건물	62,766	53,037	52,901	-	52,901
공 무 용 건 물	48,746	40,568	35,417	-	34,989
문 교 용 건 물	34,674	27,643	23,360	-	23,485
병원진료소건물	67,693	39,558	37,335	-	38,105
교 회 건 물	50,421	42,758	40,059	-	39,906
기타·산업용건물	47,826	47,828	44,485	-	50,450

3. 建物評價基準表 作成方法

가. 建物の 分類는 用途 및 構造別로 69個 分類(1966年 산업 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작업부문에 따라서)하고 이를 다시 住居 非住居로 大別하였음.

나. 坪当價格의 算出過程

(가) 69個의 建物別로 1966年 産業連関表에 의거 投入比率을 算出하였음.

(나) 投入比率算出에 使用된 投入項目은 9個의 項目으로 物價倍率에 使用될 價格指數 算出 可能한 項目임.

(다) 各 投入項目의 比率에다 物價倍率에 사용될 1966 ~ 1968年까지의 價格指數를 곱하여 建物の 價格 變動率을 算出하였음.

(라) 92個의 建設業体에서 蒐集한 1966年度 建物建築 坪当工事費 調査票를 利用하여 1966年 建物別 坪当價格을 算出하고 이에 價格變動率을 곱하여 1968年 現在의 建物 坪当價格을 算出하였음.

(마) 69個의 建物을 다시 住居 非住居로 大別하여 單純 算術 平均에 의한 坪当價格을 算出하였음.

別表 2

農業用 動植物 評價基準表

1. 要 約

農業用 動物 및 植物資產을 評價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有形固定資產처럼 取得價格과 物價倍率을 利用하여 評價額을 算出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動物 및 植物의 評價는 原則적으로 調査票에 記入된 再取得價格(時價)을 그대로 評價額으로 할 수 밖에 없으나 實際로 調査票에 再取得價格이 記入되지 않은 境遇에 農水産部에서 定한 動物 및 植物의 評價基準表를 利用하여 評價額을 算出하였다.

2. 植物資產 評價方法

가. 1968 年末 再取得價格(時價)을 評價額으로 하였다. 但, 1968 年 중에 取得하였을 때는 그 取得價格을 評價額으로 하였다. 나. 調査票에 再取得價格(時價)이 記入되어 있지 않은 境遇에는 農水産部에서 定한 植物資產評價基準表에 의하여 다음 方法으로 處理하였다.

1) 樹齡이 育成年數以下(幼木)인 境遇는 該當 育成年數의 數値를 그대로 評價額으로 한다.

2) 樹齡이 育成年數를 超過(用役期間中)한 境遇에는 다음 公式에 依하여 用役年數를 算出하여 該當用役年數의 數値를 그대로 評價額으로 한다.

$$\text{樹齡 또는 經過年數} - \text{育成年數} = \text{用役年數}$$

3) 前項에서 算出한 用役年數가 耐用年數를 超過한 境遇에는

耐用年數와 經過年數로부터 殘價率을 1968年 國富統計調査用 定率法 殘價率表에서 찾아서 다음 公式을 適用하여 評價額을 算出한다.

成園 段步當育成價×成園面積(段步)×殘價率=評價額

단 이때에 調査票의 數量이 株數로 記入되어 있을 때에는 1株當 段步數×株數에 依하여 段步로 換算하여 適用한다.

4) 樹齡이 不明인 境遇에는 經過年數를 그대로 樹齡으로 한다. 取得時期도 記入 漏落된 境遇에는 成木으로 看做하여 育成年次의 最後에 있는 數值를 評價額으로 한다.

다. 植物資產評價基準表에 記載되어 있지 않은 種類에 對해서는 時價額으로 評價하였다.

3. 動物資產評價方法

가. 1968年末 再取得價格(時價)을 評價額으로 하였다. 단, 1968年中에 取得하였을 境遇는 그 取得價額을 評價額으로 하였다.

나. 再取得價格(時價)이 記入 漏落된 境遇에는 農水産部에서 定한 動物資產評價基準表에 依하여 處理하였다. 이 境遇에는 動物의 種類, 年齡 등과 調査票에 記載된 所在地事項을 基礎로 하여 適用 標準을 決定하였다.

다. 調査票에 記入된 年齡이 評價基準에 記載된 年齡을 超過할 때는 年齡의 數值를 適用하였다.

라. 調査票에 再取得價格(時價)이 記入 漏落된 境遇에는 다음 要領에 依하여 處理하였다.

1) 乳牛 및 韓牛는 別途의 評價基準을 適用하되 암수의 區別이 不明인 경우는 수소(牝)의 數値를 適用한다.

2) 산양 其他 動物은 年齡이 區別없이 市道別 評價基準에 依하여 處理한다.

마. 前項에 관하여 調査票에 記載된 事項이 不明인 境遇나 動物 評價基準表에 記載되어 있지 않은 動物에 對해서는 時價額으로 評價하였다.

段步当株数		12	100	24	36	24	50	360	1,200	720	450	310	310	段步当株数			
1株当段步数		0.083	0.01	0.042	0.028	0.042	0.02	0.003	0.0008	0.0014	0.0022	0.0032	0.0032	1株当段步数			
取得時期	經過年数	耐用年数	25	35	20	35	12	10	8	35	15	15	15	15	耐用年数	經過年数	取得時期
		定率	8.8%	6.4%	10.9%	6.4%	17.5%	20.6%	26.0%	6.4%	14.2%	14.2%	14.2%	14.2%			
		成園段步当育成価	93,610	139,227	112,591	72,482	35,905	43,338	44,188	18,450	25,386	28,672	23,419	22,524			
	1	1년	93,610	139,227	112,591	72,482	35,905	43,338	44,188	18,450	25,386	28,672	23,419	22,524	1년	1	
	2	2	85,372	130,316	100,319	67,842	29,622	34,410	33,141	17,269	21,781	24,601	20,094	19,326	2	2	
	3	3	77,884	122,102	89,397	63,567	24,451	27,346	24,834	16,181	18,684	21,103	17,236	16,577	3	3	
64	4	4	71,050	114,305	79,714	59,508	20,179	21,712	18,647	15,147	16,019	18,092	14,777	14,213	4	4	64
63	5	5	64,778	107,066	71,045	55,739	16,660	17,032	13,963	14,188	13,734	15,512	12,670	12,185	5	5	63
62	6	6	59,068	100,243	63,276	52,187	13,921	13,695	10,473	13,284	11,779	13,304	10,866	10,451	6	6	62
61	7	7	53,826	93,839	56,408	48,853	11,346	10,878	7,865	12,435	10,104	11,411	9,321	8,965	7	7	61
60	8	8	49,145	87,852	50,328	45,736	9,371	8,668	5,877	11,642	8,657	9,777	7,986	7,681	8	8	60
59	9	9	44,839	82,283	44,811	42,837	7,720	6,891	4,419	10,904	7,438	8,401	6,862	6,600	9	9	59
58	10	10	40,908	76,993	39,970	40,083	6,391	5,461		10,203	6,372	7,197	5,878	5,654	10	10	58
57	11	11	37,257	72,120	35,579	37,546	5,278	4,334		9,557	5,458	6,164	5,035	4,843	11	11	57
56	12	12	33,980	67,525	31,751	35,154	4,345			8,948	4,696	5,304	4,333	4,167	12	12	56
55	13	13	30,985	63,209	28,260	32,907	3,591			8,376	4,036	4,559	3,724	3,581	13	13	55
54	14	14	28,270	59,171	25,220	30,805				7,841	3,452	3,899	3,185	3,063	14	14	54
53	15	15	25,743	55,412	22,518	28,848				7,343	2,970	3,355	2,740	2,635	15	15	53
52	16	16	23,496	51,932	20,041	27,036				6,882	2,539	2,867	2,342	2,252	16	16	52
51	17	17	21,437	48,590	17,902	25,296				6,439					17	17	51
50	18	18	19,564	45,527	15,875	23,702				6,033					18	18	50
49	19	19	17,880	43,021	14,186	22,397				5,701					19	19	49
48	20	20	16,288	39,958	12,610	20,802				5,295					20	20	48
47	21	21	14,790	37,313	11,259	19,425				4,945					21	21	47
46	22	22	13,573	34,807		18,121				4,613					22	22	46
45	23	23	12,357	32,718		17,033				4,336					23	23	45
44	24	24	11,233	30,630		15,946				4,059					24	24	44
43	25	25	10,297	28,681		14,931				3,801					25	25	43
42	26	26	9,361	26,871		13,989				3,561					26	26	42
41	27	27		25,200		13,119				3,339					27	27	41
40	28	28		23,529		12,249				3,118					28	28	40
39	29	29		22,137		11,525				2,934					29	29	39
38	30	30		20,606		10,727				2,731					30	30	38
37	31	31		19,353		10,075				2,565					31	31	37
36	32	32		18,100		9,423				2,399					32	32	36
35	33	33		16,986		8,843				2,251					33	33	35
34	34	34		15,872		8,263				2,108					34	34	34
33	35	35		14,897		7,756				1,974					35	35	33
				13,923		7,248				1,845							

乳牛 및 漢牛의 評價基準表

(單位: 원)

종류	시도명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	당세	65,700	75,600	62,400	62,400	65,700	65,700	57,500	57,500	59,100	59,100	57,500
	2	106,000	121,900	100,700	100,700	106,000	106,000	92,800	92,800	95,400	95,400	92,800
	3	138,000	158,700	131,100	131,100	138,000	138,000	120,800	120,800	124,200	124,200	120,800
	4	161,800	186,100	153,700	153,700	161,800	161,800	141,600	141,600	145,700	145,700	141,600
	5	177,400	204,000	168,500	168,500	177,400	177,400	155,200	155,200	156,000	156,000	155,200
	6	200,000	230,000	190,000	190,000	200,000	200,000	175,000	175,000	180,000	180,000	175,000
	7	183,700	211,300	174,600	174,600	183,700	183,700	160,800	160,800	165,400	165,400	160,800
	8	174,600	200,700	165,800	165,800	174,600	174,600	152,700	152,700	157,100	157,100	152,700
	9	157,100	180,700	149,200	149,200	157,100	157,100	137,500	137,500	141,400	141,400	137,500
	10	131,400	151,200	124,900	124,900	131,400	131,400	115,000	115,000	118,300	118,300	115,000
	11	97,500	112,100	92,600	92,600	97,500	97,500	85,300	85,300	87,800	87,800	85,300
한	당세	24,000	23,000	25,000	25,000	25,000	20,000	22,000	22,000	32,000	30,000	22,000
	2	52,500	42,700	52,500	45,900	42,700	55,800	45,700	45,900	47,900	44,600	45,900
	3	71,200	57,900	71,200	62,300	57,900	75,700	62,300	62,300	65,000	60,500	62,300
	4	80,000	65,000	80,000	70,000	65,000	85,000	70,000	70,000	73,000	70,500	70,000
	5	80,000	65,000	80,000	70,000	65,000	85,000	70,000	70,000	73,000	70,500	70,000
	6	80,000	65,000	80,000	70,000	65,000	85,000	70,000	70,000	73,000	70,500	70,000
	7	80,000	65,000	80,000	70,000	65,000	85,000	70,000	70,000	73,000	70,500	70,000
	8	80,000	65,000	80,000	70,000	65,000	85,000	70,000	70,000	73,000	70,500	70,000
	9	78,900	64,100	78,900	69,000	64,100	83,800	69,000	69,000	72,000	67,000	69,000
	10	67,800	55,100	67,800	59,300	55,100	72,000	59,300	59,300	61,900	57,600	59,300
	우	당세	24,000	23,000	25,000	25,000	25,000	20,000	22,000	22,000	32,000	30,000
2		60,000	55,800	64,300	57,100	59,100	59,100	52,500	54,500	50,500	55,800	54,500
3		81,300	75,700	87,200	77,500	80,100	80,100	71,200	73,900	68,600	75,700	73,900
4		91,350	85,000	98,000	87,000	90,000	90,000	80,000	83,000	77,000	85,000	83,000
5		91,350	85,000	98,000	87,000	90,000	90,000	80,000	83,000	77,000	85,000	83,000
6		91,350	85,000	98,000	87,000	90,000	90,000	80,000	83,000	77,000	85,000	83,000
7		91,350	85,000	98,000	87,000	90,000	90,000	80,000	83,000	77,000	85,000	83,000
8		91,350	85,000	98,000	87,000	90,000	90,000	80,000	83,000	77,000	85,000	83,000
9		90,000	83,800	96,600	85,800	88,700	88,700	78,900	81,800	75,900	83,800	81,800
10		77,400	72,000	83,000	73,700	76,300	76,300	67,000	70,300	65,200	72,000	70,300

산양 및 기타가축의 평가기준표

시도명 동물명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첫 산양	23,000	13,000	7,000	10,000	10,000	25,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소	3,000	7,500	4,500	4,500	5,500	3,500	3,500	3,500	4,000	5,000	3,500
돼지	4,500	4,000	6,000	5,000	5,000	5,000	4,500	2,800	3,000	4,000	2,800
	13,328	11,728	14,000	12,800	14,928	15,660	12,500	13,400	13,860	13,860	13,400
타 (큰타)	430	520	500	400	350	350	600	500	400	400	500
오 리	360	450	300	300	200	180	300	300	300	300	300
토끼	100	60	100	100	60	100	50	70	50	50	70
	300	260	200	200	300	150	400	200	300	250	200

<別表 3 >

農林水産業의 個人企業部門 調査對象基準表

Code No.	業 種	對 象 範 圍	備 考
012	원 에 농 업	고등채소를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협특수조합과자료
0121	채 소 농 업	화초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수산부특작과과자료
0122	화 초 원 에	파수육묘업 상진재배업 채종생산업	※한국상묘협회자료
0123	종 묘 원 에	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한국종묘생산업협회자료
0124	고 등 원 에	은실재배업 벼섯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수산부특작과과자료 ※산림청육림과자료
013	투용작물농업		
0131	유지작물재배업	유지작물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수산부특작과과
0132	섬유작물재배업	섬유작물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수산부특작과과
0133	약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부여삼업조합
0134	기호작물재배업	연초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염연초생산업연합회
0139	기타투용작물재배업	사탕수수, 사탕무우, 완초「호프(hop)」	※농협특수조합과과

		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014	과수및수원농업		
0141	과수농업	과수 100주이상을 소유하고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협특수조합과
0142	관상수재배업	관상수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대관상수협회
0143	수원농업	고리머틀, 딱, 차재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수산부특수조합과 ※산림청조립과
015	축산업		
0151	가축생산업	한우 5두이상 } 이를 주업으로 경영 양돈 30두이상 } 하는자	※농수산부축산과 (기업양축가)
0152	가수생산업	양계 1,000수이상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수산부축산과 (기업양축가)
0153	나농업	유우 5두이상 } 이를 주업으로 유산양 30두이상 } 경영하는자	※농수산부축산과 (기업양축가)
0154	양봉업	양봉 50군이상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협특수조합과
0155	종축및부란업	종축및부란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농수산부축산과

Code No.	업종	대상범위	비고
016	잠업	양잠업, 감종생산업물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 농수산부 잠업과
0160	잠업		※ 한국잠종협회
017	농업부대「서어비스」업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 농협특수조합과
0170	농업부대「서어비스」업		※ 농협가축인공수정소
021	임업	조림용육묘업, 죽림 } 이를 주업으로 육성업, 조림업 } 경영하는자	※ 한국양묘협회
0210	임업		※ 산림청 육림과
0221	별목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 자	※ 산림청 조림과
0222	탄	"	※ " "
0230	임업부대「서어비스」업	"	※ " "
03	수렵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 자	
04	어업및 수산양식업	개인영업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 각지방세무서

第 4 章 國 富 의 利 用

第 4 章 国富의 利用

第 1 節 国富利用의 方向

一国之 国富라 함은 그 나라에 있어서 生産에 寄与할 수 있는 모든 資源을 가르킨다. 즉 自然의 産物이 되었든 아니면 人間勞動의 結果가 되었든 간에 人間이 必要로 하는 財貨와 「서어비스」의 生産에 寄与할 수 있는 經濟的 여건 (environment) 의 한 側面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所得을 낳는다는 意味에서 国富는 国民所得의 「플로우」(flow) 概念과는 对比되어 그 자체가 하나의 基金 (fund) 내지는 「스톡크」(stock) 를 이루게 되며 이는 또한 자체의 使用에 의하여서만 生産이 가능한 하나의 生産物이기도 하다. 生産은 国富의 利用에 의해서 비로소 可能하여 진다.

따라서 国富의 純變化를 알기 위하여서는 粗投資로부터 国富의 磨滅 (the using up of Wealth) 내지 資本消費 (Capital Consumption) 分을 差減하여야만 하며 国富의 所有에서 발생하는 純所得을 推計하기 위하여서도 粗国民所得으로부터 이를 除外하여야만 한다.

純所得 및 生産에 寄与하고 있는 모든 形態의 国富가 가지는 一般的이며 主要한 特性이란 바로 国富가 價值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資産 (Capital Assets) 의 價值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将来에 있어서 기대되는 豫想純所得을 現在價值로 割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勿論 所得은 그 貨幣的 性格만이 아니라 直接的이며 心理的인 特性도 갖는다.

1. 国富의 物理的 諸形態

国富는 人間勞動의 形態가 되었든 아니었든 간에 여러가지 形態의 有形資産과 無形의 諸資産 그리고 金錢上의 貸借關係까지를 包含한다. 瀑布에서 落下하는 물방울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바뀌어 지듯이 国富의 物理的 構成内容 역시 變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전히 基金 그 자체는 生産力의 基礎로서 存在한다.

여기에서 広義의 国富概念을 그 物理的인 性質에 따라 觀察하는 것이 普通이며 또한 有益하다.

기본적인 区分은 人的 富(Human Wealth)와 物的 富(Non-human Wealth)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区分은 勞動力이 市場에서 売買되고 있는 自由制社会下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人間 그 自体가 売買된다는 것은 아니다. 人間과 資産사이의 이러한 法的인 区分以外에 人間에 있어서 必然的인 自己本位의 思考는 人的인 富와 物的인 富를 区分케 하고 또 前者와 後者の 各各에서 發生하는 所得도 나누어 고찰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 国富라고 할 경우 物的 資産은 市場에서 그 売買가 成立될 수 있음에 따라 人的資本(Human Capital)의 경우에 不可能하였던 評價의 基準을 마련하여 준다. 어떤 經濟學者들은 人的인 富에 價値를 賦与한다든가 또는 人的 富에 있어서 어떤 特性에 대하여 價値를 計量하려는 것에 關心을 가지기도 한다. 즉 勞動力을 發揮할 수 있는 年 齡에 이르기까지의 基礎扶養費라든가 教育·訓練 내지 医療費등에 投資함으로써 形成된다고 보는 人的資本의 評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國富調査의 性格이라든가 또는 問題의 複雜性을 감안하여 推計가 가능한 物的인 富(Non-Human Wealth)에 局限시킨다. 그렇다고 人的資本의 基本的인 重要性을 否認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단계의 推計를 보다 円滑하게 하기 위하여 人的資本에 對한 가능한 「 데이터 」의 수집을 계속할 것이다. 여기에는 關係되는 特性에 따라 所得과 相關되는 자료라든가 아동의 基礎扶養費를 비롯하여 教育·訓練 내지 醫療費 등에 관한 자료가 包含된다. 그러나 人的 富에 대한 推計問題는 아직도 試驗的인 段階에 不過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國富의 範圍가 보다 量的으로 推計가 가능한 物的 富에 局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對象은 有形의 生産的인 資産뿐만이 아니라 無形의 또는 金錢的인 資産까지를 包含할 것이나 一國全體의 立場에서 볼 때는 總資産의 일부는 貸借間에 相互 相殺됨으로써 殘餘의 純價值는 基本的으로 生産的인 自然資源以外에 構築物 裝備 기타 在庫品 등으로 構成되는 有形資産과 對外純債權으로서 이루어 질 것이다.

國富의 中心은 結局 國內의 有形資産+對外債權債務의 差額이며 이는 統合國民貸借對照表(A Consolidated Balance Sheet) 위에서 國富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部門別 貸借對照表 또는 結合國民貸借對照表(A Combined Balance Sheet) 역시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意圖下에 金錢的인 資産 負債에 대한 資料(data)의 補充과 改良에도 關心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蒐集과 推計는 자료자체가 보다 明瞭한 形式을 가짐에 따라서 이에 對한 調查研究에 있어서도 概念的인 문제라든가 또는 자료수집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별로 勞力이 必要하지는 않

았다.

有形資産의 경우 人間勞動의 産物로서의 「再生産」이 可能的인 資本과 土地 기타 등 自然自源과의 区分이 行하여 지고 있다. 그러나 自然自源의 경우 역시 再生産費用이 아니더라도 生産費가 所要된다는 意味에서 相當한 研究와 努力이 必要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모든 資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自然資源의 價値 역시 未來에 豫想되는 純收益으로 判斷된다. 再生産이 가능한 경우처럼 自然自源의 開發에 必要한 投資는 所要基金의 費用과 관련된 豫想收益率에 依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天賦的인 地代의 資本化로부터 生産的인 自然自源에 投下된 資本의 價値를 分離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莫大한 難點이 뒤따른다. 開發된 自然自源의 資産評價問題 역시 費用法 (Cost Approach)이 非現實的이기 때문에 再生産可能性 資産의 評價보다도 훨씬 더 큰 難點을 가져온다. 그러나 自然自源에 대한 一般的인 關心에 따라 이것이 純粹히 人間勞動力의 産物로서의 國富와 基本的인 類似性이 있고 나아가서 資源評價에 있어서 두부분간의 結合性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推計를 扨할 것이다.

再生産이 可能的인 有形資産에는 廣義에 있어서 固定減價資産-構築物과 裝備 등-과 在庫品 등을 包含한다. 어떤 經濟學者들은 軍資産을 國富에 包含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研究計劃에 이를 包含시켰으며 相異한 分析上의 目的에 따라서 部門別乃至 全体的인 總計에 包含될 수도 있으며 除外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國富가 가지는 하나의 特性은 銘心하고 있어야

한다. 즉 모든 資産의 價値는 그것의 使用에 의하여 예상되는 将来所得의 흐름에서 비로소 發生된다고 하는 點이다.

2. 國富의 所有 및 使用部門

自由企業體制 即 市場經濟下에서는 生産的인 有形資産의 大部分이 個人企業部門에 依하여 所有되고 있다. 그러나 公共所有 資産의 相當部分 역시 個別 經濟의 生産에 寄與하거나 直接 消費者에게 用役을 供給하는데 使用된다. 마찬가지로 耐久消費財나 家計資産도 그들이 個人所有이거나 企業으로부터 賃借하였거나 間에 直接 家計에 對하여 用役을 提供하여 준다. 法人이나 非營利團體가 保有하고 있는 資産도 마찬가지로 生産的이므로 國富에 包含되어야 한다.

結局 여러가지 形態의 資本이 企業·政府·家計의 세가지 主要部門間에 所有되는 樣式이 相對的으로 相當히 變化되어 왔는데 이는 耐久消費財의 開發, 賃貸借契約의 普及, 政府活動의 相對的 擴張에서 그 一部要因을 찾아 볼 수 있다. 國民經濟計算에 關한 基本規則中의 하나는 重要的 總計値가 어떠한 制度的 變化에도 不變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財貨를 國富에 包含시킬 것인가의 與否에 關한 基本的인 基準은 廣範하다. 即 그 基準은 直接的이건 間接的이건 財貨가 消費者에게 滿足이나 效用을 提供하거나 또는 豫見할 수 있는 將來에 提供되리라 期待되는 것이면 된다.

3. 國富統計의 實際的 또는 潛在的 利用

經濟統計에 있어서는 統計의 使用 目的에 따라 諸概念과 定義는 물론 推計方法까지도 規制된다는 것은 常識的인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國民經濟計算을 構成하는 各部分의 細分化 程度가 一定하지 않을 때의 広範하고 概括的인 推計에 關하여서만 部分的으로 妥當하다.

이러한 性質때문에 國民經濟計算은 많은 用途와 利用者를 爲하여 도움이 되도록 企劃된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國民經濟計算은 一般的 目的을 지닌 統計이다.

異質的인 統計利用者들의 要求는 各各 다를 수도 있고 또한 그 要求가 反對일 수도 있으므로 國民經濟計算이 모든 用途에 全部 똑 같이 充足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모든 用途를 미리 豫見할 수도 없다. 여러가지 用途가 일단 나타나면 새로운 統計가 利用可能하게 되며 그것을 接하게 된다.

그럼에도 國民貸借對照表의 推計나 所得과 生産計定을 補完하기 爲하여 企劃된 國富統計 등을 計劃함에 있어서 主要한 潛在的 用途를 고려함은 所望스러운 일이다. 이들 潛在的利用은 諸用途間에 或은 理想과 統計的 可能性間에 調整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體制, 概念, 方法 등의 選擇에 影響을 미친다.

利用者가 自身の 必要에 따라 系列을 再調整할 수 있도록 部分을 細分한다던가, 選擇的 系列을 몇가지 方法(經常價值, 原價, 不變價值)으로 同時에 提示한다든지 利用者들이 自體의 目的을 爲하여 주어진 系列의 妥當性을 스스로 決定할 수 있도록 資料나 方法을 詳細히 記述하여 주는 것 등은 特히 重要하다.

4. 國民經濟計算의 一般的인 用途

概括的인 經濟統計는 첫째 一定時點에 있어서 或은 一定期間 동안의 어떤 "크기"나 "相互關係"를 正確히 把握하기 爲한 分析에 利用된다. 統計에 依存한 經濟機能의 理解는 直接 政策樹立의 基礎로서 또는 그 反對로 改善의 餘지가 있는 것이건 또는 그것이 直接的이건 間에 政策樹立을 爲한 基礎로서의 計劃立案에 利用될 수 있다.

直接的으로 利用되는 경우 統計는 是正을 要하는 局面을 提示하여 준다. 또 統計로부터 얻어진 相互關係나 「모델」은 選擇的인 諸政策의 效果를 밝혀줌으로써 어느 것을 選擇할 것인지를 暗示하여 준다. 經濟에 어떤 影響力을 作用하는 政策 樹立의 根拠로서 巨視經濟的 統計를 主로 利用하는 者는 政府機關 特히 聯邦準備銀行을 包含한 聯邦政府의 여러 機關들이다.

國民所得, 國民生産의 計算이 改善됨에 따라 이러한 統計는 政府機關, 個人會社에서 長短期性 巨視經濟的 計劃의 主로 漸次 利用되어 왔으며 다른 여러 機關에서는 이들에 對應하는 微視經濟的 變數를 事業計劃에 使用되어 왔다. 이러한 計劃은 期待되는 變化에 適應하기 爲한 政策樹立을 하는데 있어서 各層에서 行해져 왔으며 政府의 立場에서 볼 때는 때때로 이러한 諸計劃이 是正策을 要하는 開發途上의 局面을 提示한다.

地域別 層化를 多樣化할 때도 여기에서 部門別 또는 産業別 國民貸借對照表와 國富統計의 利用만을 論議하는 것은 이와 같은 前後關係에 緣由한다. 이러한 統計는 經濟的 知識을 넓히고, 經濟變動의 緩和와 成長의 促進을 고려한 計劃 및 政策樹立의 立

案上 經濟分析을 더욱 더 깊이 正確하게 하는데 有用하다.

5. 分析의 方向

個個의 實質的 國富의 分析은 여러가지 基準에서 行하여 질 수 있다. 한 時點의 資產은 다음과 같은 即 一部門別, 資產形態別, 所有者別, 事業體規模別 그리고 收入 및 所有財產의 資產規模別 國富構成의 相關比較를 可能하게 한다. 나아가서 그밖에 項目에 對한 構造의 關係도 研究될 수 있을 것이다.

地域的 分析과 다른 國家와의 國富比較를 想定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個個의 여러 變數들에 關하여 地域間·國家間 比較가 可能하여 질 수 있다. 또한 部門別 統計의 內訳은 個別單位의 特性이 對比될 수 있는 標準形態로서의 構成團體(家計, 企業, 非營利團體, 政府團體)들에 依하여 利用될 수 있다. 年年의 國富 目錄은(概括的인 基準에서의 每年의 評價) 一定한 項目의 歷史的 變化, 一定 地域에서의 構造變化, 全體經濟나 그 部門에 있어서 國富와 이와 關聯된 變數와의 關係를 밝히고 同時에 모든 이러한 項目들의 部門間 變化의 比較를 위하여 利用된다. 이러한 分析基準의 要約的 記述이란 國民所得計定과 一致하도록 마련된 체계적인 國富評價에 依하여 만들어 질 수 있을 知識의 潛在的인 增加를 暗示한다. 會計學的手法은 經濟的 相互關係를 研究하는데 있어 有用한 評價法이 될 수도 있다.

第 2 節 分析上 利用의 範圍

國富에 對한 分析上 具體的인 類型은 아래의 여섯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처음 다섯개는 有形資産에 關한 것이고 여섯번째는 主로 國民 및 部門 貸借對照表上의 金融項目에 關한 것이다. 利用 그 自体는 國富의 評價에 있어서 바람직한 細目別 分類를 示唆한다.

1. 主濟的 統計와 構造 研究

여러가지 分類法에 依한 全體的인 國富 總額은 時間의 變化에 따른 總量과 構造變動의 分析 및 國家와 地域間의 相關的 動態的 比較를 可能하게 한다.

分類는 資産과 部門의 類型 産業上 所有 및 使用의 類型과 關聯되고 또한 生産部門에 있어서의 企業 및 事業體의 資産規模別 그리고 家計部門에 있어서의 家計의 資産規模別과 關聯된다.

이러한 分類는 經濟成長 過程에서의 構造變化 뿐만이 아니라 經濟發展의 相異한 段階에 있는 國家間의 構造上의 差異도 比較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所得과 生産의 觀點에서 볼 때 普遍的 分析에 重要性의 一面을 더 하여 준다. 왜냐하면 어떤 種類의 資産(例: 家計와 政府)은 所得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고 또한 여러 部門에 있어서의 資産構造는 創出된 所得構造와 對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國富總額 및 構造의 比較나 現實分析은 先·後進國을 莫論하고 長期計劃 및 事業計劃을 위하여 基礎를 마련하여 준다. 家計의

富分配는 消費者 行爲를 研究하는데 있어 所得分配를 補完하여 준다.

事業體 및 企業의 富分配는 能率研究에 도움을 줄 것이다. 國家의 相對的 安定力을 評價하기 爲한 여러 國家의 現實成長率, 現資本量 그리고 經濟的인 現產出量은 중요한 統計가 된다. 國富의 評價는 非常時에 있어서 全體的인 그리고 安定的인 產出量을 爲한 現行 潛在力評價에도 도움을 준다.

國富의 構造는 國民產出量 뿐만 아니라 國家의 經濟力과 厚生의 比較에 對하여도 重要한 質的인 面을 提供하여 준다. 例를 들면 軍需品の 生産 및 武器研究 및 發達에 配定된 資本量의 相對的 成長과 規模는 重要한 決定的 要素가 되는 것이다.

2. 生産性 및 能率研究

全體經濟에 있어서 部門別 産業別 實質資本量과 產出量간의 評價는 產出量 單位當 資本材 使用의 變化 및 水準을 意味한다.

資本係數(資本-產出量比率)와 그것의 逆으로서의 資本生産性(產出量-資本比率)은 評價가 다른 여러 形態의 資本에 따라 測定될 수 있다. 資本生産性은 總體的인 生産性 比率을 擧기 爲하여 다른 投入要素(勞動原材料)對 產出比率과 結合될 수 있고 그래서 生産機能은 相異한 期間이나 時點에서 測定된다. 統計的인 生産機能이나 總生産性的 變化는 產出單位當 實質 코스트나 投下資源의 純節約分을 나타내어 結局 이것은 期間中 生産能率의 增大를 가리킨다. 만약 生産性이 勞動者 1人當(人時) 產出量의 立場에서 測定된다면 資本裝備率은 勞動生産性的 變化를

說明하는데 도움을 준다. 近來에 와서는 經濟나 産業上의 效果를 높이기 위한 測定에 더하여 個人企業이나 政府機關에서도 그들 스스로의 生産性 測定을 하여 왔다. 이들은 管理統制道具로써 役割하며 生産性 測定이나 公表는 能率에 對한 關心을 促進시킨다. 生産性 變動原因은 產出資本比率과 關聯된 變數-即 研究開發의 程度, 産業構造, 景氣變動, 利益率 그리고 生産規模에 對한 다른 生産性 比率-를 分析함으로써 밝혀 질 수 있다. 이러한 分析은 個人經濟 또는 國民經濟의 目標을 向하여 生産性 增大를 위한 政府樹立의 資料로 利用된다.

經濟的 總量과 構造(單位原価, 販賣價格 및 產出量)를 根拠로 한 生産性 變動의 效果에 對하여도 研究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事業計劃을 爲한 基礎로써 또는 國民들에 影響을 주는 技術的 經濟的 變化를 取扱하기 위한 政策立案을 爲한 基礎로써 利用된다.

3. 一般需要 分析

經濟學者들은 여러 部門의 資産所有面에 있어서 바람직한 規範을 위하여 調整過程에 力點을 두기 始作하였다. 家計部門에서 流動資産과 그것의 所得에 對한 關係는 消費-貯蓄 決定에 影響을 준다. 이것은 마치 企業家가 自身の 注文과 購買比率이 販賣量과(每月の 供給量)在庫量의 現實的 및 理想的 比率에 依하여 明白히 影響을 받는 것 처럼 그들은 投資決定에 있어서도 固定資本과 產出量의 現實的 및 理想的인 比率 關係에 影響을 받는다. 이리하여 經濟學者들은 部門別 存在量과 總量關係를 觀

察함으로써 經濟計劃이나 支出率(成長率)의 安定을 爲한 政策立案에 도움을 받고 있다.

4. 資本的 市場의 分析

資本-產出量(資本係數)은 여러가지 分析과 長期計劃을 爲한 基盤을 마련하여 주는데 卽 이것은 產出에 對應한 部門別, 資本財類型別 總量으로서의 新規資本 所要量의 推定을 可能하게 한다.

나아가서 耐用年數 또는 壽命推定과 對應되는 經過年數別 資本財 價値의 評價는 基礎가 되어 代置에 所要되는 費用을 策定하는데 준다. 資本財 購買計劃은 몇가지 觀点에서 有用하다.

会社, 非營利團體, 政府機關은 豫算節次의 部分으로서 그러한 計劃을 必要로 하며 다음으로 그것은 財政의 所要額推定을 爲하여도 必要하다. 建設会社나 現在 판매를 계속중인 資本財 生産業者는 長短期에 걸쳐서 展望이 엇보이는 市場의 開拓에 깊은 關心을 갖고 있다. 모든 經濟的인 觀点에서 볼 때 資本支出 計劃은 一般的인 經濟豫測上 主要한 構成要素를 이루며 높은 水準의 需要所得 및 雇傭을 維持하기 위한 國家政策의 바탕으로써 必要하다.

5. 收益率의 比較

評價된 資產價値는 그것에 해당하는 財産所得으로 나누어 질 때 資本收益率의 評價를 意味하게 된다. 營利 經濟下에 있어서 收益率의 水準 或은 變化는 總投資, 總所得 그리고 總雇傭量에

關聯된다. 收益率의 産業間比較는 興味있는 일이고 特히 統制받은 産業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水準과 比率의 差異는 原因과 結果라는 兩面에서 結合된 要素들에 關聯된다. 後者 中에서 投資率의 關係가 더욱 重要하다.

個別企業의 收益比率은 産業의 平均收益比率과 比較될 수 있다. 産業間의 比較에 있어서는 資産價值를 合理的으로 時價로 換算하는 것이 重要하다. 이것은 價格水準의 인프레 或은 디프레에 基因하는 過少 或은 過大 減價償却의 利益에 對한 影響을 除去하기 爲하여 利益에 關한 減價償却 評價調整의 必要를 惹起시킨다. 利益率 分析은 投資決定을 爲하여 有用한 基礎가 되며 그리고 公共的 効用의 調節에도 關係가 된다. 全般的收益率의 推移 및 變動은 所得과 雇傭政策 立案에 있어 中心이 된다.

6. 財務分析

아래에 열거된 여러가지 財務分析은 國民貸借對照表는 勿論 모든 部門에서 行하여 진다. 이것들은 金融 및 貨幣政策樹立의 責任을 맡은 機關에 對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金融機關의 管理에 따르는 政策 및 事業計劃의 基礎로서도 有用하다.

가. 資産構造

大衆들이 貨幣를 選好하고 있는 資産中의 그 比重과 그리고 總去來 및 所得에 對한 貨幣保有와 關係는 金融循環分析 및 貨幣政策을 爲하여 重要하다. 뿐만 아니라 流動性의 程度에 依하여 分類된 여러 種類의 資産의 回轉速度도 또한 그러하다.

나. 負債構造

負債滿期の 期間別 形態에 對한 知識이 貨幣金融分析과 經營管理를 爲하여 必要하다. 그리고 資金의 總體的인 可用資源과 利用은 金融市場狀態의 分析과 必要한 政策樹立에 있어서 重要하다.

다. 負債에 對한 資産의 關係

消費者나 政府 그리고 企業部門에 있어서 有形財産 負債比率은 負債의 健全性 如否를 評價하는데 있어 收益-利潤의 關係比率을 補充하여 준다.

負債-資産比率은 現實的이며 循環的인 金融 發達의 分析에 있어서나 계획된 負債償還義務의 觀點에서 償還請求를 豫測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 財務活動의 比重

財務上 相互關係比率(貸借對照表에서 金融資産에 對한 有形資産의 比率은 經濟內에서 發生하는 不均衡을 밝혀 주는 手段이 된다.

第 3 節 部門別 및 産業別利用面

1. 政府資産部門

政府 및 各級地方團體에 있어서의 財産目錄은 資産管理 卽 在庫品目的 購入과 処分에 있어서 絶對 不可欠한 것이며 나아가서

長期的인 資本豫算의 樹立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合理的인 豫算樹立에 있어서 減價償却 및 投下資本利子の 算定이야 말로 實質費用의 推定을 爲하여 必須不可欠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 意思決定을 爲하여서도 必要하다. 資本「스톡크」 및 「서어비스」의 推計는 納稅者에 있어서는 納稅의 反對給付로서 自身이 享受하는 「서어비스」에 對하여 보다 鮮명한 認識을 가져다 줄 것이다.

所管区域内에 있어서 免稅의 惠沢을 입는 一定部門의 富에 對한 推計는 租稅当局者에게 既定課稅에 對한 보다 分명한 理解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總資産의 把握은 資産稅라든가 遺産稅 其他 資本收益稅 등과 같이 어느 特定課稅에 있어서의 政策樹立이라든가 事業計劃의 效果를 판단함에 있어서 相當한 重要性을 갖는다.

政府 내지 各地方團體級에 있어서 機能에 따라 費用이나 產出量에 關聯시켜서 資本을 推計한 것은 低水準地域(例를 들자면 學生 1人當 公立學校收容程度)의 기준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類似한 單位間의 比較를 可能하게 할 수도 있다.

勿論 聯邦政府가 遂行한 일은 各機關뿐만 아니라 類似한 方面에서 다른나라의 中央政府와도 比較가 가능한 것이다.

國防의 觀點에 있어서도 國富의 增大 및 構造上의 比較는 相當한 意義를 갖게 된다.

2. 純外國資産

一國에 있어서 外國資産에 對하여 把握한다는 것은 經濟成長과

發展에 있어서 外國資本이 차지하는 역할을 分析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이는 특히 後進國의 經濟發展을 分析함에 있어서 重要한 것이며, 外國資本은 後進國의 境遇 重要한 역할을 担当하기 때문이다.

收益의 推計와 더불어 外國純資産(특히 直接投資의 境遇)의 推計는 投資에 對한 相對的인 收益率을 計測할 수 있음에 따라 國際的 資本移動을 說明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先導하기도 할 것이다.

美國內의 外國資産 및 美國의 海外投資에 對한 正確한 「데이터」는 美國의 國際收支 分析을 可能하게 할 것이다. 말하자면 對外資産 및 對外負債의 構造는 流動性的의 相對的 程度에 依하여 國際收支의 評價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이룬다.

調査 實務者가 지적하고 있듯이 對外資産負債 「데이터」의 補充은 國際收支推計에 있어서 統計上의 誤差를 格감시킬 수 있을 것이며 金의 國際移動에 影響을 미치는 다른 要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家 計

家計部門에 있어서 有形 및 無形資産의 推計는 以前에 金錢的 資産에 基準을 두고 推計하였던 것 보다 家計部門의 國富의 分配 정도를 보다 正確하게 把握토록 한다. 다시 말하면 資産所有形態는 消費者의 支出 내지 貯蓄行爲의 보다 完全한 分析을 可能하게 할 것이다. 약간의 經過年數別 資産「데이터」는 이미 各種의 商工組合들에 依하여 市場分析의 必要性 때문에 蒐集된

바 있다. 家計資産이 消費者의 所有物의 內容을 밝혀 주는 限
이는 分析에 이바지하게 된다.

政府의 立場에서 보면 家計資産의 推計는 耐久財의 減價償却뿐
아니라 모든 有形資産에 投下된 利益의 推計를 可能하게 함으로
써 個人所得과 消費에 對한 보다 正確한 分析을 可能하게 하여
준다.

4. 企 業

各 産業에 있어서 企業이나 事業을 經營하는 사람들은 「데이
타」가 可能한 限 그들의 生産性이라든가 收益率 내지 同種産業
間 또는 外國의 企業이나 産業과 自己의 여러가지 資本比率
(Financial Ratio)을 比較하는데 關心을 가질 것이다. 各
産業에 機械裝備를 供給하는 사람들은 各 産業에 있어서 機械裝
備 狀況이라든가 그들의 使用年數, 成長率 等に 關心을 가질 것
이다. 經濟分析에 關心을 가지는 者들은 國富總體에 對한 個
産業의 相對的 比重의 變化와 餘他 關聯事項에 關心을 둘 것이
다.

그러나 各 産業에 있어서도 國富統計는 特別한 關心이 뒤따른
다. 한편 公共施設과 같은 資本集約的인 産業의 경우 負荷要因
이라든가 그것이 生産性에 影響을 미치는 바와 같이 能力設備에
對한 利用率의 變化에 特別한 關心을 가진다.

「서비스」産業에 있어서 非營利部門等은 現在 거의 아무런 資料
가 蒐集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의 相對的 重要性을 評價하기
爲한 資産「데이터」의 蒐集에도 關心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産業에 있어서는 産出量과 이와 關聯이 있는 變數關係를 보는 것이 分析上 有益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假令 坪當 農業生産量이라든가 家畜當 收益이 計算되는 것이다.

輸送部門에서 보더라도 여러가지 형태의 車輛當 積荷量이라든가 乘客數는 設備能力과 比較하여 意義를 가질 것이다. 한편 小売業의 境遇는 店舖 坪當의 販賣額이 計算되기도 한다.

第 4 節 國富와 社會計定

1. 國富와 社會計定

近年의 國富推計는 富 (Stock) 와 所得 (Flow) 間의 關係에 重點을 두고 있음이 常例이다. Stock 와 Flow 와의 交互連關의 解明 或은 國富를 國民計定の 테두리 안에서 追求하자는 등이 그것이다. Flow 와 Stock 의 關聯은 한 말로 말하여 "Flow 는 Stock로부터 發生하여 다시 Stock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國民所得統計上의 減價償却 및 在庫變動은 곧 國富增減과 直接 關係가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國富와 國民所得과의 對比 즉 資本係數를 求하여 相互關係를 究明하려는 움직임이 發展되어 왔으며 現在에도 經濟分析上에 많이 利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資本係數가 單只 國富와 國民所得의 對比에 不過하므로 거의 無意味하다는 論者도 있긴하다. 그 理由는 當該年의 國民所得全體가 既存의 有形固定資産의 蓄積量에만 依하여 産出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萬一 産出能力의 觀點으로 본다면 産出能力이 있는 資産과 그로부터 産出된 生産을 對比함이

所望스럽게 되고 있는 有効需要의 觀點에서 보면 所得發生的 資
産과 그로부터 發生한 所得과를 對比함이 理論的 意味를 지니
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最近에는 能力資本係數 또는 部門接
近에 依한 実績資本係數 등이 經濟分析의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國富와 國民所得과의 關係는 넓게 보아서 社会
會計上 國富는 國民所得과의 關係에서 推計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社会會計上에서의 國富의 位置를 明確히 함으로써 國
富와 國民所得과의 關係를 밝혀두고자 한다.

社会會計의 体系는 3個의 去來를 가진다. 이에 따라서 經濟
分析은 3個의 領域으로 分割되고 있다. 즉 中間生産去來, 純生
産(所得)去來 및 貸借去來가 그것이다. 그런데 一國全體로서
이들 3個去來를 統合하면 中間生産過程 貸借關係는 二重計算의
除去란 方針에 依하여 相殺되므로 結局 純生産(所得)去來만이
남게 된다. 왜냐하면 中間生産去來는 企業의 内部去來로서(주로
原料의 販賣 및 購入) 經濟全體로 보면 兩者의 金額은 一致되어
結合過程에서는 相殺되게 된다. 貸借關係 역시 經濟全體란 立場
에서는 相殺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에 緣由하여 純生産을 対象
으로 하는 所得分析에서는 中間生産過程과 貸借關係는 取扱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經濟를 하나의 全體로서 볼 경우이며 萬
一 部門分割을 行하여 例컨대 企業을 産業別로 個人을 消費世帶
와 非營利團體로 區別한다면 中間生産物 또는 貸借關係는 無視할
수 없다. 中間生産을 部門別로 取扱하는 것이 産業聯関表에 依
한 投入産出分析이며 貸借關係의 그것이 金融聯関表에 依한 金融
分析인 것이다.

2. 国民貸借対照表

새로운 国富推計는 貸借의 相互依存關係를 나타내는 国民貸借対照表로 부터 導出되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国民貸借対照表上에 서의 国富의 位置를 確定시키기 위하여 社会會計上 3個의 領域의 連關에 接近하여야 한다.

国民貸借対照表는 国全体の 모든 經濟單位의 貸借対照表를 結合한 것이다. 經濟單位를 集約적으로 分割하면 個人(消費世帯, 民間非營利団体), 企業(法人, 個人企業, 政府企業), 国(中央, 地方)의 3單位로 나눌 수 있다.

家計는 最終單位이며 企業은 中間單位다. 企業, 国에 있어서는 貸借対照表가 作成되어 있는 境遇가 많으나 家計에는 貸借対照表作成의 必要性이 거의 없다. 이들 3單位의 定義 그것에 包含되는 資産, 負債의 各 項目의 定義 또한 그들의 評價基準은 實際로 統一되어 있지 않음이 常例이다. 따라서 国民貸借対照表의 作成은 어디까지나 理論적으로 構成되어진 것 즉 加工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国富를 国民所得과의 關係에서 導出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結局 国富라는 것은 国民貸借対照表上의 總資産에서 金融債務를 差減한 純資産(Net Worth. 自己資本)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国富는 国民貸借対照表의 1項目이 되는 것이다. 国民貸借対照表의 構成內容은 다음 表로 要約된다.

国民貸借対照表

資 産 (A)	負 債 (B)
実 物 資 産 (T)	金 融 債 務 (L)
金 融 資 産 (F)	純 資 産 (W)

여기에서 注目하여야 할 것은 国富가 貸借關係의 變化에는 關係 없이 所得의 収支變動과 金融關係의 變化에 依하여 影響을 받는 點이다. 그 理由를 살펴보자.

① $\Delta T = I$ $I = 投資$

또한 $\Delta W = S$ $W = 貯蓄$

一國全體로서 (對外關係를 無視하고) 는

$\Delta T = \Delta W$ 가 된다.

② 所得計定の 各 部門에서 經常收入 (Y) 과 經常支出 (X) 과의 差는 資本収支의 差 (S - I) 와 같다.

즉 $Y - X = S - I$ (이때 消費를 C라 하면)

$Y = C + I$ 따라서

$Y - X = (Y - C) - I$

③ 貯蓄과 投資의 差는 金融資産과 金融債務와의 差가 같다.

$S - I = \Delta F - \Delta L$

以上에서 ①과 ②에 依하여서 国民貸借対照表와 所得分析과의 關係가 明確하여지며 ②와 ③에 依하여 所得分析과 金融分析과의 關係가 밝혀져서 ③과 ①에 依하여 国富는 金融分析에 聯關하게 된다. 国富 (W) 의 增減을 要約하면

$Y - X = S - I = \Delta F - \Delta L = \Delta W - \Delta T$ 이다.

다음에 國民貸借對照表를 3 個의 經濟單位에 依하여 보면 그 構成內容은 다음과 같다.

(A) 個人

資 産	負 債
有 形 資 産	個人에 對한 負債
在 外 債 權	企業에 對한 負債
通 貨	對 外 負 債
個人에 對한 請求權	歸 屬 項 目
企業에 " "	持分權 (equity)
" 持分權	
歸 屬 項 目	
其他無形資産	

(B) 企業

資 産	負 債
有 形 資 産	個人에 對한 負債
對 外 資 産	企業에 對한 負債
通 貨	對 外 資 産
個人에 對한 請求權	歸 屬 項 目
企業에 對한 請求權	持 分 權
持 分 權	持分權의 評價差額
歸 屬 項 目	
其他無形資産	
持分權의 評價差額	

(C) 国

資 産	負 債
有 形 資 産	对 外 負 債
無 形 資 産	国 富
对 外 資 産	諸 資 産 評 価 差 額
諸 資 産 評 価 差 額	

以上の 것은 個人과 企業의 資産 負債를 一国的 資産, 負債로 結合시키는 方式이나 政府를 独立시키고 金融機關을 独立시키는 것이 合理的이다. 金融機關을 独立시키면 各 經濟单位의 保有通貨는 資産側에 記錄되며 中央銀行의 發行残高는 負債側에 計上되어 兩者의 金額이 一致됨으로써 国家全体로는 相殺되고 金準備만 남게 된다. 持分權은 額面価額과 時価와의 사이에 差額이 생기는 것도 困難点이긴 하다.

무엇보다 重要的인 것은 資産, 負債의 兩側에서 評價差額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国家全体로서는 이같은 評價差額의 純額이 資産, 負債의 어느側에던 남게 마련인 것이다. 이러한 評價差額은 事實上 究明되기가 힘들다. 그 理由로서는 国富가 異時点性이라는 特性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政府를 独立部門으로 하여 作成된 히스의 英国貸借对照表를 紹介하면 다음 表와 같다.

国民貸借対照表(英国)

単位：10億ポンド

個人(表1)

資 産		負 債	
土 地	1.0	負 債	1.5
建 物	6.5	純 資 産	40.5
設 備	2.0		
耐用消費財	1.5		
公 債	10.0		
株 式	15.0		
海 外 投 資	1.0		
現金・預金	5.0		
	42.0		42.0

法人(表2)

資 産		負 債	
設 備	10.5	株 式	15.0
個人への貸出	1.5	銀 行 預 金	5.0
公 債	7.0		
海 外 投 資	1.0		
	20.0		20.0

政 府 (表 3)

資 産		負 債	
建 物 , 設 備	4.0	公 債	22.0
金 準 備	0.5	純 資 産	-17.5
	4.5		4.5

위 表에서 본 바와 같이 国民貸借对照表는 個人, 企業, 政府의 各 貸借对照表를 集計함으로써만 全体貸借对照表의 作成을 期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골드스미스도 말한 바와 같이 企業과 国民經濟計算의 立場間에는 差異가 있는 것이다. 貸借对照表의 作成은 대개 ① 歴史的 記錄의 保存을 위하거나 ② 經濟的 效果의 測定을 위하여서나 ③ 定期的인 殘額調査 等に 目的이 있는 것이다. ①의 경우는 물론 企業이건 社会全体건 다 함께 適用되는 것이지만 ②와 ③에서 差異가 생기는 것이다. 企業의 經濟的 效果測定은 純利潤의 極大化 特히 資本과 去來額의 比較로서 純利潤을 測定하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社会에 있어서는 純利潤이 目標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②의 經濟的 效果는 經濟厚生의 測定에 있는 것이다.

또한 定期的인 預額調査는 企業에 있어서는 未回收費用의 測定을 위한 것이나 社会에 있어서는 거의 無意味한 것이다.

이같이 国民貸借对照表의 利用性 및 合理性에 對한 論議는 지금도 여러나라 學者間에 研究되고 있는 바다. 그러나 社会經濟

單位의 全資產의 構造 國富의 分布狀態 債權債務의 相互連關等을 分析하기 위하여 또 社會全體經濟單位의 資產負債의 關係를 通하여 引出되는 純資產을 確定하기 위하여 國民貸借對照表의 作成이 要望되는 것이다.

· 故로 本國富調査가 끝나면 國民經濟計算의 國民所得, 國際收支 資金循環, 產業聯關分析等 諸統計를 發展시키고 있는 韓國銀行(政府 資產支部)에서 國民貸借對照表의 作成을 試圖할 것이 所望스럽다고 하겠다.

第 5 章 附 表

第 5 章 附 表

第 1 節 物 価 倍 率

物価倍率は適用対象資産の価格変動을 나타낸 것이다. 資産評價를 위한 物価倍率에는 対象資産自體의 実態價格에 依한 実態價格倍率과 対象資産의 價格變動把握의 手段으로서 資産의 原價를 分析하여 價格變動率을 求하는 原價倍率의 두가지가 있다. 原價倍率이란 資産의 價格을 間接적으로 把握하는 것으로서 資産의 原價構成을 分析하여 勞賃, 經費, 利潤等의 構成比率을 算定하여 이들 各單位의 價格變動을 構成比에 依하여 總合하는 것이다.

以上の 兩種倍率에 있어서 事實上 実態價格에 依한 物価倍率이 多少 未備點이 있으나 國富評價를 위한 價格變動의 指標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実態價格을 体系的으로 把握할 수 없는 경우에는 原價倍率을 作成하여 実態倍率을 補完하고 있다. 여기서 原價倍率이 內包하는 價格變動指標로서의 問題點을 言及하면

- ① 原價構成의 分析에서 各年次別로 繼續하여 同 構成比를 把握함이 困難하며
- ② 原材料의 使用額, 勞賃의 支給額等은 把握 可能하나 財産自體의 需給關係로 因하여 發生하는 利潤率의 變動把握이 어렵고
- ③ 經費 一般管理費와 物價變動과의 關係를 把握함이 어려운 點等으로 因하여 原價倍率은 原材料와 勞賃間의 움직임을 總合함에 그치고 資産自體의 價格變動과 合致된다고는 볼 수 없

는 것이다. 物價倍率에 關한 理解를 棼도록 數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現在 t期에 取得한 資産價値 및 一定單位當의 價格을 各各 V_t, P_t 라고 하고 統一된 評價時點에 있어서의 同一種類의 資産의 價値 및 單位當 價格을 V_0, P_0 라고 한다면 이들 關係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V_0 = \frac{P_0}{P_t} \cdot V_t \dots\dots\dots (1)$$

(1)式에서 P_0/P_t 가 物價倍率이며 이를 各各의 期間에 걸쳐서 製表한 것이 物價倍率表이다.

그리고 (1)式에서 $\frac{P_0}{P_t} \cdot V_t$ 가 再取得價格이 된다.

物價倍率作成에 있어서 가장 所望스런 資料로서는 既存의 價格 資料가 어느程度 利用될 것이냐에 對한 豫備檢討인 것이다. 즉 統計作成機關別 品目乃至는 部門別 또는 原材料 및 勞賃에 關한 價格資料等에서 어느 統計系列을 어느程度 利用하는가? 라는 問題 解決이 先行條件으로 處理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價格資料가 韓國銀行調查第1部의 全國都売物價指數를 大宗으로 其他의 資料는 거의 없는 實情에서는 本物價倍率을 作成하는 作業이 尙히 困難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特히 韓國銀行의 資料가 1) 그다지 길지 않는 時系列인 點과 2) 部門別接近이 아직도 試圖되지 못한데 基因된 綜合指數의 性格을 지닌 點等을 勘案할때 더 많은 努力과 研究가 切實히 要請되고 있다. 그러나 先進國 特히

日本の 경우를 보더라도 資料不足이란 隘路에도 不拘하고 物価倍率作成을 完了 国富評価의 基本指標로 利用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必要가 있다.

以下에서는 向後の 物価倍率作成에 参考가 되도록 日本の 1955年度 国富調査를 위한 物価倍率 作成作業에서 整理된 資料 処理 利用等の 内容を 紹介하고자 한다.

日本の 物価倍率

1. 実態価格資料

우선 対象資産의 実態價格에 關한 重要資料(表1)를 보고 다 음에 資産別利用資料를 본다.

가. 建物

1) 実態價格倍率

勸銀의 木造建築費指數가 主로 利用되었는데 이 指數는 全 国都府県庁所在地의 新築家屋의 時價를 算定한 것이므로 建物 自体의 價格變動을 表示하고 있다.

2) 原價倍率

全般的으로 새로이 作成하였다. 그 理由는 既存의 資料가 建物을 構造別로 指數化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技術進歩에

(表1)

資産項目別	資料名	調査機関名	調査機関	性質
建築物	全国平均木造建築費指数	勸業銀行	1938年以後	実態倍率
	東京木造建築費指数	建築学会建築委員会	同上	原価倍率
	主要都市標準建築費指数	建設公業経営研究会	1946年以後	同上
	建築費指数	谷博士	1958年～1952年	同上
	鉄筋コンクリート建築費指数	勸業銀行	1938年以後	原価倍率修正
	建築動態統計に依る建築費指数	建築学会	1946年以後	実態倍率
	建築平均物価指数	清水建設	1914年以後	原価倍率
	機械器具の価格修正倍率表	G・H・Q	1900年～1950年	実態倍率
	電気計測器価格指数	通産省機械局	1926年～1949年	同上
	化学機械産業機械斗当価格	産業機械工業会	1930年～1949年	実態倍率
車輛運搬具	主要紡織機械価格推移	日本紡織機械工業会	1934年～1949年	同上
	鉄道車輛新製斗当単価	国有鉄道工作局	1921年以後	同上
	自動車國產車価格指数	通産省重工業局	1950年以後	同上
船舶	大型引合貨物船舶价格指数	運輸省船舶局	1915年以後	同上
	鋼造船価格調書	同上	1931年～1950年	同上
	計造船調	同上	第1次～9次	同上
	木造船建造価格	運輸省海運調整部	1950年以後	同上

依한 建物構造가 多種化되고 있는 實情에 비추어 既存의 資料는 原価構成比率의 決定에 대한 參考資料로서만 利用되었다.

나. 機械 및 裝置

위表(表1)에서 본바와 같이 協會에서 作成한 資料가 있으며 日銀의 都売物価中에서도 若干의 資料가 있지만 系列이 不連續이며 包括範圍가 좁고 또 採択한 品目이 極히 部分的인 点等に 비추어 倍率을 새로이 作成하였다.

다. 船舶

鋼造船에 있어서는 運輸省船舶局의 鋼造船價格 및 大型디-젤 貨物船船価指數가 使用되었다. 그러나 木造船에 있어서는 既存 資料의 未備點을 認定 새로운 原価指數를 作成했다.

라. 車輛運搬具

鐵道車輛에 있어서는 國鐵工作局으로 부터 車種別 型式別 吨 當單位를 求得하여 利用하였다. 다음으로 自動車에 있어서는 既存資料를 無視하고 自動車價格의 照會調査를 實施하여 作成하였다.

마. 其他

그밖의 資産에 對하여는 全部 原価倍率을 作成하였다.

2. 原材料 및 勞賃의 價格資料

實態倍率의 利用이 困難한 項目에 對하여는 原價倍率을 作成하였다.

가. 原材料의 價格資料

下表(表2)에서 보는 諸資料가 利用되었다. 價格資料의 性質으로서는 都売物價와 小売物價가 있는데 原價倍率은 都売物價를 中心으로 作成되었다. 그런데 統制經濟下에서의 實際價格의 變動이 下表의 價格資料에 適確히 表示되었는지의 與否가 問題로 提起된다. 日銀의 都売物價가 1935年以後의 實際價格變動을 表示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對하여서는 同物價系列과 對替可能한 資料가 必要하게 되어 萬一 對替系列이 없을 때는 다른 適正資料의 利用이 不可避한 것이다. 多幸이도 日本에서는 鋼材를 包含한 建築材料의 價格變動에 關하여서는 清水建設株式會社調査의 資料에 依하여 實際價格의 움직임을 把握할 수 있었다.

(表 2)

資 料 名	調 査 機 関	調 査 期 間
東京物価品別表	貨幣制度調査会	1873年～1893年
東京重要品卸売品別表	日 本 銀 行	1887年～1910年
東京物価品別高低累年表	大 蔵 省	1892年～1923年
東京卸売物 価	日 本 銀 行	1900年～1954年
卸売物価統計表	商工省(商工会議所)	1900年～1943年
東京市場価格	清水建設株式会社	1914年～1954年

나. 勞賃資料

勞賃變動把握을 위한 資料로서는 明治元年(1868年)以後 繼
 統的인 統計調査가 實施되어 왔다. 別表(表3)에 揭記된 9
 個의 資料가 勞賃資料로 利用되었는데 大正13年(1924年)까
 지는 職種別調査였기 때문에 職種別을 業種別로 옮기기 위한
 手續이 一斷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別表中의 資料를 利用함
 으로서 勞賃의 變動把握이 容易하게 이루어졌다.

3. 個別物価倍率의 作成

個別物価倍率의 作成單位는 耐用年數表에 準拠하여 決定된 것이
 다. 여기에서는 그 作成方法에 關하여 日本이 1955年 國富調
 査를 위하여 作成한 個別價格倍率作成方法을 옮겨놓고자 한다.

資料名	調査機関	調査期間	備考
明治初期東京職業別賃金表	東京商工会議所議事要件録	1868年～1874年	職種別賃金
東京職業別平均賃金	貨幣制度調査会	1873年～1893年	同上
東京市内諸職業賃金高低	大阪蔵省	1892年～1917年	同上
東京業別平均賃金	商工省(商工会議所)	1900年～1943年	同上 大正14年(1925年)以後産業別
産業別一人一日平均賃金	内閣統計局	1925年～1946年	産業別賃金
産業別現金給与額	労働省	1947年～1954年	同上
労働統計要覧	内閣統計局	1927年～1939年	各種資料の集録
建設工業賃金	清水建設株式会社	1947年～1954年	職業別賃金
労働省告示基金賃金	労働省労働基準局	1948年～1953年	同上

가. 建物

建物에 있어서는 構造別分類에 依하여 鉄筋콘크리 - 트造, 鉄骨造, 煉瓦造, 石造, 부록造, 木造等 6 個種의 物価倍率을 作成하였다. 이 경우 鉄骨, 鉄筋콘크리 - 트造는 鉄筋콘크리 - 트造에 그리고 木造, 木탈造 혹은 土造等은 木造에 包含시켜 생각하였다.

1) 鉄筋콘크리 - 트造

原価倍率作成上 어떤 建物を 対象標準建物로 보느냐는 것은 어려운 問題다. 이를 위하여 各種建物中에서 中位程度의 建築費原価構成比率을 比較 檢討하여 東京都主稅局의 1954 年度 再現建築費種別基準表에 依拠 各種鉄筋콘크리 - 트建物の 中位程度의 原価構成을 보던 다음表(表4)와 같다.

이들 各種建物は 種類에 따라 附屬設備의 規模에 差異가 있는데 이것은 設備에 準拠하여 생각해야 하므로 이들을 除外하고 基礎工事와 主体工事が 되는 軸組架構費의 構成을 보던 다음表(表5)와 같다. 이같이 基礎工事 主体工事が 차지하는 比率은 住宅 아파 - 트等이 낮은데 反하여 工場, 倉庫等과 같이 内部構造가 簡易한 것이 높으며 事務所建물이 中間에 位置하고 있다.

또한 建築의 움직임을 主導하는 것은 역시 事務所建物이라 생각되므로 個別物価倍率作成의 標準建物로서는 事務所建물을 扞하기로 하였다.

(表4)

工 事 別	住宅(2級)	工場(2級)	事務所(3級)	工場(3級)	倉庫(2級)	劇場(3級)
設計管理手續費	0.94%	1.25%	1.11%	1.02%	0.75%	1.12%
仮設工事	4.70	4.68	4.30	5.28	3.96	4.27
基礎工事	5.37	7.02	7.37	7.83	9.23	7.64
鉄骨鉄筋工事	15.83	12.27	16.91	23.42	22.21	28.80
コンクリート工事	21.43	21.79	19.63	27.17	30.06	15.68
運賃雜費	2.69	21.18	1.84	4.09	3.58	2.25
防水工事	2.01	1.40	1.11	1.23	1.70	1.35
内装工事	19.40	15.35	10.23	7.13	6.20	9.06
外装工事	1.72	0.75	2.28	0.73	2.09	1.04
鑄, 金物工事	1.07	0.94	1.18	1.29	1.47	1.35
建具工事	8.59	7.02	7.05	8.29	4.75	4.57
硝子工事	0.93	0.46	0.36	0.72	0.19	0.36
建物附屬設備	14.37	22.63	24.84	8.85	10.74	19.66
附屬製雜工事	0.95	2.25	1.78	2.94	3.09	2.64
總工事費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表 5)

工 事 別	住 宅	아파트	事務所	工 場	倉 庫	劇 場
基 礎 工 事	6.27%	9.07%	9.82%	8.59%	10.34%	9.51%
鉄骨 및 鉄筋 工事	18.49	15.86	22.50	25.69	24.88	35.82
콘크리트 工事	25.03	28.16	26.12	29.81	33.68	19.52
附屬設備를除한 工事費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原價構成比率의 決定)

鉄筋콘크리트의 倍率は 原價倍率을 採用하였으며 計算方法으로는 라스파이레스式 그리고 倍率計算을 위한 加重은 全國建設業會와 其他 2個 硏究會의 共同硏究인 「1952年 6月現在의 標準建築費의 構成費目 및 Weight」를 利用하였다. 이 加重表에서는 各種 使用 材料나 勞務費의 內訳이 相當히 細分化되어 있으나 長期的인 價格 資料의 利用可能範圍를 생각하여 同種것을 集合시켰다. 그 構成費目 別加重値는 다음표(表 6)와 같다.

(倍率의 算定)

倍率의 算定은 貨幣制度調查會等의 原材料價格資料와 職種別勞賃資料로서 個別價格指數를 作成하여 表 5의 Weight로 라스파이레스算式에 依하여 物價倍率을 算定하였다.

(表 6)

構 成 費 用	構 成 比 率
砂 , 砂 利	74.6
세 멘 트	139.0
石 材	29.0
瓦 , 스 레 - 트	61.5
鐵 材	213.0
亜 鉛 鐵 板	18.7
木 材	128.7
板 硝 子	17.4
塗 料	16.1
材 料 計	698.0
大 工	40.6
在 官	40.3
人 夫	221.1
勞 賃 計	302.0
全 工 事 費	1,000.0

2) 鐵骨造, 煉瓦造, 石造, 부록造

이들에 관한 資料는 利用可能分이 없어 原價倍率作成을 위 하여 構成比率을 算定하였다.

(表7)

工事費別	鉄骨造	煉瓦造	부록크造	石造
	工事建2級	蔵建2級	住宅2級	蔵2級
砂, 砂 利	3.9	20.1	56.3	27.7
세 멘 트	8.9	170.3	144.2	76.0
煉 瓦		272.6		
부 록 크			156.7	
石 灰		11.7	13.7	18.3
石 材				284.3
瓦, 스 레 - 트	88.1	49.2	27.2	57.3
鉄 材	513.7	99.1	138.6	94.8
亜鉛鉄板	9.3	4.0		4.8
木 材	46.9	117.5	230.0	91.7
硝 子	18.3		12.4	
塗 料	14.4		4.7	
材 料 計	703.1	744.5	783.8	796.6
大 工	9.7	25.3	47.4	26.6
在 官		24.9	51.2	58.1
人 夫	286.9	205.3	117.6	118.7
勞 賃 計	296.6	255.5	216.2	203.4
全 工 事 費	1,000.0	1,000.0	1,000.0	1,000.0

(原価構成比率의 決定)

이들 建物들에 對하여는 既存 Weight 表가 없으므로 東京都主 稅 局의 再現建築費鑑別基準表의 工事費別構成表를 檢討하여 標準 建物을 選定하였다. 다시 材料使用率을 가지고 1954年 8月 現在의 時價로 換算하여 다음과 같이 原材料 勞賃別構成比率(表 7)을 決定하였다.

(倍率의 算出)

鉄筋콘크리 - 트와 같은 方法으로 算出하였는데 算出年次는 建物の 經過年數를 參考하여 決定하였다.

3) 木造

木造建物에 있어서는 實態倍率로서 勸銀의 木造建築費指數가 1938年以後 作成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補完하는 方法을 강구하였다. 原価倍率로서는 谷博士의 建築費指數가 1900年以後 作成되어 있다. 谷博士의 指數는 建築学会, 建設工業研究會 共同研究의 Weight를 使用하여 1) 原材料에 있어서는 日銀都売物價 2) 勞賃에 있어서는 商工省資料를 利用하였다. 그러나 補完指數로서 이들 指數를 採択한다면 1938年 以前까지 遡及하게 되는데 前述한 日銀指數의 弱點이 있기 때문에 谷博士의 指數를 (1900년까지는) 採択하되 1900年以前은 谷博士의 Weight로서 1873년까지 算定하였다. 이렇게 하여 다음表(表 8)와 같은 原価構成比率이 나왔다.

(表 8)

費 目	構 成 比 率
砂, 砂 利	26 %
木 材	488
釘	11
亜鉛鍍板	14
板 유 리	16
疊 表	18
瓦	81
大 工	287
在 官	60
合 計	1,000

나. 構築物

構築物의 耐用年數分類로서는 鐵筋콘크리트造, 콘크리트造, 石造, 煉瓦造, 土造, 金屬造, 木造等の 構造別分類와 함께 特別히 鐵道軌道用, 遊園地用, 鋪裝道路等 用途別 分類도 併用되었다. 物價倍率作成을 위한 分類도 耐用年數表의 分類에 依하였으며 物價倍率作成單位로서는 鐵道軌道用 鋪裝道路用에 關한限 個別物價倍率을 作成했으나 그外는 構造別分類에 依하였다.

構築物은 施行地의 地質等에 左右되어 基礎工事費等の 上・下 限이 크므로 標準原價構成比率 乃至 標準工事費의 算定은 困難하다. 그러나 構造別物價倍率의 作成에서는 建物에 準하여 倍

(表9)

鐵道新設1杆当原单位構成

(丙線中間線) 1929年3月

費	目	單位	使用量
原 材 料	普通鋼材	屯	0
	軌	條	80
	鐵	桁	23
	其	他	16
	計		119
	銅		0.3
	씨	엔 트	2.50
	木	材	石 1,310
	枕	木	丁 1,800
	火	藥	箱 120
	燃	料 油	立 2,000
	모	빌 油	" 200
	車	軸 油	" 300
石	炭	屯 13	
勞 務 費	勞 務 者	人	20,700

率을 作成 하였다.

1) 鐵道用軌道用

鐵道用軌道用構築物에 있어서는 國有鐵道建設部에 照會하여

新線 1 料當에 對한 建設原單位構成을 內어 原價構成比率을 作成 하여 倍率을 作成 하였다.

이 原價單位構成으로부터 原價構成을 算出 하면 다음表 (表 10) 와 같다.

이 原價構成을 가지고 라스파이레스算式에 依하여 原價倍率을 作成 하였다. 倍率作成의 年次로는 地方鐵道로서 現存하는 最古의 것이 1881年7月5日 開業한 南海電鐵阪堺線이기 때문에 1881年度까지 作成年次를 遡及하였다.

(表 10)

鐵道新設 1 料當原價構成

(丙線中間線)

費 目	原 價	構 成	
原 材 料	普通鋼材	5,125 千円	21.9 %
	銅	105	0.5
	세멘트	2,150	9.2
	木 材	6,328	27.1
	火 藥	600	2.6
	石 油	61	0.2
	石 炭	104	0.4
勞 務 費	勞 賃	8,902	38.1
工 事 費 計		23,375	100.0

(構造別로 分類된 構築物)

鉄筋콘크리 - 트造, 콘크리 - 트造, 煉瓦造, 土造, 金屬造, 木造의 構築物 別 分類에 依한 構築物의 物價倍率에 있어서는 實態價格倍率의 採択이 困難함으로 原價倍率을 作成하였다.

構築物은 同一한 構造를 가진 경우에서도 施設의 所在場所에 따른 与件 例컨데 地盤의 強弱等에 따라 같은 煉瓦造의 터널이지만 工事費의 構成內容은 현저하게 差가 난다. 이點 建物과 比較하여 構成內容의 變動이 크다. 그 理由로는 最大變動要素는 鉄筋콘크리 - 트造 혹은 煉瓦造等의 上層段階工事보다도 基礎工事に 있다. 콘크리 - 트造, 煉瓦造, 石造等 工事は 建築工事에서는 같은 方法으로 原價構成比率을 算出하여도 無妨하다. 따라서 變動이 큰 基礎工事に 있어서는 完成工事의 20% 水準의 費用이 드는 것으로 計算 키로 하였다. 이같은 方法으로 算定한 各種構造의 構築物의 原價 構成比率은 다음表(表11)와 같다.

이 原價構成比率을 가지고 Laspeyres 算式에 依해 原價倍率을 作成하였다. 作成年次로서는 施設의 經過年數를 보아 決定할 수 밖에 없으나 一但 原材料價格資料가 있는 分에 限하여 算出하였다. 또 耐用年數表에서 庭園은 土造建築物로 보고 處理하기로 하였다.

2) 鋪裝道路

鋪裝道路에 있어서는 日本道路建設業協會 價格調查委員會作成의 各種 鋪裝道路工事價格表(東京地方標準)에 依하여 原價構成比 率을 作成하였다. 同價格表에 依하여 鋪裝道路의 中間物로서 아스팔트콘크리 - 트道를 採択하여 그 100平方料當의 原價構成

과 基礎工事의 原價構成과를 合算하여 原價構成比率을 作成하였다. 이 原價構成比率을 가지고 LasPeyres 算式에 依하여 物價倍率을 作成하였다.

(表 11)

建築物, 構造物의 原價構成比率

1954年8月現在

費 目	鉄筋콘크리트造	콘크리트造	煉瓦造	石 造	土 造	鉄骨造(金屬造)	木 造
材 料							
鋼 材	29.8%	%	2.0%	2.9%	%	64.7%	2.3%
세멘트	33.0	55.0	17.0	9.1		7.7	
砂, 砂利	14.4	24.0	1.1	0.6		3.3	
煉 瓦			44.1				
石 材				43.2			
燃 料					0.1		
木 材							52.3
勞 賃	21.3	18.7	35.8	44.2	97.9	24.3	45.4
器具損料	1.1	1.6	2.0				
動力費	0.4	0.7					
工事費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表 12)

鋪 装 工 事 代 表 工 種 原 価 構 成 比 較

費 目	아스팔트 乳劑鋪裝	아스팔트 콘크리트 -트鋪裝	콘크리 -트 鋪裝	콘크리 -트 鋪裝
材 料 費	53.8 %	48.0 %	50.3 %	54.8 %
役 務 費	9.0	14.4	13.9	14.7
勞 務 費	11.5	9.8	8.3	6.4
諸 經 費	5.7	9.3	9.3	6.2
雜 費	3.4	1.8	1.5	1.3
計	83.4	83.3	83.3	83.4
營 業 費	16.6	16.7	16.7	16.6
合 計	100.0	100.0	100.0	100.0

아스팔트 콘크리트-트鋪裝에 있어서의 原価構成比率을 算定했으나
採択品目이 너무 多種細細하므로 項目整理上 包括하였다.

다. 其他 構築物

耐用年數表에는 其他 構築物로서는 그 內訳에 木造 및 其他
로 区分되어 있다. 木造에 있어서는 木造構築物의 物価倍率을
準用하기로 하고 其他에 있어서는 構造別区分이 알 수 있는
것은 各各 그 構造의 物価倍率을 適用하였다. 그러나 構造別
区分을 모르는 것도 実査로 判明될 수 있을 것이 豫想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物価倍率의 作成이 必要해진다.

라. 機械 및 裝置

機械 및 裝置에 있어서는 物價倍率作成單位로서 機械와 裝置로 分類하였다. 機械에 있어서는 器具運搬具, 小舟艇等 同質的인 것으로서 別個의 物價倍率을 作成기가 困難한 것을 一括하여 機械器具로서 物價倍率을 作成했다. 裝置에 있어서는 耐用年數表를 檢討한 結果 溫室, 貯藏設備等 建物에 準하는것, 仕込槽, 索道設備等 特別한 構造物에 準하는것, 硫安製造設備等 機械와 같이 생각되어 지는것 등이 混在되어 있음으로 物價倍率의 適用에 있어서는 機械와 같이 생각되어진 것을 機械器具와 包括하여 取扱하였다.

機械器具의 物價倍率로는 앞서본 既存의 價格資料는 어디까지나 部分的 資料로서 調査年次가 1950年以前에 限定되어 있어 利用이 不可하다. 또한 實態價格調査의 對象으로 看做되는 機械는 每年 繼續하여 製造되는 機械에 限하기 때문에 小規模인 것 例를들면 汎用모-타, 農機具 또는 紡績機械等 特殊機械에 限定된다. 機械器具의 物價倍率로서는 實態倍率을 作成하기는 困難하였다. 그러나 原價倍率을 作成할 경우 代表機種의 選定도 容易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機械器具의 原價構成比率을 算定하는 대신 機械器具 工業의 原價構成比率을 算定했다.

(原價構成比率의 算出)

機械의 物價倍率算定을 위한 原價構成比率을 決定키 위하여 機械器具工業의 投入額으로부터 原價構成比率을 유도하여 그것을 가지고

産出物の 原価構成比率을 생각하여 工業統計表 및 工場統計表를 利用했다. 1955年以前의 工場統計表에서는 燃料의 使用高 뿐으로 原材料의 使用額은 求할 수 없으므로 1929年 以後의 工場統計表 및 工業統計表를 利用하였다. 機械器具工業으로부터 電球, 容器, 造船, 鐵道車輛, 自動車等を 除外한 部分의 出荷額(生産額) 原料費, 動力費, 勞賃 그밖의 것의 比率은 다음表(表 13)와 같다.

(倍率의 算出方法)

倍率은 戰前基準 및 戰後基準의 두개의 라스파이레스算式에 依한 倍率을 Link 係數로 接統했다. 戰前後의 兩倍率의 作成에서 原材料費 內容을 細分하기는 困難하므로 工業統計表에 収録된 項目에 依했다. 이 경우 原材料의 價格指數를 어떻게 하여 決定하느냐?가 問題가 된다. 1948年 以後의 動態統計調査에 依하면 主要原材料로서는 各種 機械와 더불어 普通鋼 혹은 特殊鋼이 있어 鐵鋼이 占하는 比率이 圧倒적으로 크므로 鐵鋼의 價格變動을 가지고 原材料의 價格變動을 代表토록 했다. 戰後指數에서는 燃料費가 原材料費 가운데 包含되므로 꼭같이 動態統計調査結果에 의하여 区分하여 作成했다.

마. 船舶

1) 鋼造船

鋼造船에 있어서는 運輸省船舶局調査에 의한 大型디-젤貨物 船平均船價와 中速貨物船船價推移表를 利用하여 1915年以後의

(表 13)

工業統計表에 의한 機械器具工業의 原価構成比率

年 次	出荷額	原料使用額	動力消費額	勞 賃	其他의費用 및 利 潤
1929 年	100%	39.1%	6.0%	16.4%	38.0%
1930	100	41.9	6.5	18.0	33.5
1931	100	38.0	5.1	16.5	40.4
1932	100	38.5	4.3	18.8	38.7
1933	100	41.2	4.1	16.5	38.2
1934	100	41.3	4.3	16.1	38.3
1935	100	42.4	3.5	14.8	39.3
1936	100	36.7	2.9	13.1	47.3
1937	100	44.4	2.2	11.2	42.2
1938	100	36.7	2.8	9.7	50.8
1939	-	-	-	-	-
1940	-	-	-	-	-
1941	100	37.1	2.1	13.0	47.8
1942	100	30.8	2.0	9.4	57.8
1943	資料 없음				
1944	同 上				
1945	-	-	-	-	-
1946	100	36.4	3.2	29.8	30.7
1947	100	37.4	3.8	29.3	29.4
1948	100	52.4		26.4	21.2
1949	100	54.4		29.8	15.9
1950	100	51.2		33.8	15.1
1951	100	62.0		18.9	19.1
1952	100	59.5		19.5	21.0

實態倍率을 作成하기로 했으나 1914年以前에 있어서는 機械器具의 倍率로서 補完하였다. 實態倍率作成을 위해 利用된 屯當 船價는 다음 表(表 14, 15)와 같다.

2) 木造船

木造船에 있어서는 運輸省海運局의 木造船船價가 利用不可能하므로 原價倍率을 作成했다.

(表 14)

大型디-젤貨物船屯當 平均船價

年次	平均船價 ¥/GT	年次	平均船價 ¥/GT	年次	平均船價 ¥/GT
1915年	180	1927年	225	1939年	600
1916	260	1928	-	1940	635
1917	600	1929	220	1941	675
1918	1,050	1930	200	1942	750
1919	450	1931	185	1943	830
1920	450	1932	185	1944	904
1921	130	1933	215	1945	920
1922	200	1934	295	1946	7,120
1923	180	1935	320	1947	34,500
1924	225	1936	340	1948. 7	48,000
1925	225	1937	475	1948. 11	79,000
1926	225	1938	575		

(表 15)

中速貨物船屯当船価推移表 7,000 G/T 5,000 HP 디 - 겐

年	月	平 均 船 価	¥/GT
1949年	8月	72,400	
〃年	9〃	76,200	
1950年	1〃	80,700	
〃年	10〃	87,000	
1951年	1〃	126,000	
〃年	10〃	154,000	
1952年	4〃	156,000	
〃年	12〃	166,000	
1953年	2〃	150,000	
〃年	8〃	134,000	

(原価構成比率의 決定)

木造船의 原価構成에서는 機帆船, 漁船에 대한 平均的인 原材料 工員數, 經費의 比率 等으로부터 1954年 8月現在의 原材料의 價格, 勞賃을 木造船会社等に 照會하여 原価構成比率을 決定하였다.

木船의 原單位構成等에 依하여 算出한 原單位構成比率은 다음(表 16) 과 같다. 이 原單位構成으로부터 다음 表와 같은 原価構成比率이 算出된다. (表 17)

(表16)

木造船の原単位構成

費目	機帆船総屯当	漁船総屯当
① 木材	10 石	14 ~ 16 石
② 製材費	木材費の 28 %	木材費の 28 %
③ 釘類	50 kg	70 kg
④ 金物類(鋼板等)	50 kg	80 kg
⑤ 工員数 造船工 雑工	(20 ~ 25 7 工 工	25 ~ 35 11 工 工
⑥ 機装器具備品	(①+②+③+④+⑤) × (31.8 % ~ 37.8 %)	
⑦ 間接費	(①+②+③+④+⑤) × (21.2 % ~ 25.2 %)	
⑧ 一般管理費	(①+②+③+④+⑤+⑥+⑦) × (20 % ~ 23 %)	
⑨ 利益	(①+②+③+④+⑤+⑥+⑦+⑧) × 1.00 %	

(表17)

費目		機帆船総屯当		漁船総屯当 ^b	
材	木材	33,280 円	54.7 %	43,264 円	52.4 %
	釘類	4,100	6.7	5,740	6.9
料	鋼材	4,000	6.6	6,400	7.7
	造船工	16,500	27.1	22,500	27.2
	雑工	3,010	4.9	4,730	5.8
直接費計		60,890	100.0	82,634	100.0

(物價倍率의 算出)

以上の 構成比率을 가지고 라스파이레스算式에 依하여 算出하였다. 이 경우 倍率作成의 年次로서는 機帆船에 있어서는 50年程度 使用되는 것도 있지만 漁船은 大体 7年에 更新되어 길어도 15年 使用될 狀態이므로 倍率의 作成에 있어서도 機帆船 50年 漁船 15年의 期間으로 算出하였다.

3) 小舟艇

渡船, 보-트, 모타보-트 등의 小舟艇에 있어서는 實態價格의 把握도 容易치 않아 原價構成에 있어서도 明確한 資料가 없으며 法人企業의 處理에 있어서도 船舶으로서가 아니라 備品으로서 處理되는 것이 적지않다. 따라서 個別倍率을 作成하지 않고 備品에 準하여 取扱했다.

바. 車輛運搬具

1) 鐵道車輛

鐵道車輛에 있어서는 國有鐵道工作局調査의 1910年 新製車輛 噸当單價가 있는데 이에 依하여 實態倍率을 作成하였다.

이 資料에 依하면 車種別로는 蒸氣機關車, 客車, 電動車, 附隨車, 貨車의 6種의 價格變動을 把握할 수 있으므로 이를 綜合하여 鐵道車輛으로서 倍率을 作成하였다.

이 倍率의 適用對象은 法人企業이 中心이 됨으로 總合에서는 1952年 3月末의 地方鐵道 및 軌道の 車種別保有車輛數와 1954年度의 各車種別 1輛當 新製價格等에 依하여 車種

別分布價格을 決定하여 이 比率에 依拠 綜合했다. 이러한 方法에 따라 算出한 車種別分布比率은 다음과 같다. (表 18)

이 分布比率을 Weight로 하여 各車種別單價의 個別指數를 라스파이레스算式에 依하여 1921년까지 實態倍率을 作成하였다. 1920年以前에 있어서는 機械器具를 使用하여 補完하였다.

(表 18)

車 種 別	分布輛數	一輛當單價	分布 價額	分布比率
	輛	千円	百万円	%
蒸氣機關車	433	26,000	11,258	4.6
電氣機關車	246	64,200	15,793	6.4
客 車	1,152	9,541	10,991	4.4
電 動 車	8,280	21,800	180,504	73.0
附 隨 車	1,389	9,541	13,252	5.4
貨 車	10,625	1,450	15,406	6.2
計	22,125	13,750	247,204	100.0

2) 自動車

自動車에 있어서는 通産省의 國產車價格指數가 1950年以後 作成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不充分하므로 自動車會社나 取扱會社 等に 照會하여 1934年以後의 價格變動을 調査하여 이에 依하여 實態倍率을 作成하였다. 各車種의 個別價格指數를 綜合하는 方法으로는 鐵道車輛과 함께 分布價額의 比率에

依하였다. 그러나 1953年 3月末現在の 車種別分布輛數와 1954年 8月現在の 1台당 平均新車價格等に 依하여 車種別 分布 價額을 算定했다. 이 方法에 依하여 算定되어진 分布比 率은 다음(表 19)과 같다.

이 分布比率을 가지고 各 車種의 個別價格指數를 라스파이레스算式에 依하여 1934년까지 物價倍率을 算出했다.

(表 19)

車 種 別	分布輛數	一輛當單價	分布 價額	分布比率
貨物普通車	142,356	千圓 912	百萬圓 129,814	% 30.8
貨物小型四輪	50,428	750	37,820	9.0
貨物小型三輪	223,249	318	71,028	16.9
乘 合 車	25,095	849	21,318	5.1
乘用普通車	60,369	1,745	105,315	25.0
乘用小型四輪車	29,594	648	19,174	4.6
乘用小型三,二輪車	37,486	269	10,071	2.4
輕 自 動 車	168,189	155	20,069	6.2
合 計			414,609	100.0

3) 其他 車輛運搬具

이 中에 包含되는 것은 大体로 機械器具工業의 所産에 屬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機械器具의 物價倍率을 適用하였다.

사. 器具 및 備品

器具, 備品에 屬하는 것은 그 個個의 單價도 낮고 耐用年數도 짧은 것이 많아 雜品의性格을 지녔기 때문에 그 標準的인 것을 選定기가 困難하다. 企業會計上의 處理도 消耗品과 境界를 짓기가 困難한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個別物價倍率의 作成은 困難하나 그 取扱上 器具와 備品으로 分類하였다.

1) 器具

器具에는 工具 器械가 있다. 이들은 大體로 機械器具工業의 所産임으로 機械와 合하여 機械器具의 物價倍率로서 作成하였다.

2) 備品

備品은 什品 容器 漁網 裝備品等 그 種類가 極히 많아 個別物價倍率의 作成은 到底히 不可能하여 一般物價를 가지고 價額修正을 하는 것 以外는 方法이 없다. 一般物價變動의 測定에는 普通日銀都売物價指數가 採択되어 있음으로 이에 依拠하였다. 日銀의 都売物價도 戰時中の 實際物價를 反映하지 못한 弱點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別途方法이 없었다.

第 2 節 資産分類 및 耐用年數表

1. 資産의 分類基準

가. 資産의 分類原則

本表에 있는 資産分類는 原則的으로 1968年 1月 1日부터 施行되고 있는 現行 法人稅法 施行規則別表인 「固定資産耐用年數表」에 準拠하였다. 따라서 配列, 区分등에 있어서는 稅法耐用年數表의 그것과 多少 다른 點이 있으나 差이는 거의 同一하다. 또한 資産別로 表示되어 있는 耐用年數도 稅法上의 耐用年數를 그대로 採用하고 있다.

나. 資産의 分類方法

資産은 固定資産과 流動資産으로 2大分하고, 固定資産은 이를 다시 建物, 構築物, 機械 및 裝置, 船舶, 車輛 및 運搬具, 工具·器具 및 備品, 建設仮計定, 動植物로 8 区分하였다. 流動資産은 原材料, 半製品 및 在工品, 完製品 및 商品, 貯藏品으로 4 区分하였다. 이들의 分類方法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1. 固定資産

11. 建物

111. 住宅

112. 非住宅

113. 建物附屬設備

12. 構築物

121. 交通施設

122. 發電 및 送配電施設

123. 水利 및 治水施設

124. 其他施設

13. 機械 및 裝置

14. 船舶

141. 鋼 船

142. 木 船

143. 其他船舶

15. 車輛 및 運搬具

151. 軌道車輛

152. 自動車

153. 航空機

154. 其他車輛 運搬具

16. 工具・器具 및 備品

17. 建設仮計定

18. 動植物

2. 流動資産

21. 在庫資産

211. 原材料

212. 半製品 및 在工品

213. 完製品 및 商品

214. 貯蔵品

다. 資産의 集計單位

이번 國富統計調査에 있어서는 上記한 바 있는 有形固定資産
과 流動資産 中の 在庫資産만을 調査한다. 따라서 有形固定資

産 中의 土地, 無形固定資産, 移延計定등은 調査에서 除外되며, 流動資産에 있어서도 現金・預金, 外上売出金, 有価証券등 在庫資産 以外の 것은 모두 調査에서 除外된다.

이 資産分類에 있어서는 「1. 固定資産」과 같이 한자리 数字로 시작하는 경우, 이를 大分類項目이라 부르고, 「11. 建物」과 같이 두 자리인 경우에는 中分類項目, 「111. 住宅」과 같이 세자리 数字로 시작하는 資産은 이를 小分類項目이라 부른다.

이 小分類項目 아래에 構造 및 用途, 細目등의 작은 分類가 있다. 例를 「111. 住宅」의 경우에 들면, 構造 및 用途에 따라서 「A. 鉄筋콘크리트造 또는 鉄骨鉄筋콘크리트造」, 「B. 煉瓦, 石造 및 부록造」, 「C. 鉄骨造」등의 7個 区分이 있고, 그 밑에 各各 細目이 있다. (A. 鉄筋콘크리트造 또는 鉄骨鉄筋콘크리트造의 경우에는 (1)住宅 (2)觀光호텔 (3)旅館등의 細目이 있다)

이번 調査에 있어서는 調査票 (建物の 경우 有形固定資産調査票 (A)) 의 株式에 따라서 細目까지를 記入하고 그에 따른 耐用年數를 記載하도록 되어 있다.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有形固定資産調査票 (A)

分類番号 및 名稱	構造 및 用途	細 目	耐用年數	68年	67年
(111) 住 宅	鉄筋콘크리트造 또는 鉄骨 鉄筋콘크리트造	觀光호텔	40	千원	千원
					5,000

註：68年，67年 등의欄에는 當該年度의 取得價額을 第一上行에 記載하게 되어 있는데， 調査票 記載에 關係서는 調査票裏面의 記入要領을 參照하십시오.

이와 같이 調査票에의 記載는 細目까지 하나 이 細目別로 集計하는 것은 業務量으로 보아 勘當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렇게 하는 實益도 적으므로 集計는 小分類項目 즉 例를 들면 「111. 住宅」을 最小單位로 한다. 따라서 7個의 構造로 되어 있는 모든 住宅이 「111. 住宅」 하나로 集計되고， 住宅， 非住宅， 建物附屬設備등 세가지 小分類項目을 合한 것이 「11. 建物」이라는 中分類項目으로 集計되며， 다시 建物 以外の 固定資產을 合하여 「1. 固定資產」이 表示되고， 固定資產과 流動資產을 合하여 法人部門의 國富가 集計되는 것이다.

그러나 「13. 機械 및 裝置」， 「16. 工具·器具 및 備品」， 「17. 建設仮計定」， 「18. 動植物」등은 中分類에서 그치고 小分類項目이 없다. 小分類項目이 없는 경우에도 構造 및 用途， 細目등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區別에 따라 調査票에는 記載를 하되， 集計는 中分類부터 시작한다. 즉 機械 및 裝置의 경우에는 機械 및 裝置 하나로 計數가 나오는 것이다. 流動資產에 있어서도 最小集計單位는 小分類이다.

2. 耐用年數의 適用方法

固定資産中 機械 및 裝置를 除外한 모든 資産(建物, 構築物, 車輛 및 運搬具, 工具・器具 및 備品, 建設仮計定, 動植物等)을 共通資産이라 부른다. 이러한 資産은 모든 産業에서 共通으로 保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共通資産, 機械 및 裝置, 流動資産의 順으로 耐用年數 適用上의 留意點을 摘記해 둔다.

가. 共通資産

1) 建物

稅法耐用年數表에서는 建物과 建物附屬設備의 耐用年數가 따로 定해져 있다. 本表에서는 建物안에 住宅, 非住宅, 建物附屬設備의 区分을 두고 있다. 建物附屬設備가 建物안에 包含되고는 있으나 本表上에서도 別掲하고 있으므로 實質적으로 分類가 달라진 것은 稅法上의 建物を 本表上에서 住宅과 非住宅으로 分離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그것도 稅法上의 建物の 細目에서 「住宅」에 該當하는 것을 골라내어 別掲한데 不過하다. 耐用年數는 稅法上의 耐用年數 그대로이므로 適用上 別로 疑義가 없을 것으로 본다.

2) 構築物

本表에서는 構築物을 交通施設, 發電 및 送配電施設, 水利 및 治水施設, 其他施設로 4 区分하고 있다. 이것이 稅法上의 区分과 다른 點은 水利 및 治水施設을 別掲하고 있는 것 程度인데, 이는 稅法上의 構築物의 細目 가운데서 이에 該當하는 것을 골라내어 別掲한데 不過하다. 耐用年數는 모두

稅法과 同一하다.

3) 船舶

本表에서는 船舶을 鋼船, 木船, 其他船舶으로 3 区分하고 있는데 이것은 稅法上的 分類와 類似하므로 適用上的 疑義는 없을 것이다.

4) 車輛 및 運搬具

本表에서는 이를 軌道車輛, 自動車, 航空機, 其他車輛 및 運搬具로 4 区分하고 있는데, 稅法上에서 別掲되어 있는 航空機를 車輛 및 運搬具에 包含시켰을 뿐, 餘他是 稅法的 分類와 類似하다.

5) 工具・器具 및 備品

稅法上에서는 別掲되어 있는 工具와 器具 및 備品을 便宜上 合쳤을 뿐 內容은 同一하다.

6) 建設仮計定

資産分類의 하나로서 表示되어 있을 뿐 耐用年數는 없다.

7) 動植物

稅法上的 「牛馬・果樹의 使用 또는 收穫可能年數表」와 同一하다.

나. 機械 및 裝置

機械 및 裝置는 稅法的 「事業別固定資産」에 該當한다. 共通資産 즉 建物이나 車輛 등은 어느 産業에서나 使用되지만 機械나 裝置는 事業에 따라 그 內容이 判異하므로 事業에 따라

分類하는 것이 普通이다. 稅法에서는 다음과 같이 表示하고 있다.

事業別固定資産 耐用年数表 (甲)

一連番	事業別	番号	用途別設備	細目	備考	耐用年数
3	石綿鉍業	0301	石綿鉍業設備		鉍業權을 除外한다	8
11	輸送用機械 製造業	1103	自轉車 또는 同部 分品 및 附屬品 製造設備	鍍金設備 其他의 設備		10 12

即 稅法에서는 事業別, 用途別設備別, 細目別로 機械 및 裝置의 耐用年数를 策定하고 있다. 그런데 이 「事業別」은 韓國 標準産業分類上의 大, 中, 小, 細分類가 混合되어 있어 (石綿鉍業은 細分類中의 項目에 不過하고, 輸送用機械製造業은 中分類이다) 統一性이 欠如되어 있다. 그리고 一連番号는 本調査에서는 不必要하다. 따라서 本表에서는 「事業別」을 標準産業分類上의 中分類로 統一하고 「一連番号」 대신 中分類番号를 붙이고 「番号」는 削除하였다. 事業의 配列도 標準産業分類를 따랐다.

稅法에서는 全産業의 機械 및 裝置에 대하여 耐用年数를 策定한 것으로 되어 있다. 換言하면 稅法上에 別掲되어 있지 않은 事業의 機械裝置 耐用年数는 事業別固定資産 耐用年数表의 末尾에 있는 「前掲以外の 事業의 設備」의 耐用年数를 適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解釈에는 無理가 있으므로 別掲되어 있지 않은 産業中分類의 耐用年数는 다음과 같이 處

理한다.

14. 監業：監業의 主要資產은 監田인데 이것은 土地로 看做하여 除外한다. 其他의 設備는 共通資產에서 該當하는 것을 찾아 그 耐用年數를 適用한다.

22. 煙草製造業：該當 事業체가 專賣庁 뿐이므로 同庁에서 使用하고 있는 耐用年數를 適用한다.

52. 水道・衛生施設서비스業：水槽, 上水道, 下水道 등은 共通資產에서 찾아 記載하고, 機械 및 裝置가 있는 경우에는 法人이 使用하고 있는 耐用年數에 따르고, 法人이 耐用年數를 定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前掲以外の 事業」 「前掲以外の 事業設備」로 看做하여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主로 金屬製인 것 18年

其他의 것 8年

61~65. 商業(全部)：都売業, 小売業, 金融業, 保險業, 不動產業으로 構成되는 商業에는 機械裝置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있는 경우에는 本表上의 類似한 機械裝置의 耐用年數를 適用하며, 類似한 機械裝置를 兪見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主로 金屬製인 것 18年

其他의 것 8年

81. 政府서비스業 : }
82. 社會서비스業 : } 現業官庁이나 이 分類에 屬하는 法人이
83. 企業서비스業 : }

保有하는 機械裝置는 本表上의 類似한 事業의 機械裝置의 耐用年數를 適用한다. 類似한 機械裝置를 發見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主로 金屬製인 것 18年

其他의 것 8年

그리고 機械裝置의 調査票(有形固定資産調査票(B))上的 記載에 있어 留意할 點은 分類番號의 記載方法이다. 本表上에 있는 番號는 前述한 바와 같이 産業中分類 番號인데 이것은 事業의 發見을 돕기 위한 것이고 資産分類番號는 아니다. 따라서 機械 및 裝置의 資産分類番號인 「13」을 記入해야 하는데, 이것은 모든 機械 및 裝置에 共通되는 番號이므로 便宜上 調査票上에 印刷를 해두었다.

다. 流動資産

流動資産은 資産分類로서 나와 있을 뿐 耐用年數는 없다.

부

록

제 1 절 정부자산부문 조사개요

1. 조사연혁

정부부문자산조사는 「1968년 국부통계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국부통계조사 본부에서 1969년 3월에 마련한 「1968년 국부통계조사지침」은 국부를 구성하는 자산을 다음과 같이 5개 소유주별로 구분한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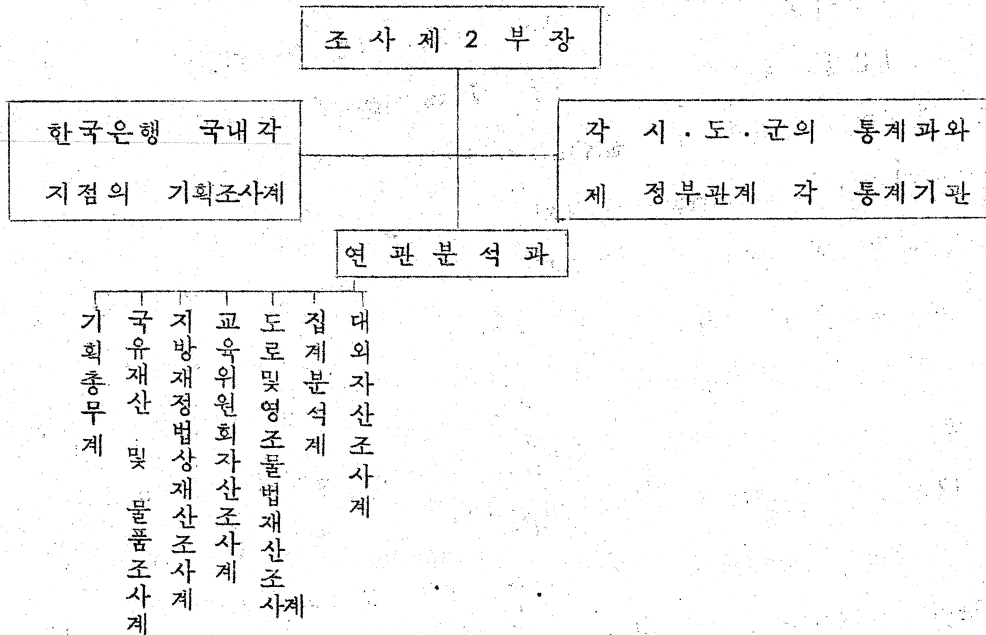
- 가. 정부소유자산
- 나. 법인소유자산
- 다. 개인기업소유자산
- 라. 가계보유자산
- 마. 대외순자산

정부소유자산 및 대외순자산은 한국은행에서 법인소유자산은 한국산업은행, 개인기업소유자산은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가계보유자산은 경제기획원에서 각각 분담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자산부문의 조사를 담당한 한국은행 조사제2부에서는 동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 즉 국부통계에 관한 이론 및 조사방법 등 실무자적인 면을 연수케 하였으며 정부자산에 대한 관리체제 및 법규, 자료의 수집방안, 각종 대장의 정비현황 및 작업량을 파악하는 등 조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1968년 11월에 부산 및 경상남도 일원에 걸친 시험조사를 치루어 조사체도를 닦은 후 다음과 같은 조사체제로서 각 조사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1969년 6개월간(3월~8월)에

결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집계는 1970년 7월에 완료하였다.

본 조사는 시험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13,600여 개처에 달하는 조사대상처를 파악하여 각 대상처의 조사원(공무원)에 대한 강습을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정도를 높임과 동시에 작업량이 많은 대상처에 대하여는 별도의 훈련된 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돕도록 하여 조사기간을 단축시켰다. 이와같이 하여 회수된 조사표는 여타의 자료를 이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전자계산조직(IBM 360)을 사용하여 결과를 집계하였다. 또한 조사체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자산의 특수성에 쫓아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산이 귀속한 법에 따라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부자산조사상의 특수점은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관계기관의 많은 협조아래 이루어진 점이다.



2. 조 사 목 적

정부자산조사의 목적은 국부를 구성하는 자산중 일반정부, 정부기업, 정부관리기업 등 모든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국부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조사하여 정부소유자산의 실태를 다각도로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1968년 국부통계조사」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데 있다.

3. 조 사 시 점

1968년 12월 31일.

4. 조 사 근 거

지정통제 제21호의1

5. 조 사 범 위

정부자산조사는 「1968년 국부통계조사지침서」에서 정립된 국부의 개념에 해당하는 정부소유의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의 지역적 범위

조사의 대상객체는 국내에 소재 또는 거주하는 모든 정부관계 기관으로서 정부자산조사의 실시지역은 조사기준시점 현재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모든 영역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국내의 행정구역과 각 정부기관이 주재하는 외국지역이 조사실시지역이었다.

위에서 국내에 소재한다는 뜻은 정부관리기업인 경우 우리나라

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내에 본사, 본부등의 사업활동의 장소적 본거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정부관리 기업의 구성원인 사원, 중역, 주주등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었더라도 혹은 자본 또는 출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외국인의 출자에 의하여 운영되었다도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나. 조사객체의 범위

정부자산조사의 조사객체는 정부 전기관과 정부관리기업이다. 정부 전기관이란 입법, 사법, 행정의 정부기관을 일컬을 뿐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띤 조합, 연합회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정부관리기업 즉 기업이란 주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1968년 12월 31일 현재로 정부가 「정부관리기업」으로 정한 한국은행의 39개 기업을 일컫는다. 그런데 40개 국영기업은 소유주체별로는 정부자산에 속하나 경제활동면에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따라 실제 조사에서는 조사편의와 정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자산 조사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이 분담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조사결과의 공표는 정부자산부문에서하기로 하였다.

소유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담당 조사한 국영기업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은행담당조사의 국영기업

- ① 한국은행
- ② 한국산업은행
- ③ 중소기업은행

- ④ 국민은행
- ⑤ 한국주택은행
- ⑥ 대한 손해재보험공사
- ⑦ 한국조폐공사
- ⑧ 한국증권거래소
- ⑨ 조흥은행
- ⑩ 한국상업은행
- ⑪ 한일은행
- ⑫ 제일은행
- ⑬ 서울은행
- ⑭ 대한석탄공사
- ⑮ 대한석유공사
- ⑯ 한국광업제련공사
- ⑰ 대한조선공사
- ⑱ 한국외환은행
- ⑲ 대한광업진흥공사
- ⑳ 농어촌개발공사
- ㉑ 한국신탁은행
- ㉒ 국제관광공사
- ㉓ 대한주택공사
- ㉔ 대한건설공사
- ㉕ 한국수자원개발공사
- ㉖ 한국투자개발공사

㉗ 해외개발공사

㉘ 한국수산개발공사 등 28개처

2) 한국산업은행담당조사의 국영기업.

① 한국전력주식회사

②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③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④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⑤ 인천중공업주식회사

⑥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⑦ 충주비료주식회사

⑧ 호남비료주식회사

⑨ 대한염업주식회사

⑩ 대한통운주식회사

⑪ 대한항공

⑫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등 12개처.

다. 조사대상자산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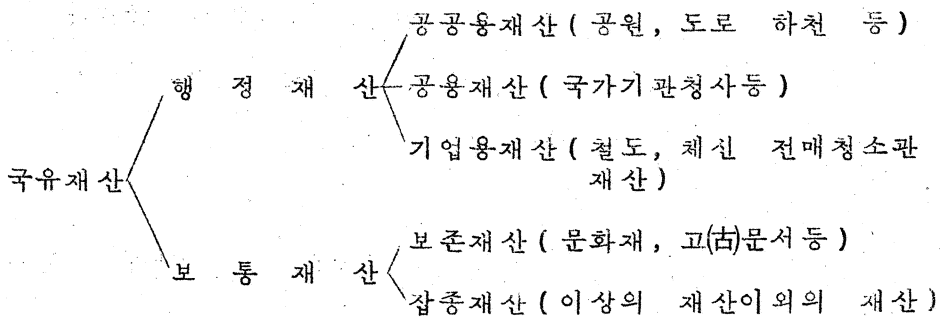
정부자산부문은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자산조사지부의 일반자산처럼 관리체계가 단일화 되어있지 않고 각각의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이에 의하여 통일되고 있는 자산이다. 따라서 이번의 조사에서는 정부의 모든 기관이 소유하는 자산을 관리 구분에 따라 국유재산, 법소관자산, 물품관리법소관자산, 지방재정법소관자산, 교육위원회소관자산, 영조물법인자산, 도로자산의 여섯개 대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이를 각각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국유재산법 소관자산

국유재산법이란 1959년 제정, 공포된 법률 제 405호를 일컫는다. 국유재산법 소관자산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된 아래에 열거하는 재산을 말한다.

- 가) 부동산과 그 종물
- 나) 선박부료,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다)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用)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 라)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마)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바) 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행사권과 사원권

또 국유재산을 용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소관 재산중에는 이번 국부통계조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부문 즉 토지, 자연림, 문화재 및 무형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으로서 큰 비중을 차

지하는 도로도 국유재산의 일종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조사에서는 첫째, 국부개념상 국부자산으로 보지 못할 토지와 자연림, 문화재 그리고 무형자산등은 비록 국유재산이지만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둘째, 사회간접자본의 대종을 이루는 도로는 조사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독립부문으로 조사추계하였기 때문에 국유재산부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셋째로, 직접적인 방위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국방자산은 경제적 측면으로 본 기여도나 보안상의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대상이 된 국유재산법소관자산을 종목별로 보면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및 장치 그리고 국유재산으로 등록될 성격의 자산인 건설가계정이 조사대상이 되었다. 좀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분류와 국부통계조사 고유의 비교는 아래와 같으며 동표에서 국유재산법상자산의 조사대상여부를 분명히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2) 물품관리법 소관자산

물품관리법의 테두리에 포괄되는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중 아래에 표시하는 것 이외의 모든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일컫는다.

가) 현 금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다)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유부동산의 종물) 과 동항 제2호 (선박, 부표, 부잔표, 부선거,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및 제3호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用)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에 적혀 있는 국유재산

물품관리법상의 물품속에는 군수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의 조사에서는 방위목적에 직접 관계되는 모든 군수품을 제외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군수품의 일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군수품은 통상품과 전비품으로 2대별하여 군수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바 위에서 지적인 방위목적과 직접 관계가 있는 물품은 전비품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의 대상은 군수품중 전비품을 제외한 통상품만이 선정되었다. 물품중의 군수품은 성격상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수관리법의 규제를 받고는 있지만 동법의 규제범위는 거의가 전비품이며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통상품은 거의 전부가 기타의 물품과 같이 물품관리법을 그대로 준용토록 되어있다.

물품관리법에서는 모든 물품을 중요물품과 중요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물품이라 함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시행령 제 43 조) 물품의 품목당 단가가 1만원 이상인 것인데 중요물품의 종류 및 설명은 아래와 같다.

중요 물 품 분 류 표

품 목	설 명
전 기 기 계	전동기, 회전변류기, 변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정류기, 피전기, 축전기, 배전반, 개폐기, 차단기, 전기보이라, 발전용증기관, 발전용증기타-빈, 발전용 수차, 전동공구, 전동기기, 전자석, 전기로, 용

품 목	설 명
통신기계	접기, 전해장치, 기타 전기기계, 전신기계, 전화기기, 교환기기, 반송중계기기, 무선기기, 기타 통신기계.
공작및목공기계 토목기계	선반, 연반반, 치절반, 평삭반, 형삭반, 견삭반, 거반, 제개기계, 목공기계, 기타 공작 및 목공기계 파헤치는 기계, 기초공사기계, 토목용 운반기계, 토목용 기중기, 권상기, 정지기계, 쇄석기계 선별기계, 콘크리트기계, 포장기계, 토목용 공기압축권 및 팍팍, 기타 토목용 기계 및 화차.
시험및측정기계	금속재료 시험기, 정밀측정기, 광학검사기, 전기계기, 전기 측정기, 기타 시험기기 및 측정기기
하역운반기기	기중기 (토목용 제외), 권상기 (토목용 제외), 콘베야 (토목용 제외), 에레베타 (토목용 제외) 삭도 (토목용 제외), 지약기 (토목용 제외), 천차대, 전차대, 기타 하역운반기계.
산업기기	증기판 및 동부속품 (선용 및 발전용 제외), 타빈 (발전용 제외), 증기기관 및 내연기관 (선용 및 발전용 제외), 전도장치 (선용제외), 범용펌프 (선용, 토목용제외), 변압기 및 송풍기 (선용 및 토목용제외), 원자로 단압기, 퇴, 로-루, 용접기계 (전기용접기 제외), 철판 (토목용 제외), 철탑, 제철기계, 용광처리기, 화학기계, 파쇄기 및 마쇄기 또는 선별기 (토목용 제외),

품 목	설 명
선 박 용 기 기	동동 및 공기조절장치 (선용제외), 인쇄기계, 제판기계, 제본기계, 재봉틀 (가정용 제외), 제화기계, 방직기계, 기구, 농업용 트랙터
선 박 용 기 기	선박관 및 동부분품, 선박용 증기기관, 선박용 내연기관, 추진용 주전동기, 추진용 발전기, 선용 펌프, 선용 냉동기, 선용양화기, 선박관용 강압통풍장치, 복수장치, 선용 전도장치, 기타 선박용기기
차 량 및 궤 조	경편 기관차, 자동차 (농업용 트랙터 제외), 화차, 기타 차량 및 궤조 (토목기기에 속하는 것은 제외).
의 료 기 기	의료기계 및 장치, 의료기구, 기타 의료용 장치 및 기구.
선 박	선 박.
특 수 용 도 기 기	총기, 총기탄환용기계, 감시용기기, 기타 특수용도의 기기.
잡 기 기	타 품목에 속하지 않는 기계 기구

따라서 물품관리법소관의 자산이라도 국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문화재 및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불품과 경제재로 간주하기 힘들고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예술품, 서적, 골동품 등은 군수품과 같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지방재정법 소관자산

지방재정법의 규제아래에 있는 자산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의 자산은 지방재정법상의 공유재산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유재산도 국유재산과 같이 무형자산등 국부의 범주에 벗어나는 자산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번 조사의 대상에서는 국유재산의 경우와 꼭 같이 무형자산 등이 제외되었다.

한편 공유재산의 용도별 구분은 국유재산과 같이 행정재산(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및 보통재산(보존재산, 잠종재산)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종류 및 종목도 국유재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지방재정법의 규칙아래에 있는 두번째의 자산은 지방재정법상의 물품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중 현금, 유가증권과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지방재정법상의 물품중에는 금융자산인 현금, 유가증권 등만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기타 모든 사항은 국유재산법 소관재산 및 물품관리법 소관자산의 조사대상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4) 교육위원회 소관자산

교육위원회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일반지방자치단체(시·도·군)와 교육법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시·도·군의 교육구)로 크게 나눌수 있다. 그런데 교육구자치단체 즉 각 시·도·군의 교육위원회는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이 준용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소관자산도 사실상 지방재정법상의 재산과 동일하다 할 수 있으나 교육위원회 소관자산의 방대성 및 자산형태의 동일성에 비추어 이번 조사에서는 독립된 조사대상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객체면에서 보면 문교부가 국유재산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대학교 및 기타 학교를 제외한 모든 국·공립학교는 당 지부의 조사범위에 해당하므로 당 지부에서 담당 조사하였다.

5) 영조물법인 자산

영조물법인이란 사회공익이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인적, 물적 요소로서 구성된 국가, 공공단체 개인이 주체가 되는 공법인이다. 따라서 넓게는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영조물법인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일컫는 영조물법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은행, 대한석유공사, 한국전력주식회사 등의 40개 국영기업과 농업협동조합, 토지개량조합등의 공공조합 그리고 반공연맹, 재향군인회등의 공공단체이다. 영조물법인을 독립부문으로 취급하여 하나의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혹은 교육위원회재산과는 소유주체의 성격 및 재산관리체계가 상이하므로 조사편의상 독립시킨 것이다.

6) 도로자산

도로는 국유재산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도로를 별도의 추계방식에 의하여 조사하였으므로 하나의 조사대상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그 이유는 도로의 관리체계가 중앙 및 지방정부

로 분장되어 있어 물량단위의 수집에 있어 중복조사의 가능성이 컸을 뿐 아니라 취득시기 및 취득시 금액의 조사수집이 곤란하며 도로의 성질상 항상 개보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가상의 통일이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도로의 추계범위 및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가) 도로의 정의와 추계대상 범위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법상의 1급국도, 2급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등을 일컫는다.

도로상의 도로부속시설(도로원표, 이정표등)과 도로와 상호효용을 겸하는 구축물(제방, 언제, 호안등)등도 도로의 범위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또한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교량도 도로에 포함시켰으며 교량의 종류는 ①강교, ②철근콘크리트교량, ③석조교량, ④목조교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런데 사도는 물량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도로의 구분

도로는 인정노선등급, 포장상태 및 소재지역의 3구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도 로 의 구 분

구 분	도 로 종 류	비 고
인정노선 등급별	1. 교 속 도 2. 1 급국도 3. 2 급국도	

구 분	도 로 종 류	비 고
	4. 특별시도 5. 지방도 6. 시도 7. 군도	
포 장 상 태 별	1. 포장도 2. 사 리 도 3. 미개수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석 부
지 역 별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9개 각도	

라. 조사대상자산의 분류

조사대상자산으로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등과 같은 내구설비와 원재료, 원료등과 같이 소비 혹은 사용하기 위한 것이나, 상품등과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이 있다. 이같은 사용목적상의 상이점에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자산을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또 유형고정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 선박,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건설가계정, 동물, 식물등의 9개 중분류로 나누었으며 재고자산도 원재료, 반제품 및 재공품, 완제품 및 상품, 저장품의 4개 중분류로 나누었다. 그러나 정부 부문

조사에서는 물품관리법소관의 자산은 동법의 분류방법(중요물품 분류표 참조)에 따라서 조사표에 기재케 한 후 집계단계에서 조사본부의 국부자산분류로 전환시켰다. 한편 내용년수의 결정은 조사지침이 정한 세법상의 내용년수를 적용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정부자산부문중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기계 및 장치」는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부가 정한 기관단위로 별도로 작성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자산부문조사에서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는 국부통계조사본부가 정한 세법상의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에서는 각 정부관서의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를 연구 검토한 후 별도로 정부부문자산의 「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조사에 임하였다.

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조사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조및용도	세 목	내용년수
유형고정자산	기계및장치	1. 철도업용			22
		2. 체신사업용			18
		3. 기타일반관서 용	A. 원동장치		20
			B. 변동장치		20
			C. 작업장치		10
			D. 동산인기계 기구		5
			E. 공장기계		17
F. 잡기계기구		10			

6. 조 사 방 법

1968년 국부통계조사의 추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법인·개인등과 같이 소유자주의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때문에 추계의 기초자료는 소유주체에 따른 자산의 내용, 관리상황 그리고 추계상 이용가능 자료의 유무등에 관한 검토를 하여 소유주체별로 제일 적격한 방법을 택하였다. 한국은행이 담당하는 정부자산부문의 조사는 자계식 전수조사방법을 택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처별로 선정한 조사원(조사표기입자)은 조사대상처의 자산관리담당 직원인 것이다.

한편 자산중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방법은 국부통계조사본부에서 통일적으로 결정한 재조달가격방식을 따랐다. 재조달방식(총괄편 참조)이란 취득시기에서 평가시기(1968년 12월 31일)까지의 물가변동율을 적용시켜(취득시가액×물가배율)총국부(Gross)를 산출한 후 다시 동기간의 감가정도를 감안(총국부×잔가율)함으로서 국부(Net)액 즉 재조달가격을 도출해 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재조달방식을 적용하여 자산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①취득시기 ②취득시가격 ③취득시점 현재 평가자산의 신품여부 ④물가배율 ⑤잔가율중 다섯개 정보가 절대로 필요하게 된다. 이 다섯개의 정보중 뒷편의 평가치표인 물가배율과 잔가율은 이미 작성되어 있으나 앞의 세가지 정보는 조사상 수집가능한 부문과 불가능부문이 있게 된다. 따라서 취득시기, 가액, 신품여부등에 대한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자산부문에 대한 평가는 시가로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실제재고 즉 장부상 가액자체를

평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원칙을 조사본부에서 정하였는데 정부자산부문의 재고평가도 장부상의 가액 자체를 그대로 재고평가액으로 취급하였다. 그런데 정부자산부문중 도로자산에 대하여서는 이상에서 본 조사의 방법(평가방법을 중심으로)과 틀리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도로자산이 지닌 특수성에 비추어 재조달 방식을 도입·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기인한다.

7. 도로자산의 추계

도로는 국유재산의 한 부분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독립된 조사대상자산부문으로 취급하여 추계하였다. 도로의 추계는 우선 순도로(교량을 제외한 도로)의 물량자료 즉 도로의 연장, 폭원, 건설시기등등을 수집한 후 이를 물량자료에 해당하는 기준건설단가를 적용하여 순도로의 물가작업을 마친 후 교량평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따랐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순 도로

순도로라 하면 교량을 제외한 도로를 일컫는다. 따라서 순도로의 추계작업은 두개 구분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는 바 순사리도 추계와 포장부분추계가 그것이다.

1) 순사리도의 평가방법

순사리도의 불량자료수집은 첫째 도로연장-교량연장으로 순도로연장을 구한 후 순도로의 평균로폭을 구하여 순도로 면적을 구하는 것이다. 다음에 순도로 면적당 건설단가를 적용하여 순사리도의 평가액(Gross)을 구한다. 순사리도의 총평가액을 순평가액(Net)으로 계산하는 작업 즉 감가상각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총 Gross = Net 라는 Fifty Percent method 를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도로가 개보수를 끊임없이 실시하는 대체자산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 포장부분 평가방법

포장부분도 포장도연장과 포장로폭으로부터 포장면적을 구한 후 포장건설단가를 적용하여 Gross 개념의 평가액을 산출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도 Fifty percent method 를 적용하였다.

나. 교 량 .

교량의 평가는 개별교량별 자료 즉 건설시기, 건설가격, 교량종류 등등을 구하여 기타 국부의 평가방법과 꼭 같은 재조달가격을 적용하였다.

제 2 절 대 외 자 산 부 문

1. 국부통계와 대외순자산

국부통계는 국내에 있는 실물자산을 일정의 시점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자본「스토크」는 한나라 국민경제 내부의 자산상태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국부통계는 봉쇄경제 (Clossed Economy) 의 관점에서 추계되는 통계조사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 한나라의 경제는 그것이 완전히 고립된 입장에서 경제활동이 시종된다고 할 수는 없고 많은 적던간에 일정한 수준에서 다른 나라와 거래관계를 맺게 된다.

국부통계조사의 본래 목적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가 가지는 실

물보유잔액을 파악하는데 있다면 국부통계조사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정확한 자산상태의 파악을 위하여서도 대외관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더구나 한나라의 국민경제에 있어 대외경제거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근년에 이르러 이같은 대외관계는 「흐름」의 통계로 이해하려는 경향에 흘러 주로 국제수지표(Balance of payments)로 편제되었다. 물론 국제수지표는 일정한 기간중의 대외거래관계를 대상으로 하느니만큼 그 기간동안의 거래관계의 과정과 그 귀결을 밝혀주지 못하는 점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비록 일정시점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할지라도 대외자산의 상태를 「스토크」의 측면에서 구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리하여 오늘날에는 대외관계를 한편에서는 「흐름」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스토크」로 제측함과 아울러 이들 두가지 통계를 서로 조정·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여 지고 있다. 따라서 국부통계조사에 있어서도 모든 경우 대외자산 상태를 감안하고 있다. 이것이 국부조사에서 대외순자산 통계이다.

한나라의 대외관계는 그 나라의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하고 또한 「유출」과 「유입」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가지기 때문에 대외자산은 엄밀히 말하여 대외자산과 부채의 양면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대외자산조사는 이 두가지를 모두 조사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 상호관계를 대비하여 순자산을 산출하게 된다. 국부통계조사에서 궁극적으로 소요되는 대외자산은 바로 이 대외순자산인 것이다. 따라서 국부통계에 있어

대외순자산이란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대외자산총액에서 대외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액을 가르키게 되며 다른 말로는 한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순자산(Net worth)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순자산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바 조사를 위하여 미리 설정한 조사 요령과 이에 따른 실제 조사과정 및 그 결과를 보기로 한다.

2. 대외순자산 조사요령

가. 대외순자산의 정의

대외순자산은 우리나라의 국부를 구성하는 중요 항목의 구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적으로 나타난 대차관계이므로 다른 부문이 유형자산을 조사하는데 대하여 무형자산인 채권, 채무를 조사의 대상으로 하게 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거주자의 대외적인 자산도 있고 반대로 부채도 있으므로 그 구성항목은 대외자산과 부채로 이루어지며 실제조사는 궁극적으로 대외자산 총액에서 대외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계상하게 된다. 말하자면 대외순자산은 일정시점의 대외자산총액에서 대외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말한다.

나. 대외자산, 부채의 범위 및 구분.

대외자산, 부채의 조사에 있어서는 자산부채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와 그 자산, 부채의 소유자의 구분문제 그 밖에 표시통화등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대부분 국제적인 관례와 외국환 내지 외자관계법체계에 반영된 기준에 따라 현행 「외국환관리법」이나 국제수지의 편제방법과 동일한 규칙을 따랐다. 그것은 대외거래가 복잡한 관계를 가지는데다가

국제적인 일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경우와 같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되는 국제수지편제방침에 따르게 된 것이다. 특히 대외자산과 부채는 그 소유주체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눌수가 있는 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물론 이러한 주체의 구분 방법은 이 밖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경제통계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국적에 관계없이 그 주체의 경제활동과 그 결과가 어떠한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점에서는 거주자주의가 비교적 합리성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여러거래는 모두 거주자주의를 택하고 있어 그다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외자산조사의 주요대상의 하나인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 등의 외자는 관계법규가 국적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거주자주의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개의 외환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이나 부채도 있다. 이 자산과 부채도 미「달러」화로 환가하여 조사 하였다.

특히 대외자산과 부채를 조사하는데 있어 중복 또는 누락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 혹은 단기의 기간 구분을 3년으로하여 나누었다. 3년이라는 분류기준은 잔존기간 즉 조사시점 현재에서 해당 자산·부채의 소멸시기까지의 기간이 아닌 발생에서 소멸까지의 상환기간을 내지는 자산·부채의 존재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다. 조사기준시점 및 방법

대외순자산의 조사시점은 국부통계의 실물자산 조사부문과 맞추

어 1968년 12월 31일 현재로 하였고 다행히 다른 외환통계도 이 기준으로 맞출 수가 있었다. 대외순자산의 추계는 기존통계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이용토록 하였고 그렇지 못한 일부통계는 별도로 조사하여 대외자산과 부채를 산출하였다. 특히 통계기준이 다른 대외자산과 부채의 통계들은 본 조사지침에 맞게 조정하였다. 외자도입의 국적주의는 본 조사의 거주자주의에 맞게 재분류 하였고 미잉여농산물의 원화예치금은 미불화로 환가한것등이 그것이다. 대외자산을 차변에 그리고 대외부채를 대변에 나열한 대외대차대조표 형식으로 편제한 뒤에 대외순자산을 산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자산·부채의 사용자를 조사하느냐 소유자를 따라 조사하느냐하는 문제가 있으나 산 조사부문에서 소유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아니라 본조사의 성격에 맞추어 소유자주의를 따랐다.

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대외순자산의 조사도 국부통계의 일환이므로 국민경제내의 대외적인 자산과 부채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대외자산과 부채의 소유자에 대한 조사기준은 주로 거주자의 원칙을 따랐다. 그것은 이와 같은 거주자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의 기초통계 상호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편리할 뿐더러 「흐름」의 통계인 국제수지표의 기준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익의 중심(Center of Interest)이 되는 경제활동의 본거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1) 거주자(Residents)의 주요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는 자연인

- 국내사무소에 근무하거나 국내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 입국후 6개월이 경과한 외국인
-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및 해외파견국군
-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지사·지점·출장소 등.

2) 비거주자 (Nonresidents)

○ 거주자이외의 개인과 단체로서 정확히 표현하면 거주자를 제외한 기타 세계의 거주자 (Residents of the rest of the world)이다.
 마. 주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자산 및 부채는 원칙적으로 결제기준으로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계가 결제기준으로 집계되어 이 기준에 일치시키기 쉬운 이 가지는 외에도 비교적 타당한 기준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제 기준에 이미 자산이나 부채로 확정된 부문은 기준이 다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조사토록 하였다.

○ 금은 「온스」(31.1035 g) 당 35 미불이 국제금공가로 평가하였다. 금의 경우에는 중앙통화기구의 화폐금융 (Monetary Gold) 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비화폐금융 (Nonmonetary Gold)은 대외순자산의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유가증권을 액면가격으로 평가하고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미상환잔액만을 액면가격으로 평가하였다.

○ 외자도입 (재정차관·상업차관·비거주자직접투자)은 물자도착기준으로 파악하였다.

○ 미불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환가할 때의 환율은 1968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을 적용하였다.

○ 국제기구출자금은 기준환율 (Basion rate of foreign exchange)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가하였다. (「외국환관리규정」제2조)

○ 불화이외의 외국농파로 표시된 기초통제를 미불화로 환가할 때에는 조사시점 현재의 IMF평가 (Far Value) 를 적용하였다.

제 3 절 법인자산부문

1. 조사연혁

국부의 현재액을 포착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서구의 선진제국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국부조사가 연달아 실시·공표되었으며 현재에는 세계의 많은 나라에 광범하게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이래 처음으로 1968년 국부통제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법인자산조사」도 1968년 국부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2. 조사목적

법인자산조사의 목적은 국부를 구성하는 자산중에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조사하여 재조달가액을 원칙적인 기준으로하여 평가한 법인자산액을 추계함으로써 법인자산의 존재량, 분포, 구성등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1968년 우리나라 국부의 추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조사시점

이 조사는 원칙적으로 1968년 12월 31일을 조사기준시점으로 하였으며 조사실시는 1969년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30일간에 실시하였다.

4. 조사근거

이 법인자산조사는 통제법에 의하여 지정통제 제 21호의 2로 지정된 통계조사이다.

5. 조사범위

196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법인 소유의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가. 조사의 지역적 범위

조사기준시점 현재로 우리나라 주권이 사실상 미치고 있는 모든 영역으로 하였다.

나. 조사객체의 범위

이 조사의 조사객체는 조사기준시점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객체인 법인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등의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및 조합등의 법인(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하였다.

조사기준시점 현재로 휴업중에 있거나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아직 설립중에 있어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국가로 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법상의 법인 즉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공조합.

○ 대한산림조합, 토지개량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마사회, 수출조합, 변호사회, 재향군인회, 건설공제조합, 한국해운공사, 대한적십자사, 대한교육연합회, 한국반공연맹, 군사원호대상자단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열연초생산조합.

2) 다음의 금융기관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의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신탁은행, 한국상업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충청은행

3) 영조물 법인

○ 국제관광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석유공사, 대한손해재보험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대한해운공사, 한국광업제련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증권거래소, 대한건설공사, 한국투자개발공사, 대한조선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항공공사, 한국수산개발공사, 한국해외개발공사, 대한석탄공사

4) 국영기업체중 다음의 중요정부 출자기업

○ 한국전력주식회사,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인천중공업주식회사,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충주비료주식회사, 호남비료주식회사, 대한염업주식회사, 대한통운주식회사,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5) 외국법인

다. 조사대상자산의 범위

이 조사는 법인이 소유하는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조사대상자산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산의 범위는 재생산 가능한 유형자산으로 하였다. 따라서 재고자산 이외의 유동자산(현금, 예금, 유가증권등)과 무형고정자산은 제외되었다.

6. 조사방법

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법인의 본사 또는 본점에 대하여 소정의 조사표에 의하여 소정의 사항을 사업체별로 자체식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가. 조사단위 및 보고단위

이 조사의 조사단위는 사업체이고 보고단위는 법인의 본사 또는 본점으로 하였다.

나. 조사표

1) 조사표의 종류

이 조사에 사용된 조사표의 종류는 「법인조사표」, 「유형고정자산조사표」, 「재고자산조사표」의 3가지이다 (부록<3>참조)

2) 조사사항

가) 법인에 대한 일반적 사항

법인자산조사결과와 보정과 분석을 위하여 조사시점 현재 법인에 대한 다음 사항을 「법인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① 법인명칭

- ② 본사 또는 본점 소재지
- ③ 설립 년 월
- ④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⑤ 조직형태
- ⑥ 결산기
- ⑦ 최근 결산서 공고신문명
- ⑧ 자산재평가 유무 및 재평가 년 월
- ⑨ 자산액 총괄
- ⑩ 사업내용
- ⑪ 관할 사업체 명부
- ⑫ 대차대조표
- ⑬ 조사표 작성근거

나) 유형고정자산 조사

유형고정자산의 조사는 조사대상법인이 조사기준시점 현재 소유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 1천마다 취득 연차별로 취득가액을 「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 <부록 () >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① 조사자산의 범위

유형고정자산의 조사범위는 재생산 가능한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였으며 토지는 토지종류별 (대지, 임야지, 논, 밭, 기타)로 면적만을 조사하였다.

조사자산의 범위에 포함여부가 모호한 자산은 다음과 같이 한계를 지었다.

㉑ 미완성의 자산

건설가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미완성의 자산은 다음의 자산에 한하여 조사하였다.

㉑ 공사가 완료되어 검수인도를 받은 자산으로서 아직도 건설가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

㉒ 법인이 직영공사 또는 자가제조로 취득한 자산

㉓ 제작 또는 건설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그 원재료 또는 자재등을 현물지급할 경우 그 지급 원재료 또는 자재등의 대가가 건설가계정상에 계상되어 있을 때에는 그 대가액

㉔ 할부매입 고정자산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용에 제공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자산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할부로 매출한 고정자산은 아직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사자산에서 제외하였다.

㉕ 타인의 건물에 시공한 조작용

건물을 임차한 경우 차주가 그 건물을 개조 모양변환등을 조작용 가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조작용의 소유권이 법률적으로 대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작용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차주인 법인의 자산으로 조사하였다.

② 조사자산의 단위

유형고정자산조사는 자산 1건마다 취득연차별로 조사하였으며, 자산의 단위는 물리적으로 파악되는 1개의 재화가 아니고

그 재화에 대한 투하시기가 다른 각각의 자본적 지출을 각각 1개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조사단위로 하였다.

즉 그것이 물리적으로는 한개의 재화라 하더라도 그 재화에 대하여 투하시기가 다른 자본지출 예를 들면 1965년에 하나의 건물을 구입하여 1967년에 개축을 하고 1968년에 증축을 하였다면 각 연도의 자본지출을 각각 하나의 조사단위로 한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종류·품질·구조의 재화에 대한 동일연차의 자본지출, 예를 들면 1968년중 같은 종류의 자동차 500대를 구입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조사하였으며 또한 공구·기구 및 비품에 속하는 자산에 있어서 내용연수가 같은 것은 취득연차별로 일괄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그 소유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즉 수익적 지출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재화의 구입설치비 및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등을 말하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㉔ 자본적 지출로 본 경우

-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② 에레베이타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③ 빌딩등에 있어서 피난시설등의 설치
- ④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등의 별 실 또는 훼손에서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㉔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의 예와 유사한 성질의 것
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본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㉑ 건물 또는 벽의 도장

㉒ 파손된 유리, 기와의 대체

㉓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㉔ 자동차의 타이어·쥬브의 대체

㉕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㉖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위의 예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조사사항

㉑ 자산의 종류

자산분류는 원칙적으로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준거하여 분류하였다.

㉒ 구조 및 용도분류

㉑ 주거용 (111), 비주거용 (112)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연와, 석조 및 부록조, 철골조, 토벽조, 목조, 목골물탈조, 간이목조 등의 구조를 조사하였다.

㉒ 건물부속설비 (113)는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또는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의 설비 명칭을 조사하였다.

㉓ 구축물은 철도업용 또는 궤도업용 시설, 발전용 또는

송배전용시설, 방송용 또는 무선통신용 시설, 경기장 또는 유원지용시설, 정원을 제외하고는 건물과 같이 구조별로 조사하였다.

㉔ 기계 및 장치는 용도별 설비별로 조사하였다.

㉕ 선박은 강선·목선별로 어선, 유조선, 약품조선등의 선박종류의 명칭을 조사하였다.

㉖ 차량 및 운반구는 궤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기타 차량등의 차량 종류명을 조사하였다.

㉗ 공구 기구 및 비품, 어구 및 어선용구는 용도별 종류명을 조사하였다.

㉘ 동물, 식물은 종류별로 조사하였다.

㉙ 세 목

자산의 구조 및 용도를 보완하고 내용연수를 판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조사하였다.

㉚ 신품 중고의 구분

해당 자산이 취득 당시에 신품이나 중고품이나를 구분 하였으며, 자산이 중고품일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신축 혹은 신조로 부터의 경과연수를 조사하였다.

㉛ 연차별 취득가액

「구조 및 용도, 세목」란에 기입된 자산에 대하여 취득연차에 따라서 해당 자산별로 취득가액을 조사하였다.

동일한 취득연차에 취득 또는 투자(개축비등)한 경우에는 그 합계액으로 중고품의 경우에는 중고품을 취득한 때에 지급한 가액을 조사하였다.

생산고 비례법에 의하여 자산의 감가를 측정하는 광업용자산 (예:갱도등)에 대해서는 해당 「세목」란에 「(광업용)」이라 표시하고 「내용연수」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취득가액 합계액 밑에 감가상각누계액을 조사하였다.

㉞ 자산의 사용

대상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사용자에게 따라 자가사용, 정부, 법인, 비법인, 기계와 같이 5개부분으로 구별하였으며 대여했을 경우에는 대여처의 사업내용도 동시에 조사하였다.

㉟ 취득가액 (연도) 불명 또는 진부화자산

㊱ 취득가액 불명자산

조사한 자산의 취득연도는 알고 있으나 취득가액을 모르는 자산에 대해서는 1968년 12월 31일 현재의 신품가격 또는 신조가격을 「재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㊲ 취득연도 불명자산

조사할 자산의 취득가액은 알고 있으나 취득 연도를 모르는 자산은 1968년 12월 31일 현재로 중고인 상태 그 대로의 싯가평가액을 조사하였다.

㊳ 취득가액과 취득연도 불명자산

취득가액과 취득연도 모두 모르는 자산은 1969년 12월 31일 현재의 싯가로 평가하여 「싯가평가액」을 조사하였다.

㊴ 진부화자산 및 재해에 의해서 특별상각의 대상이된 자산

위의 자산의 경우는 1968년 12월 31일 현재의 싯가평가액으로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진부화라 함은 발명 또는 발견에 의한 기술의 진보에 따른 설비의 구식화 또는 그 설비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의한 설비의 가치하락등의 경우에만 한하였다.

㉞ 토지면적

대상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 임야지, 논, 밭, 기타 별로 면적만을 평수로 조사하였다.

㉟ 재고자산조사

재고자산은 조사시점 현재 조사대상 법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재고자산 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① 조사시점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고자산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법인이 외부의 영업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재화이거나 수출입 또는 수송중인 화물이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조사하였으며 1968년 12월 31일을 전후하여 조사대상법인이 판매 또는 구입한 재화로서 조사기준시점 현재로 아직 발송하지 않았거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관습이나 계약내용에 있는 법인의 경우 미완성 및 완성공사 지출금은 재고자산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조사대상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류는 재고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② 재고자산의 조사방법

재고자산 조사는 원칙으로 조사기준시점 현재 법인이

실시한 재고조사에 의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만일 조사대상법인이 조사기준시점 현재로 재고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 조사기준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실시한 재고조사의 장부가액 (예컨대 1968년 9월 또는 1969년 3월에 실시한 재고조사의 장부가액)

㉡ 실시 재고조사를 행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기준시점 현재의 장부가액

㉢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기준시점 현재의 시가평가액

③ 조사사항

㉠ 자산의 종류

재고자산은 중분류를 원재료 반제품 및 재공품, 완제품 및 상품, 저장품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중분류안에 다시 품목별로 조사하였다.

㉡ 품 목

조사대상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목명에 따랐다.

㉢ 단 위

각 품목별로 그 품목에 속하는 재화의 수량을 보통 상용적으로 쓰이는 단위로 하였다.

㉣ 수 량

각 품목에 속하는 재화의 수량을 측정 기입하였다.

㉤ 장부가액

전술한 「재고자산조사방법」의 원칙에 의하여 각 품목

별 금액을 조사하였다.

㉞ 각 품목별로 1968년 12월 31일현재의 시가평가액을 조사하였다.

제 4 절 개인 자산부문

1. 조사의 연혁

본 개인기업의 자산조사는 1968년 국부조사의 일환으로 3차에 걸쳐 시험조사 <68.7.18, 68.8.19, 69.2.8>를 거쳐 1969.3.18 개최된 통계위원회의에서 조사내용을 확정하였고 69.4.20부터 20일간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2. 조사목적

1968년 국부통계조사의 일환으로서 개인기업 및 비법인단체 <이하 개인기업으로 약칭함>가 소유내지 사용하고 있는 재생산 가능한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조사하고 그자산을 재조탈 가격과 재취득 가격으로 구분 평가 추계함으로써 국부추계의 기초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조사시점

1968년 12월 31일

4. 조사근거

개인기업자산조사는 통계법에 의거한 지정통계조사(지정통계

21-3호)로서 실시하였다.

5. 조사범위

가. 조사지역의 범위

조사기준시점 현재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모든 영역에 걸친다.

나. 조사대상업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모든 업종

다. 조사객체의 범위

조사객체는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각종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와 비법인 단체로 하며 그중 별도의 표본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사업체 18,386개와 일부 전수조사업종의 사업체 6,352개를 포함하여 총 24,738개를 실사의 대상으로 하였음

라. 조사자산의 범위

개인기업이 소유 내지 사용하는 내용연수 1년이상의 재생산 가능한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6. 조사방법

가.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 업종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하였다.

나. 소유자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다. 면접식타계주의를 채택하였다.

7. 조사대상업체의 선정

개인기업자산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사업체수가 방대하여 표본조사방법과 전수조사방법을 병행하기로 하였으며 전수조사업종은 다음 3개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정책자료에 크게 이바지되는 수요업종

둘째. 사업체수가 적은 반면 자산액이 큰 업종

셋째. 표본조사로써 추정이 곤란한 업종

전업종에 걸쳐 정확한 최근의 사업체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표본 동.읍.면등 조사구에 대하여 사업체조사를 선행하였다.

이하 조사대상업체선정을 위한 표본설계의 구체적인 과정을 보기로 한다.

가. 표본설계의 기본조건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 즈음하여 충족되어야 할 기본 조건으로 아래의 5항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첫째. 주어진 예산규모내에서 최대의 정도(精度)를 얻도록 하며,

둘째. 예산규모와 작업량으로 보아 600,000개로 추정되는 모집단사업체중 약 25,000개 정도를 조사한다.

셋째. 조사원은 400명으로 하며 실사기간은 20일간으로 한다.

넷째. 제표능력 및 제표기간

다섯째. 추정치는 도별, 산업중분류별, 규모별(혹은 자산소분류별)로 얻도록 한다.

나. 표본설계의 기본계획

표본설계의 기본조건을 만족하도록 표본을 설계함에는 극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으며 또한 일부 업종에 있어서는 이 조사가 통계조사로써 처음인 만큼 이의 종합적이면서 포괄적인 표본설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더욱이 표본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없는 반면 추정하고자 하는 유별은 많았지만 국부통계조사가 처음 실시되는 통계조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표본설계에 있어서는 실제작업량과 조사량보다는 정도를 높이고 지역별, 산업별, 규모별 추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다원적 표본설계방식을 택하여 표본설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중분류의 하나하나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표본설계를 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였다.

따라서 추정된 표본설계에 있어서도 표본추출방법 틀(frame) 추출단위, 층화의 기준은 공동으로 사용되었다.

다. 표본추출방법

표본추출은 명부표본법과 집락표본법에 의하는 것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업종별로 사업체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모집단의 명부는 물론 그의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는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여주는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또 집락추출법에는 4개의 방법이 있으나 이 조사의 작업량과 규모를 참작하여 그중 층화2단 추출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사업체 조사에서는 층화단순 집단추출법을 이용하였다.

이때 2단의 추출단위로서는(사업체인 경우와 사업체의 집합인

집락으로서의 조사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작업량을 적게하기 위하여 2단의 추출단위로서 조사구를 택하였다.

이상을 표로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추출단위	틀
2단집락	1 단	대 조사구	층별 대 조사구
추출법	2 단	표본(소) 조사구	대조사구별소조사구

라. 추출단위와 틀

1) 추출단위

가) 일차추출단위

원칙적으로 1차추출단위는 동·읍·면등의 행정구역으로 하였으며 자료관계상 경계가 명확치 않는것은 통합하여 별도로 하나의 1차추출단위를 만들었다.

나) 2차추출단위

1차추출단위 안에 있는 사업체를 2차추출단위로 하였다.

2) 틀

가) 1차추출단위의 틀

1차추출단위의 틀로는 전국의 동·읍·면등의 행정구역의 명부를 이용하였다.

나) 2차추출단위의 틀

2차추출단위의 틀로는 1차추출에서 뽑은 표본 동·읍·면에 대하여 사업체 전수조사를 행한 다음 거기서 얻은 사업체 명부를 사용하였다.

마. 총 화

총화방법에는 2 단 집락추출법의 경우에는 사전총화방법과 사후총화방법의 두가지가 있으나 이 조사는 그 성격상 즉 지역별·산업별 특성치를 얻어야 하므로 제1차 추출단위를 총화하여 추출한 다음 표본 1차추출 단위내에서 제2차추출단위를 추출하는 사전총화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각산업중분류를 표본설계의 특성으로 하여 특성 하나하나에 대하여 총화작업을 독립적으로 행하였는 바 그 구체적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특성을 갖는 동·읍·면의 집단과 갖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고

둘째·특성을 갖는 집단을 다시 시도로 분류하고

셋째·시·도를 사업체수에 의하여 총화를 하였다.

이 경우 도에 따라 약간 다르나 총화의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총 화 의 기 준

총 번 호	총의 분류번호	총 의 기 준
1	총 01	1 - 5개의사업체를갖고있는 동·읍·면
2	총 02	6 - 9 "
3	총 13	10 - 19 "
4	총 14	20 - 49 "
5	총 15	50 - 89 "
6	총 16	90 - 199 "
8	총 27	200 - 499 "
9	총 28	500 - "

바. 표본수의 결정

표본수의 결정 방법으로는 목표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의 추출율로서 표본을 추출하는 Sample census Method 를 택하였다.

즉 주어진 예산규모내에서 결정된 약 25,000 개의 표본사업체가 추출되도록 제 1 차추출단위 및 제 2 차추출단위의 추출율을 모두 (Parameter) 에 관계없이 결정하였는데 표본배정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제 1 차 추출단위

제 1 차추출단위의 표본배정은 업종, 층 내 1 차추출단위당 평균 사업체를 기준하여 2 차추출단위와 관련하여 배정하였다.

2) 제 2 차 추출단위

예산과 기타 조사여건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업체를 약 25,000 개로 하였으면 이를 업종별로 배정할 때 사업체수와 업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웨이트를 주어 배정하였다.

사. 표본추출

1) 1 차추출단위의 추출작업

표본설계의 특성 X_i ($i = 1, 2, \dots, 32$) 의 각각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만든 $i = 1, 2, \dots, 32$ 의 X_i 를 갖는 동.읍.면 집단층내 사업체수층에서 배정된 수 만큼의 동.읍.면을 독립적으로 뽑고 우단위층에 대하여는 표본을 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적인 표본은 각 X_i 에서 독립적으로 뽑은 표본 동.읍.면의 합이 된다.

차. 조사오차

이상의 표본오차 이외에도 오차는 조사의 각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조사오차는 그 크기를 수치적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예상되는 각 단계에서의 오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파악에서 오는 오차

둘째. 조사불능에서 오는 오차

셋째. 면접에서 오는 오차

8. 용어의 정의

가. 개인기업부문자산

개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공장·상점, 기계 등의 개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법인격을 갖지 않는 모든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나. 농림 수산업

개인기업부문조사에서는 농림 수산업을 규모로 보아서 기업성을 띤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만을 조사하고 규모로 보아 일반가계적인 성격이 농후한 농림 수산업은 가계부문에서 조사하고 그중 소득 창출과 관계가 깊은 내구생산재와 동식물을 분리하여 개인기업부문에 첨가하였다.

제 5 절 가계 자산 부문

1. 조사의 연혁

국부통계조사중 가계자산부문조사는 기타부문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의 역할을 하고 개인기업부문조사와 시차를 두고 조사하여 두부문에서 상호 조사누락 또는 중복을 없애도록 68년 10월 31일을 기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68.10.5 개최된 통계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68.11.7 부터 20 일간 조사하였다.

2. 조사의 목적

본조사는 각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가계자산과 농가 및 어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어가구를 조사하여 국부통계조사중 가계소유자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3. 조사시점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시점

1968년 10월 31일 현재

나. 조사기간

1) 준비조사

1968 ; 11.7 ~ 11.9 (3일간)

2) 실사

1968 : 11.11 ~ 11.20 (10일간)

4. 조사의 법적근거

통계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지정통계 제 21 호의 4 호에 의한 것이다.

5. 조사의 범위

가. 조사지역의 범위

우리나라 주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전 영역

나. 조사객체의 범위

1) 대상가구

전국에 거주하는 전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가구나 합은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적인 생활 단위를 말한다.

단·다음의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 단신으로 가계를 영위하는 가구

나) 군대의 시설내, 교도소, 유치장 및 소년원에서 거주하는 가구

나) 기숙사, 양노원, 합숙소, 기타 수용소 등의 집단가구.

라) 외국의 대사관, 영사관등의 외국인관리 및 주한 외국군대 구성원의 가구

2) 대상자산

조사대상자산은 소유자주의에 의하여 조사기구의 자기소유 자산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는데 그중에 다음과 같은 주택 건물과 내구소비재만을 조사하였다.

가) 전 물

소유주가 직접 사용하는 주택은 물론 다른 장소에
 공가·대가·신축중의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계용 주택 및
 비주택 건물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단·여기서 말하는 건물에는 지상건물만을 말하고 대지는 제외
 하였다.

나) 내구소비재

품 목	대 상 범 위
1. 장 농	시가 (잔존가치에 대한 시장구입가격) 3,000 원 상당 이상
2. 화 장 대	
3. 찬 장	
4. 탁 자	
5. 침 대	
6. 재 봉 기	
7. 한 복	신품으로 취득하여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시가 (잔존가치에 대한 시장구입가격) 3,000 원 상당 이상
8. 양 복	
9. 오 바	
10. 수피, 목도리	시가 (잔존가치에 대한 시장 구입가격) 3,000 원 상당 이상
11. 시 계	
12. 카 메 라	
13. 전 축	
14. 녹 음 기	

품 목	대 상 범 위
15. T V 수상기	
16. 라 디 오	
17. 전기냉장고	
18. 전기아이롱	
19. 스토브	
20. 선풍기	
21. 전기믹사	
22. 에어컨	
23. 열총	
24. 피아노	
25. 울켄	
26. 응접셀	
27. 자전차	
28. 오토바이	
29. 승용차	
30. 금패물	

다) 내구생산재 및 동식물

품 목	대 상 범 위
31. 원동기	
32. 양수기	
33. 분무기	
34. 살분기	
35. 제승기	

품 목	대 상 범 위
36. 입 직 기	
37. 우 마 차	
38. 탈 곡 기	
39. 어 선	
40. 어 망	
41. 유 우	
42. 한 우	
43. 왜 지	
44. 유 산 양	
45. 닭	
46. 감 나 무	
47. 밤 나 무	

다. 조사사항

1) 가구에 관한 사항

- 가) 가구소재지
- 나) 가구의 영농구분
- 다) 가구주의 산업
- 라) 가구인원수

2) 건물에 관한 사항

- 가) 가구의 거주종별
- 나) 건축구조
- 다) 층수 및 건축연평수
- 라) 건축시기 (증·개축포함) 및 구입시기

마) 구입시에 있어서의 경과년수

3) 내구소비재 및 내구생산재에 관한 사항

가) 품종

나) 신·고구분

다) 수량

라) 시가

6. 조사방법

전국의 전가구 중에서 표본가구로 선정된 약 13,600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소정의 조사표에 의거 면접 조사하였다.

가. 표본설계개요

표본추출방법은 층화 2단추출방법으로 1966년 인구 센서스에서 사용된 조사구를 제1차 추출단위로 하고 추출된 조사구 내에서 다시 가구를 제2차 추출단위로 하여 총 13,600 가구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층화의 방법은 1966년 인구센서스에서 부대조사로 수집된 조사구별 특성을 기초로 하여 전국의 약 40,000 조사구를 385개의 집단으로 층화하였다.

층화의 자료로 사용된 조사구의 특성은 항목에 대하여 수집되었다.

1) 시부에서

가) 농가율

나) 자택율

다) 가구수

라) 지역적 특성

(즉 상가가구, 공장지구, 일반주택가구, 공영주택가구 및
난민주택지구)

마) 시장과의 거리

바) 지형 (산 혹은 평가)

사) 대학과의 거리

하) T.V의 소유물

2) 군부에서

가) 농가율

나) 가구수

다) 광산의 유무

라) 어업협동조합의 유무

마) 의사의 유무

바) 주산물 및 특산물

사) 시장의 유무 및 시장이 서는 빈도

아) 면사무소까지의 거리

자) 기 타

나. 평가방법

1) 건 물

원칙적으로 주택건물은 건조한 시기와 구조 및 건평수
를 조사하여 평가기준표에 의거 추계하였고 건조한 시기가 명확
하지 않는 주택은 시가로 평가하였다.

2) 지정품목 (내구소비재)

원칙적으로 시가로 조사하였는데 이때의 시가란 조사시점 현재의 잔존가치에 대한 시장가격을 말함으로써 평가기준이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조사시 조사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충분히 주어 가능한 한 통일을 기하였다.